Ver. 3. 0.

# 신용정보집중제도 설명회

- 대부업권의 신용정보 집중을 중심으로

('15. 12.)

# NOTICE

- 담당자 외 전달,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언론 등 대외유출 포함)

- 동 자료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최신 규약 및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업무상 편의목적의 해설 자료 이므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처리 필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가공 및 활용을 금지합니다.

# Index

## 1장 :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 ✓ 통합업무시스템 가입절차, 인증서 발급, 로그인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 ✓ 연체등정보 등록, 정정, 해제, 삭제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 ✓ 개인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등록, 정정, 해제, 삭제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 ✓ 공공정보, 채권양도, 신용정보 배치파일 처리방법 등

# Index

## 2장 : 기업신용공여정보 관련 업무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 기업신용공여정보의 구성, 체계, 절차 등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대상기업체정보 등록, 기업여신 등록, 접수확인 등

## 3장 : 신용정보 제재금 관련 업무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제재금 부과·배제기준, 업무처리절차, 세부사례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제재금 체계(대상기업체, 부정확, 지연), 업무처리절차

## 4장 : Q&A

# 1장 :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신용정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 능력 등을 판단하는 신용정보로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정보 집중 필요성 제기

'14. 8. 7.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집중(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14. 11. 26.)을 통한 **대부업권의 신용정보 집중 시행('15. 3. 30.)**

**대부업체 관계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업무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신용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바, 신용정보집중제도 설명회(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을 중심으로) 개최**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 | |
|---|---|
| **집중대상 대부업체** |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대상기관 대부업자<br>('14년말 기준 약 350여개 업체)<br>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 |
| **집중대상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개인대출, 기업신용공여, 채무보증정보)<br>신용도판단정보(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시 행 일** | 2015. 3. 30. |

시행일('15. 3. 30.) 이전 발생 신용정보 집중하지 않음

시행일('15. 3. 30.) 이후 발생 신용거래정보 집중

신용도판단정보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에서 발생건에 한하여 집중

시행일 (3. 30)

시행일로부터 3개월(6. 30)

제재금 부과 배제기간 종료

시행일('15. 3. 30.) 이전 채권 양수건 집중하지 않음

시행일('15. 3. 30.)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집중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 | |
|---|---|
| **신용정보 공유여부** | 공유하지 않음(단, 대부업 신용정보는 신용조회회사(신용등급 산정 등의 목적으로 한정)에만 제공<br>ⓘ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전까지 대부업자도 타 업권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 |
| **동의서 징구 관련** | 개인의 경우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징구<br>ⓘ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집중시 신용정보법 위반이며,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 위반 |
| **기타 참고사항** | 올해말 기준 신규 진입 및 제외업체 : 2016년말 기준 대부업체 명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추가 진입 및 제외 대상 업체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 이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생기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br>ⓘ 직권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서 집중한 신용정보를 정비(신용거래정보 해지,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처리)<br>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br>ⓘ 신용정보 통합업무시스템 가입직원을 해지신청하고 신규 담당 직원에 대한 신청 |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 | |
|---|---|
| **추가 업체 관련 안내** | 추가 업체(2015. 7. 1. 이후 신용정보집중 관련 안내를 받은 업체) 역시 신용정보 체계, 업무처리 절차 등은 동일하나 시행일 관련 내용은 일부 상이함 |

## 추가 업체의 집중 기준 관련 안내

추가업체 관련 안내 종료 및 가입시작 (~7. 30.)

추가 업체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산망 가입 시점 이후 발생한 신용거래 정보 집중

신용도판단정보는 전산망 가입 시점 이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에서 발생건에 한하여 집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산망 가입 시점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집중

제재금 부과 배제기간 종료 (10. 31.)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신용정보 전산망 가입절차**

✓ 신용정보집중을 위한 전산 구축
- 전용선방식(HOST) 인터넷 홈페이지 방식(WEB)

✓ 전용선방식(HOST)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 금융회사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

① 전용선방식으로 집중할 경우, 기배포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 및 배치프로그램 개발능력이 필수적임(은행, 증권, 보험 등 자체 전산실(인력 등)을 보유한 대형 금융회사가 주로 사용하며, 현재 대형 대부업체(10개미만)를 중심으로 사용중)

① HOST방식 가입비용으로 최초분담금 1천만원 납부

✓ 인터넷 홈페이지 방식(WEB)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

① 인터넷 홈페이지 방식으로 집중할 경우 고정IP가 필수적이며, 전용선방식보다는 필요요건이 적음(캐피탈, 일부 저축은행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가 사용하며 전용선방식을 선택한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전 대부업체가 사용중)

① WEB방식 가입비용으로 최초분담금 50만원 납부

**동 설명회 자료는 WEB방식 사용자를 중심으로 작성된바, 전용선방식 사용자는 개별 연락 요망**

# Ⅰ.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요

**신용정보 전산망 가입절차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 고정 IP신청 : 통신사에 직접 신청 (SK, KT, LG 등)
- 필수정보 제출 : 대부금융협회로 사업자등록증, 고정IP주소, 기업신용공여정보 취급여부 등 신용정보집중을 위한 정보 제출(해당 정보 변경시 대부금융협회에 정보 추가 제출)
  - ⓘ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들의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는 요건 충족시 분담금 및 기관코드 관련 안내 공문 발송
- 분담금 납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수신하면, 공문에 명시된 계좌로 신용정보 분담금 납부
  - ⓘ 분담금 납부 완료 확인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해당 대부업체의 고정IP에 신용정보 전산망 접근 권한 부여
-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절차 진행

**참고사항**

신용정보 전산망 가입절차는 WEB방식 사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HOST방식 사용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추가문의 요망)

통합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해 인터넷 사용환경 준비 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바 7.3 이상 설치)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통합업무 시스템 가입절차**

- ✓ 홈페이지(http://nkfb.cif.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 홈페이지 접속은 승인된 IP(반드시 고정IP여야 가능함)로만 가능하며, 접속이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정 확인*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문의
    - * ① 메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홈페이지주소 추가, ② 메뉴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끄기
- ✓ 담당부서장 결재 후 회원가입 신청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송부(팩스)
  - ⓘ 팩스번호 : (02)3705-5341(변동이 가능하므로, 신청서에 명시된 팩스 번호 확인 요망)
  - ⓘ 팩스 수신 및 신청서 검토 완료 후 가입승인
- ✓ 회원 가입 시 기재한 E-Mail로 임시비밀번호 확인
- ✓ 인증서 발급 및 임시비밀번호 변경
- ✓ 통합업무시스템 로그인(신용정보 집중 관련 기본 전산 세팅 완료)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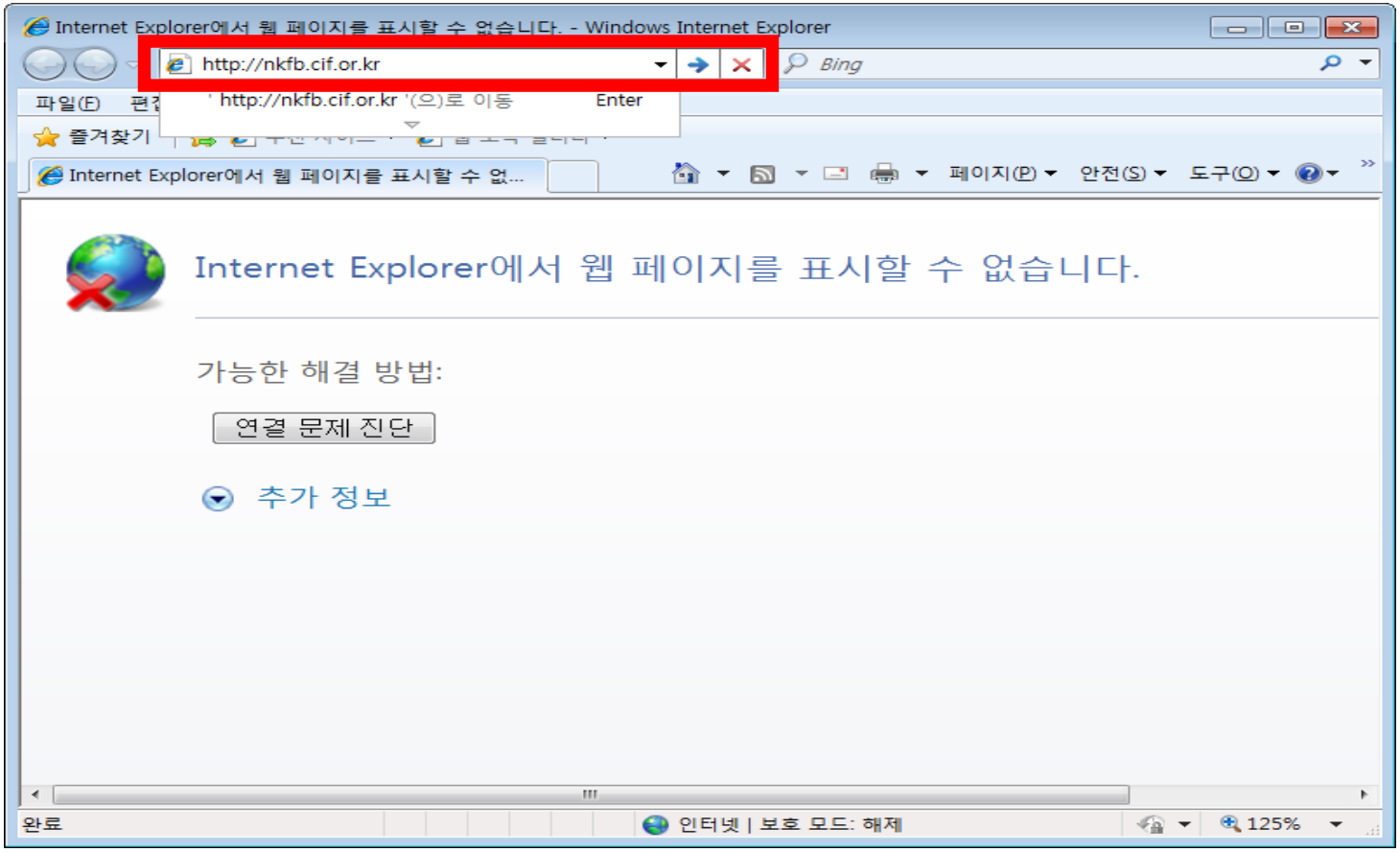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

✓ 인터넷 주소창에http://nkfb.cif.or.kr 을 입력하여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회원가입 신청(2)**

✓ 통합업무시스템 첫화면(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경우 정상접속

① 홈페이지 접속은 승인된 IP(반드시 고정IP여야 가능함)로만 가능하며,
접속이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정 확인*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문의

* ① 메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홈페이지주소 추가, ② 메뉴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끄기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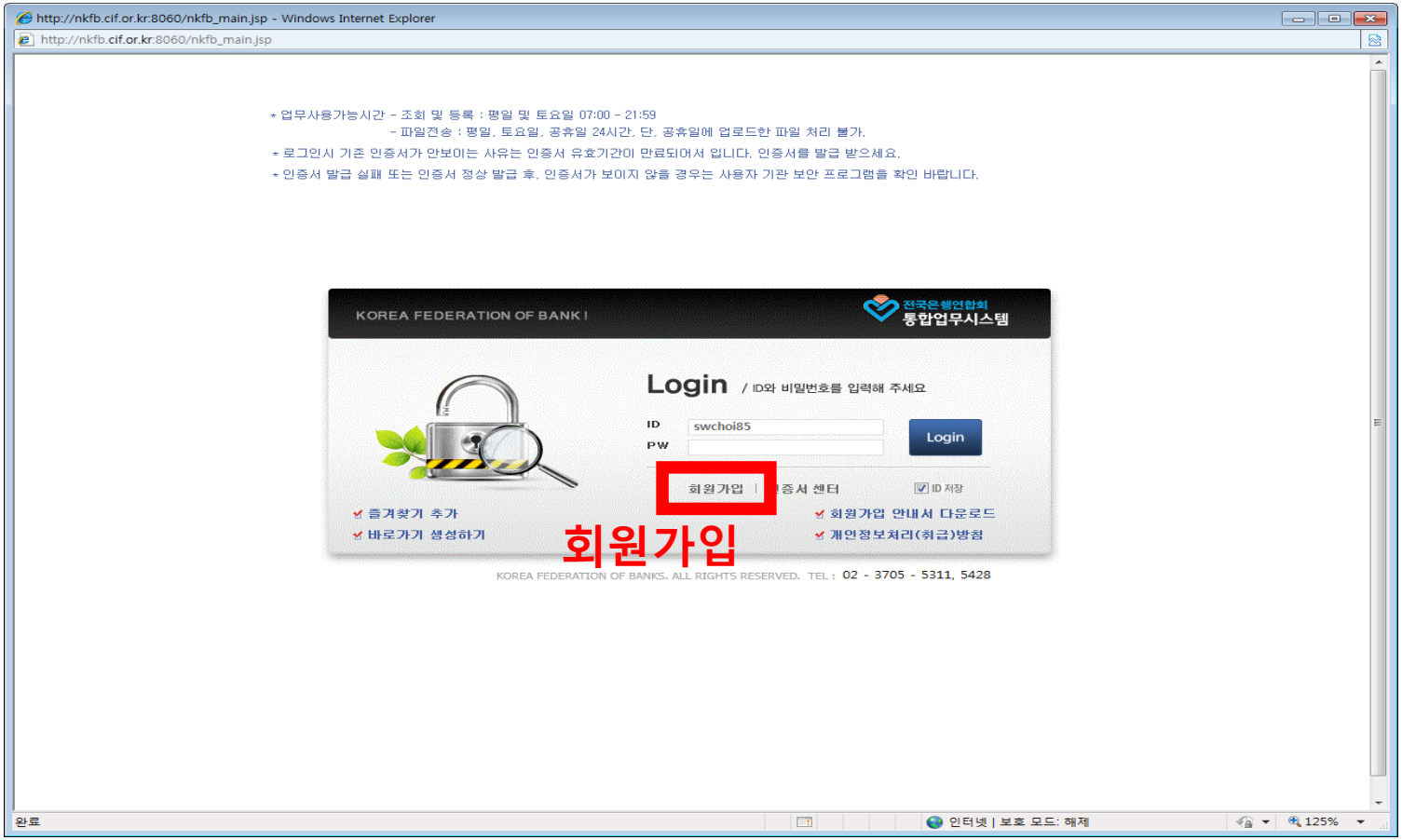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3)**

✓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시작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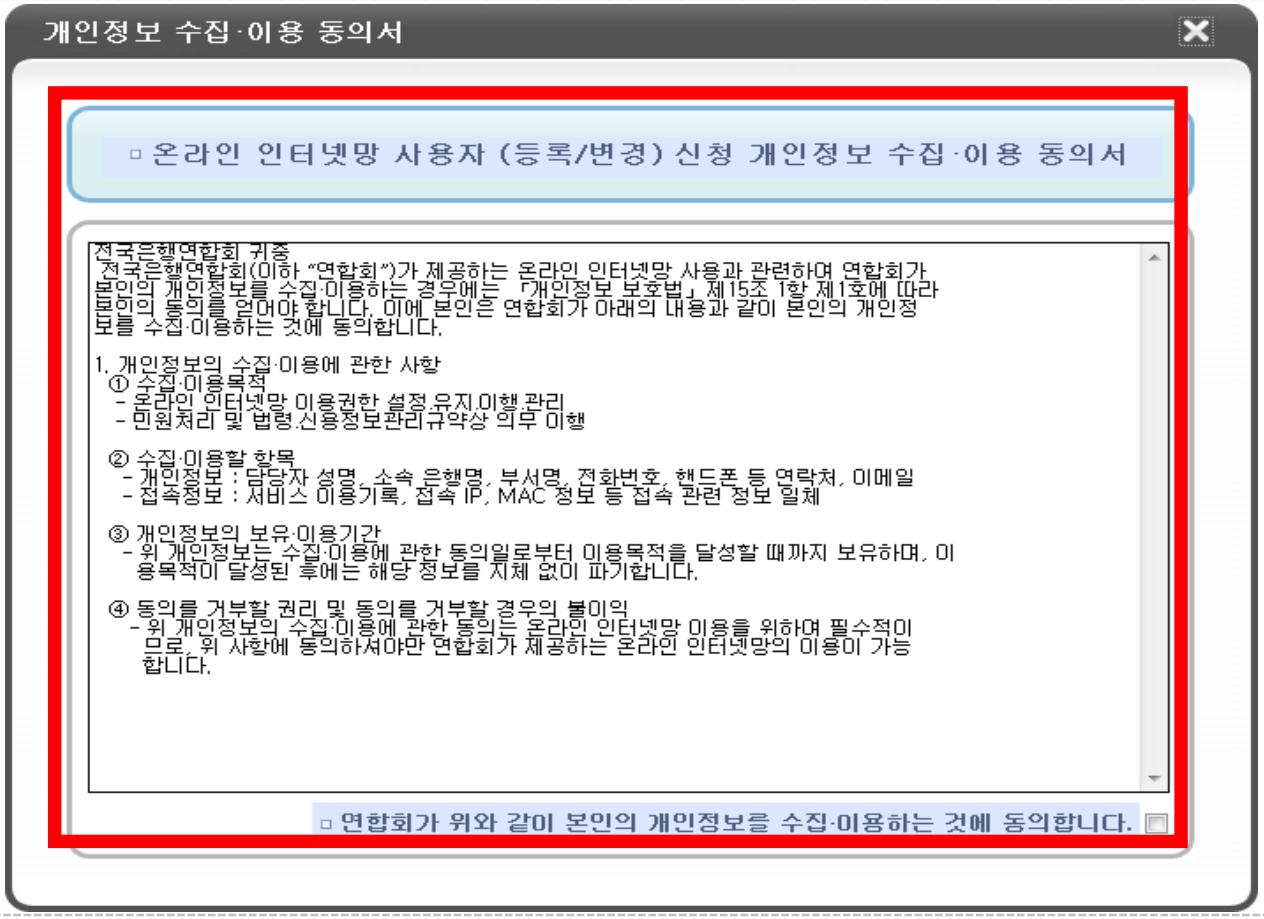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4)**

✓ 위와 같은 팝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 뜨면 동의를 클릭한 후 계속 절차 진행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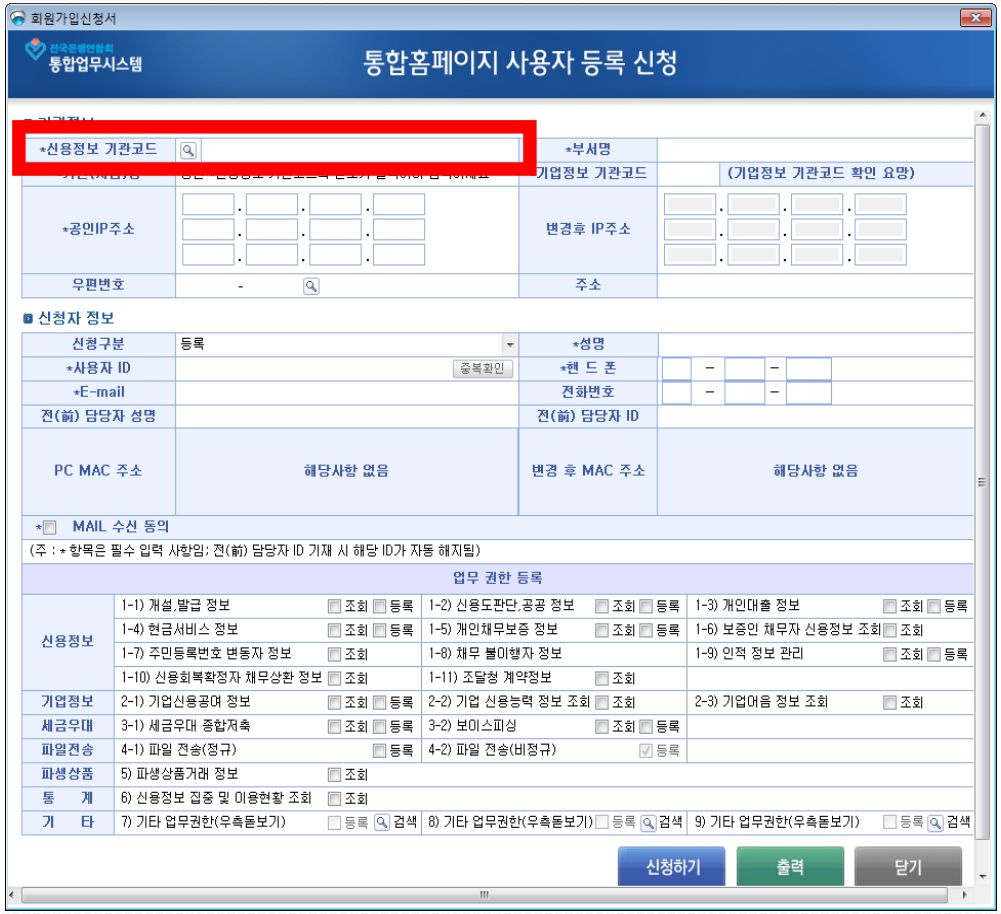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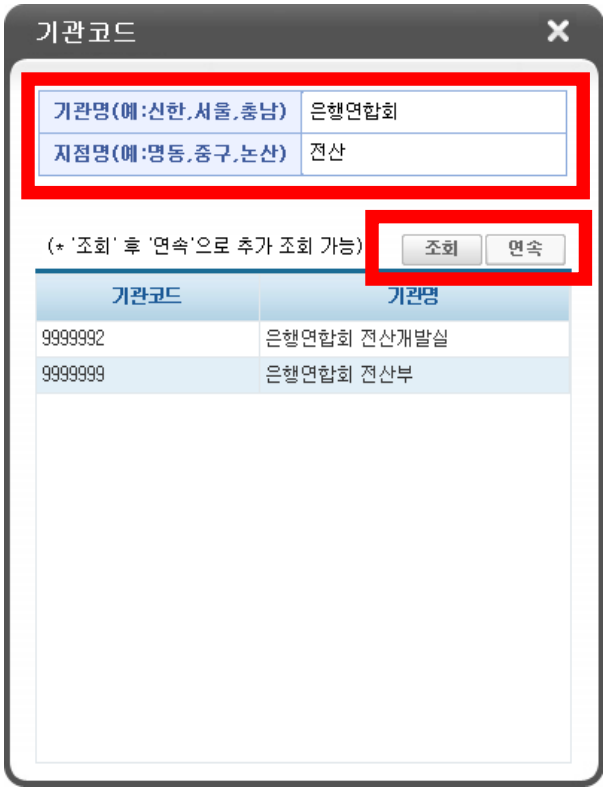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5)**

✓ 통합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① 신용정보 기관코드 돋보기 클릭, ② 해당 대부업체 기관코드 검색 및 선택

① 상호명으로 조회(여러 기관이 나올 경우, 추가 버튼클릭), 다양한 키워드로 해도 기관명이 안나오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문의 요망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 정보 변경시 처리방법

### 업체명변경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업체명 변경요청(관련 공문 및 등기부등본 첨부)

### 고정 IP주소 변경시

대부업협회로 고정IP주소 변경요청
대부업협회는 업권의 요청을 취합하여, 집중기관에 통보

### 담당자 변경시

통합업무시스템 ID신규 발급
(발급절차는 동일하며, 전 담당자 ID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 담당자가 쓰던 ID 해지요망)

**회원가입 신청(6)**

✓ 신청자 정보(ID, 성명, 핸드폰, E-mail) 작성

ⓘ E-mail을 잘못 입력할 경우 임시 비밀번호 수신이 불가능 하므로 주의 요망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 업무권한 관련 안내

### 필수항목

1-2) 신용도판단, 공공정보
1-3) 개인대출정보
1-5) 개인채무보증정보
1-9) 인적 정보 관리
4-1) 파일 전송(정규)

### 선택항목(기업정보 집중업체)

2-1) 기업신용공여 정보

※ 기타권한은 필요 시 추가 가능하며, 해당 권한 신청 후 3개월간 미사용 시 권한 해제

**회원가입 신청(7)**

✓ 업무권한 부분에 해당기관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체크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회원가입 신청(8)**

✓ 기관정보, 신청자정보, 업무권한 작성 완료 후 신청서 출력 클릭

ⓘ 신청하기 클릭이전에 반드시 신청서 출력을 먼저 할 것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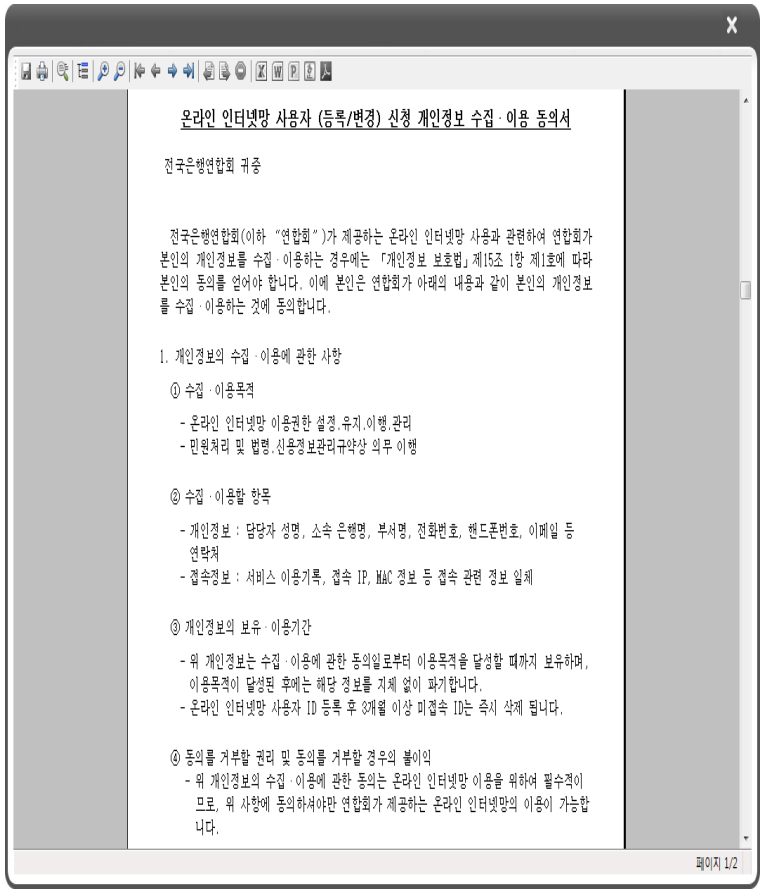

온라인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변경) 신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전국은행연합회 귀중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하여 연합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연합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수집 · 이용목적

- 온라인 인터넷망 이용권한 설정.유지.이행.관리
- 민원처리 및 법령.신용정보관리규약상 의무 이행

②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정보 : 담당자 성명, 소속 은행명, 부서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접속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IP, MAC 정보 등 접속 관련 정보 일체

③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하며,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온라인 인터넷망 사용자 ID 등록 후 3개월 이상 미접속 ID는 즉시 삭제 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온라인 인터넷망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연합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넷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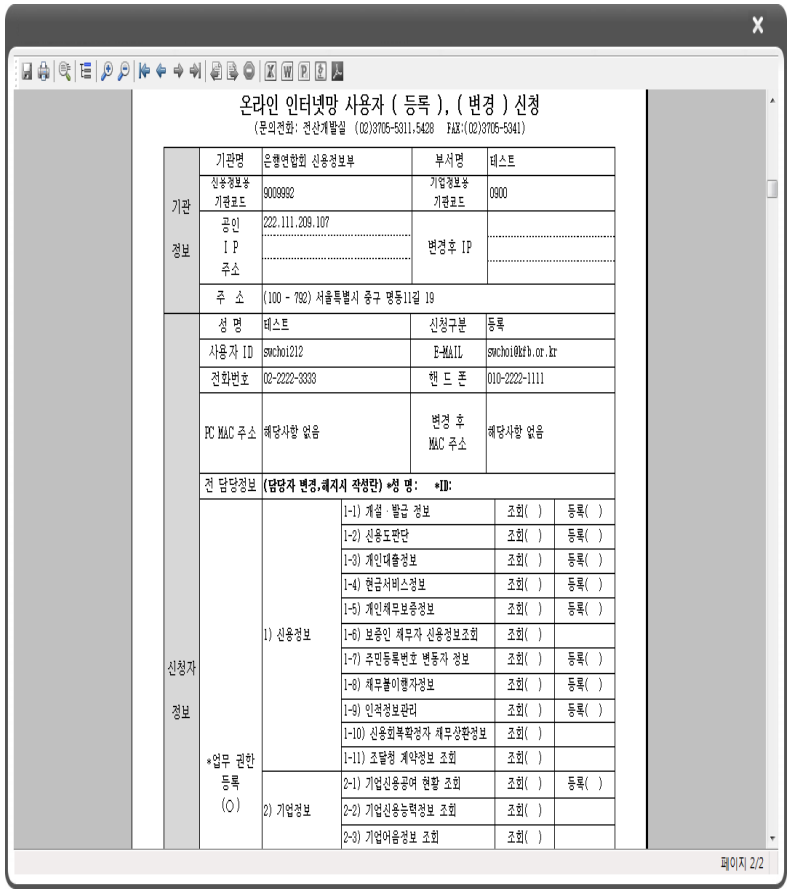

온라인 인터넷망 사용자 ( 등록 ), ( 변경 ) 신청

(문의전화: 전산개발실 (02)3705-5311,5428 FAX:(02)3705-5341)

| | | | | | |
|---|---|---|---|---|---|
| 기관 정보 | 기관명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 | 부서명 | 테스트 |
| | 신용정보용 기관코드 | 9009982 | | 기업정보용 기관코드 | 0900 |
| | 공인 I P 주소 | 222.111.209.107 | | 변경후 IP | |
| | 주 소 | (100 - 79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 | | |
| 신청자 정보 | 성 명 | 테스트 | | 신청구분 | 등록 |
| | 사용자 ID | swchoi212 | | E-MAIL | swchoi@kfb.or.kr |
| | 전화번호 | 02-2222-3333 | | 핸 드 폰 | 010-2222-1111 |
| | PC MAC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후 MAC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 | 전 담당정보 | (담당자 변경,해지시 작성란) *성 명: *ID: | | | |
| | *업무 권한 등록 (O) | 1) 신용정보 | 1-1) 개설 · 발급 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2) 신용도판단 | 조회( ) | 등록( ) |
| | | | 1-3) 개인대출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4) 현금서비스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5) 개인채무보증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6) 보증인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 조회( ) | |
| | | | 1-7) 주민등록번호 변동자 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8) 채무불이행자정보 | 조회( ) | 등록( ) |
| | | | 1-9) 인적정보관리 | 조회( ) | 등록( ) |
| | | | 1-10) 신용회복확정자 채무상환정보 | 조회( ) | |
| | | | 1-11) 조달청 계약정보 조회 | 조회( ) | |
| | | 2) 기업정보 | 2-1) 기업신용공여 현황 조회 | 조회( ) | 등록( ) |
| | | | 2-2) 기업신용능력정보 조회 | 조회( ) | |
| | | | 2-3) 기업여음정보 조회 | 조회( ) | |

페이지 2/2

**회원가입 신청(9)**

✓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 담당부서장 서명

✓ 해당 문서를 은행연합회 전산개발실(팩스)로 전송

① 팩스번호 : (02)3705-5341(변동이 가능하므로, 신청서에 명시된 팩스 번호 확인 요망)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회원가입 신청(10)**

- ✓ 신청서를 출력 및 팩스전송 완료 후 회원가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당 회원가입 신청 검토 완료 후 임시 비밀번호를 신청자 정보에 기재한 E-mail로 송부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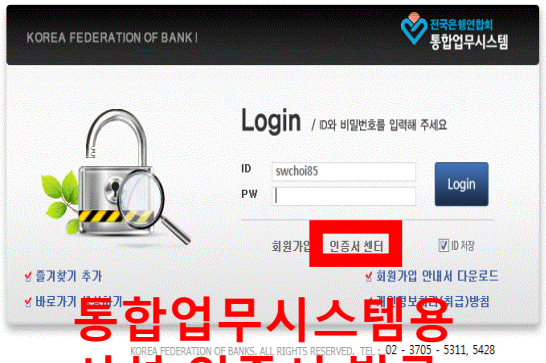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1)**

- ✓ 회원가입 절차 완료 후 인증서 발급 절차 진행
- ✓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인증서 센터 클릭 → ‘발급’ 혹은 ‘바로가기’ 버튼 클릭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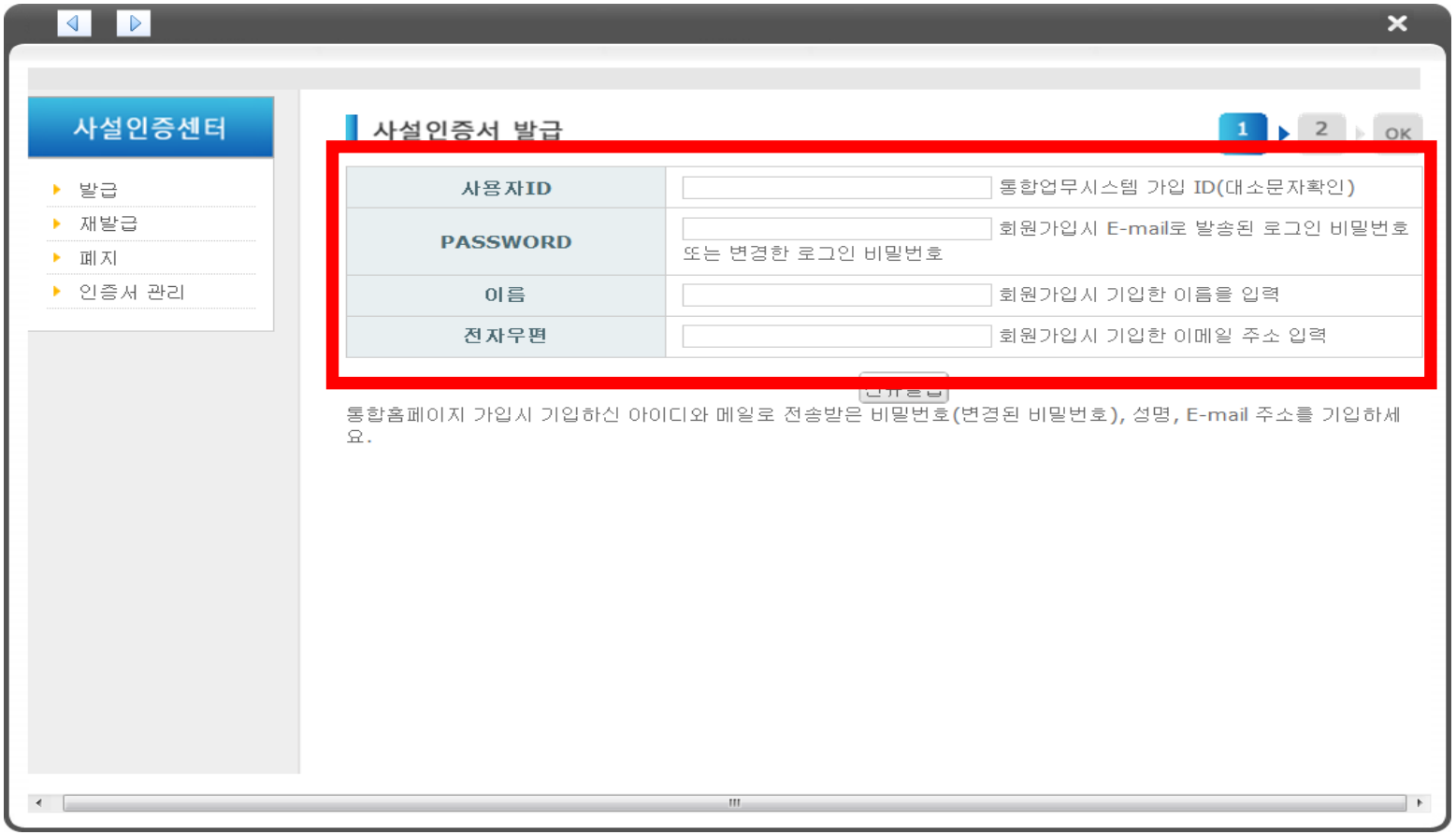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2)**

- ✓ 회원가입 신청시 기입한 ID/이름/전자우편 및 회원가입 승인메일에 제공된 임시 비밀번호(비밀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변경한 비밀번호) 입력
- ✓ ‘신규발급’ 클릭하여 인증서 발급 완료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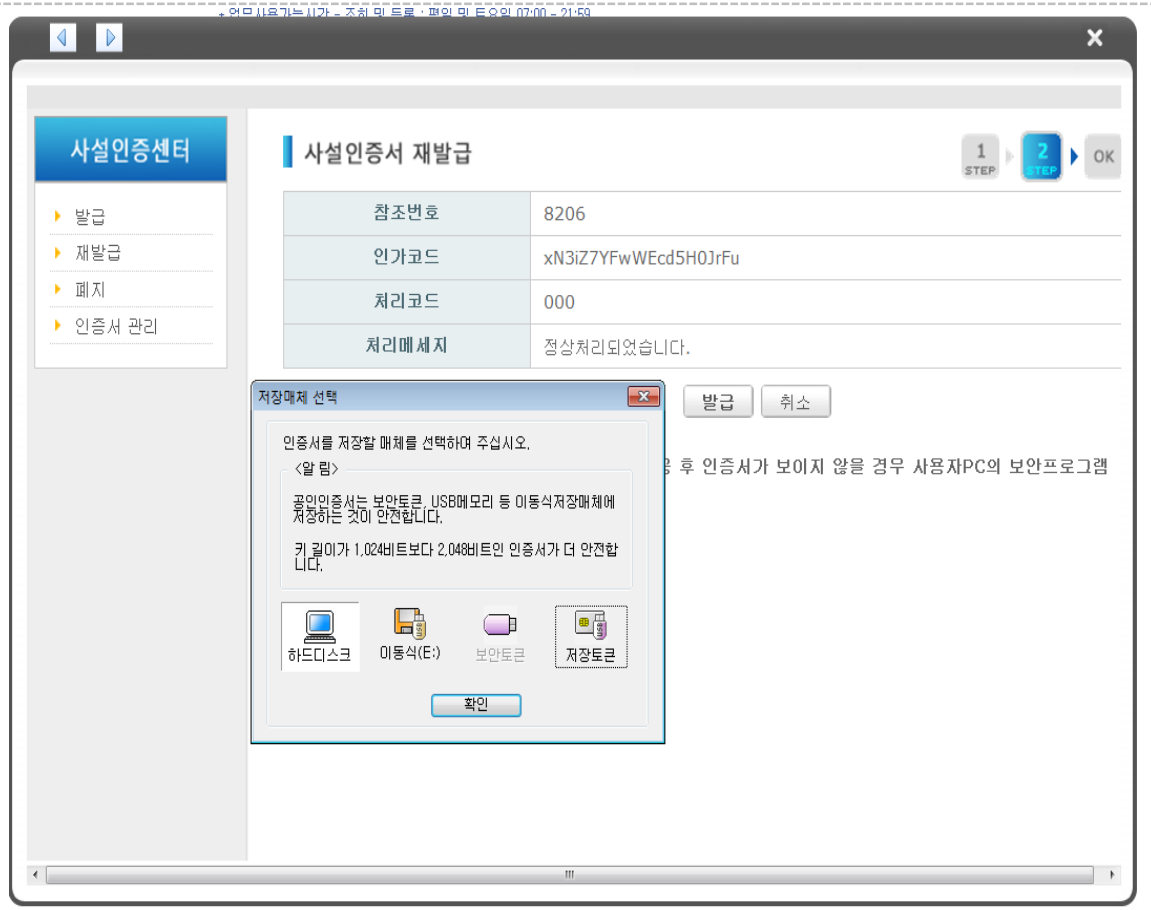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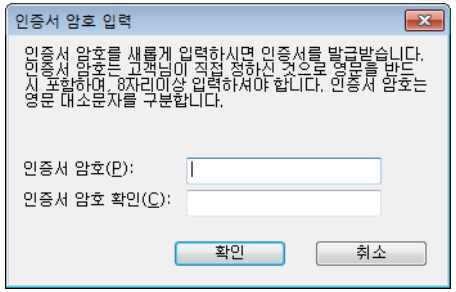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3)**

- ✓ 사설인증서 저장매체 선정(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
- ✓ 저장매체 확인 후 신규 비밀번호 설정
  - ① 통합업무시스템 접속시 통합업무시스템 비밀번호 / 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야 하는 바, 두 비밀번호 모두 철저 관리 요망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 업무사용가능시간 - 조회 및 등록 : 평일 및 토요일 07:00 - 21:59
  - 파일전송 : 평일, 토요일, 공휴일 24시간, 단, 공휴일에 업로드한 파일 처리 불가.
* 로그인시 기존 인증서가 안보이는 사유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입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으세요.
* 인증서 발급 실패 또는 인증서 정상 발급 후,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사용자 기관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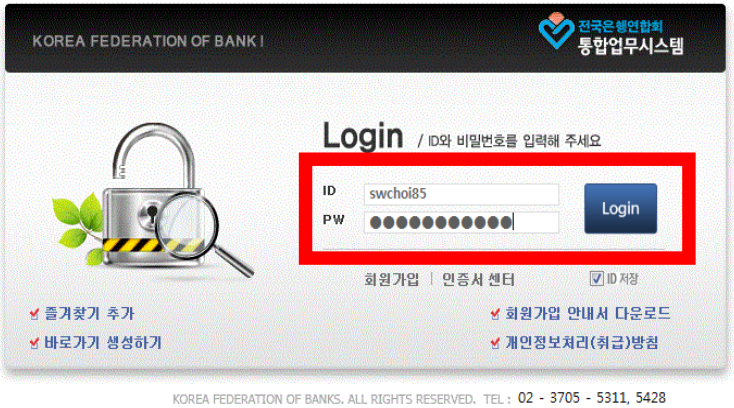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4)**

✓ 인증서 발급 완료 후 실제 통합업무시스템 접속(ID / PW(임시) 입력)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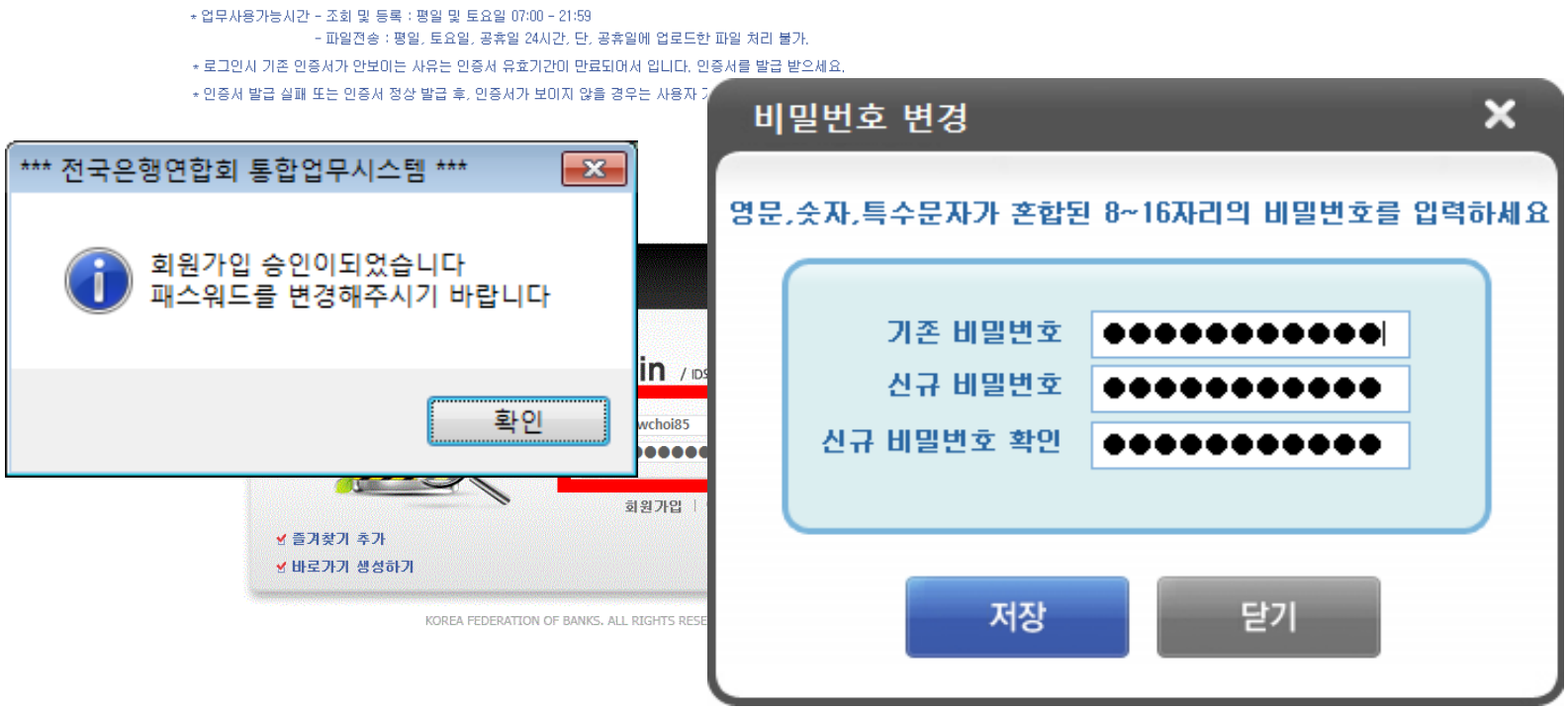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5)**

✓ 임시비밀번호를 실제 담당자가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

# Ⅱ.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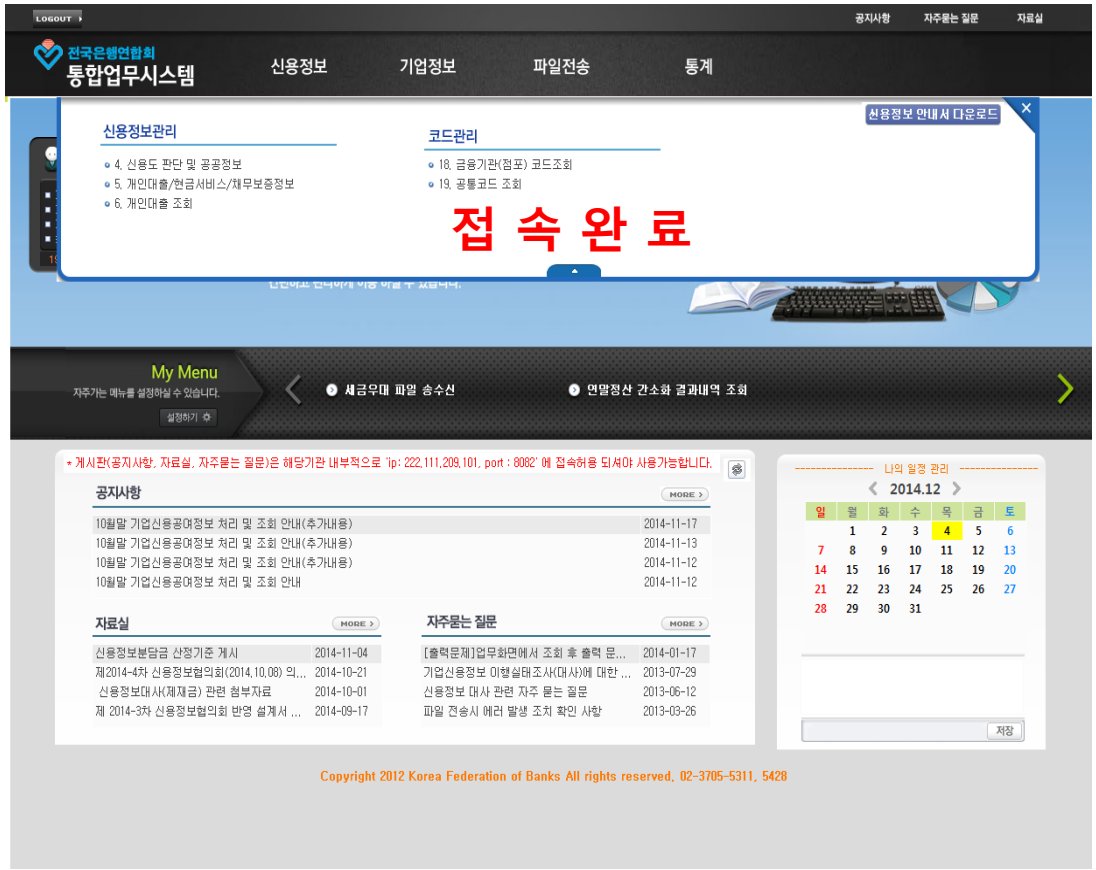


**회원가입 신청(16)**

✓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신청 절차 최종 완료 (통합업무시스템 접속 완료)

#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 | |
|---|---|
| **신용정보 등록** | 신용정보의 등록사유가 생기는 경우, 해당 등록코드와 등록 시기에 맞게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에 등록하는 행위<br>ⓘ (예시) A대부업체에서 B에게 개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A대부업체 담당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개인대출 0031(등록코드)을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등록시기)에 집중 |
| **신용정보 정정** | 기등록한 신용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현재시점 기준 정확한 정보로 바꿔 주는 행위<br>ⓘ (예시) B가 A대부업체에 개인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A대부업체 담당자는 일부 상환한 만큼 등록금액을 정정 |
| **신용정보 해지(제)** | 신용정보의 해지(제)사유가 생기는 경우, 기집중된 정보를 정확한 해지(제)코드에 맞게 지워주는 행위<br>ⓘ (예시) B가 A대부업체에 개인대출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경우, A대부업체 담당자는 기등록한 0031코드를 5영업일 이내에 0032코드로 해지 |
| **신용정보 삭제(등록취소)** | 신용정보 등록 자체가 잘못되어, 기등록된 신용정보를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정보조회시 보이는 정보없음)<br>ⓘ (예시) A대부업체에 B에게 등록할 정보를 C에 오등록한 경우, A대부업체 담당자는 C에 등록한 정보를 등록취소(0077)하며, 금융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 | |
|---|---|
| **연체기산일**<br>**등록사유발생일**<br>**해지(제)사유발생일**<br>**기록보존기간** | (연체기산일) 약정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날<br>(등록사유발생일) 연체기산일로부터 해당 개월이 지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br>(해지(제)사유발생일) 기등록된 신용정보를 해지(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br>(기록보존기간) 해제사유발생일 이후 신용정보의 해제사실을 활용 및 관리하는 기간 |

ⓘ (예시) 등록코드 : 0101(대출원금, 이자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최초약정기일 : 2014년 1월 1일, 등록금액 : 3000만원, 등록사유발생일에서 4개월 후 대출원금 전액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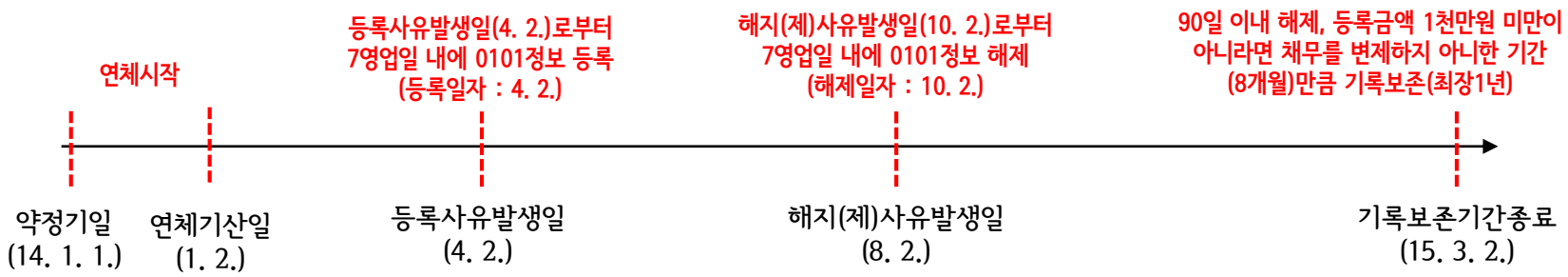


※ 신용정보등록시 등록사유발생일에 연체기산일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 | |
|---|---|
| **기간경과 해제** |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해제함 |
| **등록금액**<br>**연체금액** | (등록금액) 등록사유발생일의 잔여대출원금<br>ⓘ 등록금액은 특별한 경우(잔여대출원금이 증가하는 경우, 업무착오로 금액을 잘못 등록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금액 정정을 할 수 없음<br>※ 신용도판단정보에서의 등록금액에 관한 설명이며, 신용거래정보의 등록금액은 정정 가능<br>(연체금액) 연체중인 잔존채권원금(이자 및 제비용 제외)<br>ⓘ 연체금액은 연체금이 일부상환 등 다양한 사유로 금액 정정 가능 |

ⓘ (예시) 등록코드 : 0101(대출원금, 이자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최초약정기일 : 2014년 1월 1일, 대출원금 : 6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원금 상환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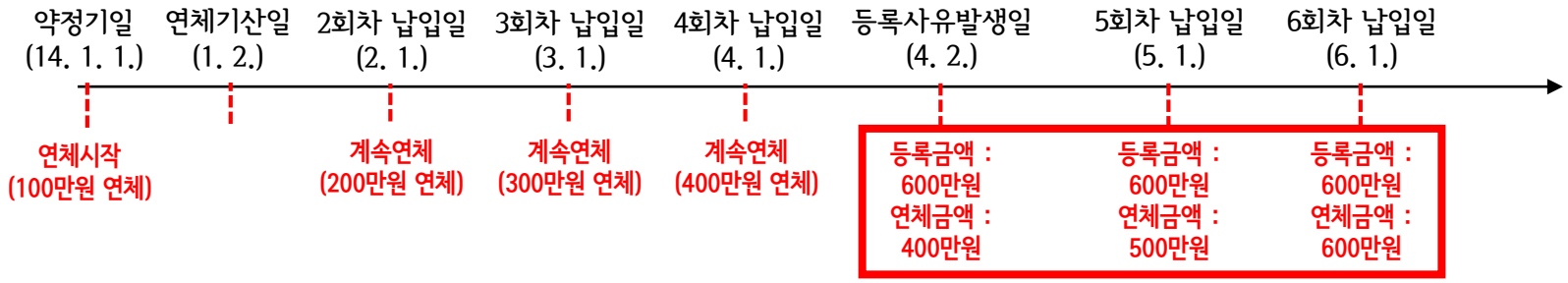

#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 | |
|---|---|
| **발생내역별 관리** | 해당 신용정보가 발생한 건별(계좌별)로 신용정보를 관리<br>ⓘ 개인대출정보와 연체 등 정보는 발생내역별로 관리 |
| **신용정보주체별 관리** | 해당 신용정보가 여러건(계좌)이 발생하더라도 한 신용정보 주체 앞으로 신용정보를 집중<br>ⓘ 개인대출정보와 연체 등 정보를 제외한 기타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 관리 |

ⓘ (비교) 개인대출정보(발생내역별관리)와 채무보증정보(신용정보주체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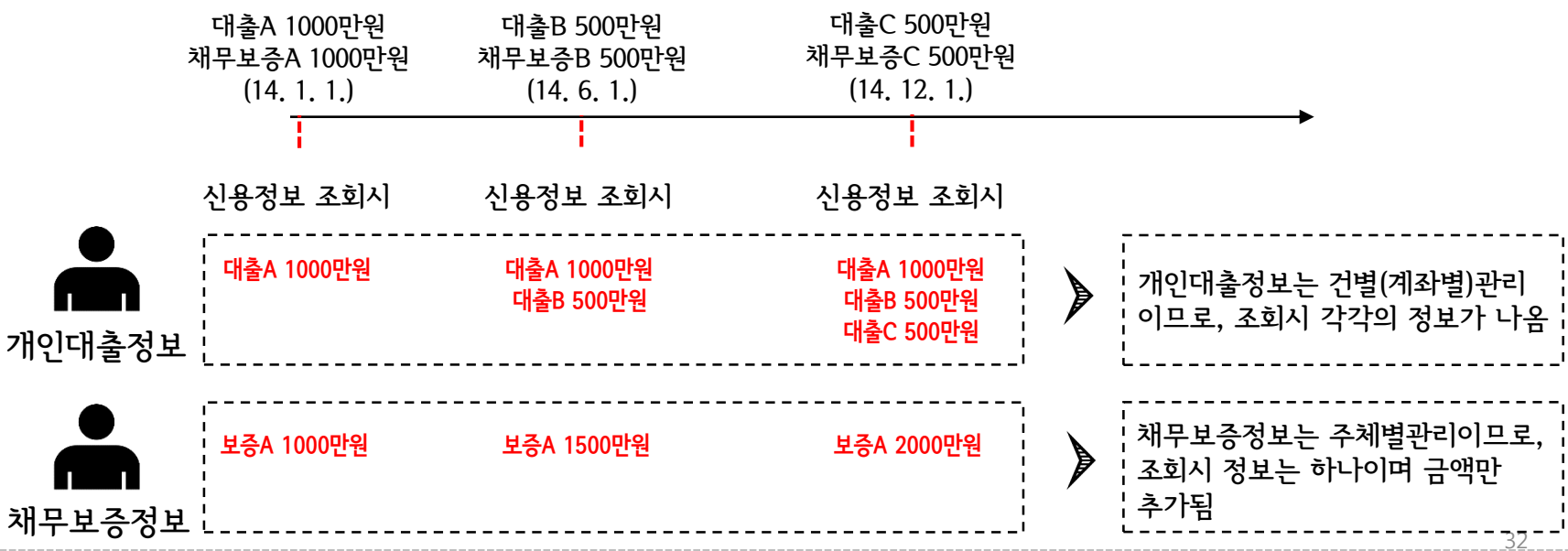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신용도 판단정보**

✓ 정의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의 종류

**연체정보**

대출금연체
신용카드대금연체
외환관련연체
무담보미수채권 등

**대위변제,대지급**

지급보증, 대지급, 대위변제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소구, 구상불능 등

**부도정보**

어음수표부도
가계수표최종부도
당좌수표최종부도
약속어음최종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
가계당좌불량
신용카드관련부당행위자
신용회복지원관련자 등

**관련인정보**

연체등 정보가 등록된 법인의 관련인(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자,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등)

**※ 신용도판단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등록·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 > 관련법규에서 최신규약을 다운로드하여 참조 요망**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신용도 판단정보 주요내용 (1)**

## 등록사유 : 신용정보 관리규약 확인 요망

ⓘ <별표 1> 신용정보 관리규약 → 3. 신용도판단정보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등록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예시) 대출원금, 이자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등록코드 : 0101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등록코드 : 0901

## 신용정보 등록사례

ⓘ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② 타 금융기관에 양도한 채권을 환매하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가 폐지(신용회복 실효)되는 경우, ④ 개별업체와 맺은 약정(분할상환 약정, 화해계약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

## 해제사유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신용정보 관리규약 확인 요망)

ⓘ <별표 1> 신용정보 관리규약 → 3. 신용도판단정보 표를 확인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의 해제사유를 보고 해당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

ⓘ (예시) 등록코드 : 0101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등록코드 : 090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신용정보 해제사례

ⓘ ① 타 금융기관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② 파산면책, 회생인가, 신용회복 지원 결정 등, ③ 채권 포기, 감면, 면제, 유예, 개별 신용회복 또는 분할상환 약정 등

※ 실질적으로는 연체상태(연체이자 부과 등)이나, 은행연합회 정보만 해제하는 것은 불가(위반시 제재금 부과)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신용도 판단정보 주요내용 (2)**

## ✓ 신용정보 정정

① 일반적으로 사유발생일, 등록금액은 정정 불가(정정시 제재금 예정부과)
※ 담당자의 착오등록 등으로 정정 사유 발생시 정정처리 요망

① 연체금액은 상환 시 정정(이자만 남는 경우 연체금액을 1로, 제비용까지 남는 경우 연체금액 2로 등록)

① 특수채권 편입시 등록코드의 앞자리에 "7" 추가
(예시) 0101 연체정보를 대손상각 등으로 인해 특수채권 편입시 등록코드를 70101로 변경

## ✓ 신용정보 삭제(등록취소)

① 착오로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망, 양수채권 환매, 약정취소 등 최초에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정보 삭제(등록취소)

## ✓ 등록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 기간경과해제 :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정보는 7년 경과시 해제

## ✓ 기록보존기간

① 연체 등 정보 :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금융질서문란정보 : 5년
기관경과 해제 시 : 1년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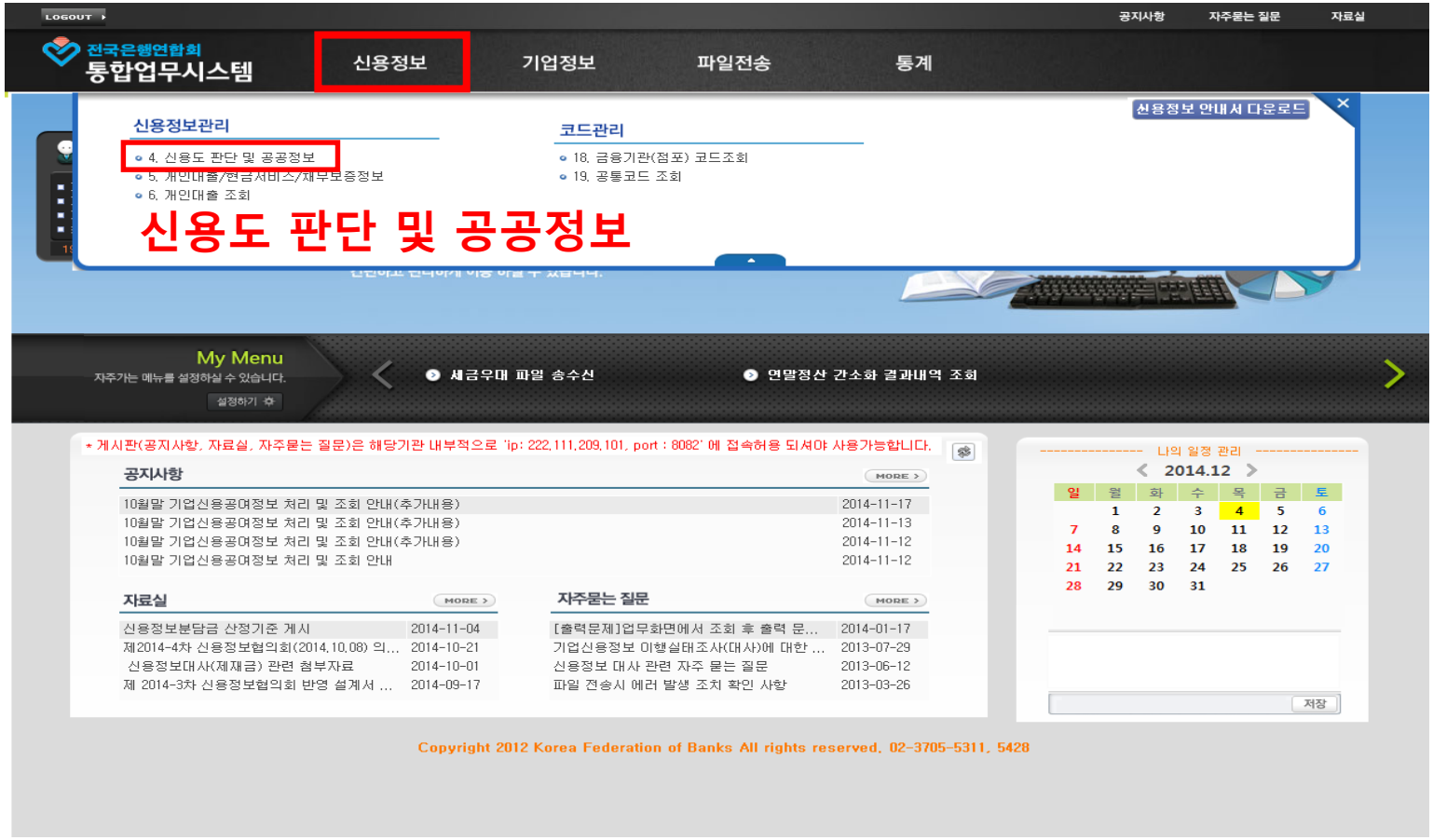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1)**

✓ 메인화면 상단의 **신용정보** 탭 클릭 → **신용도 판단 및 공공정보** 클릭

ⓘ 향후 신용도판단정보 조회, 등록, 정정, 해제, 삭제 등 업무처리는 해당 탭에서 업무처리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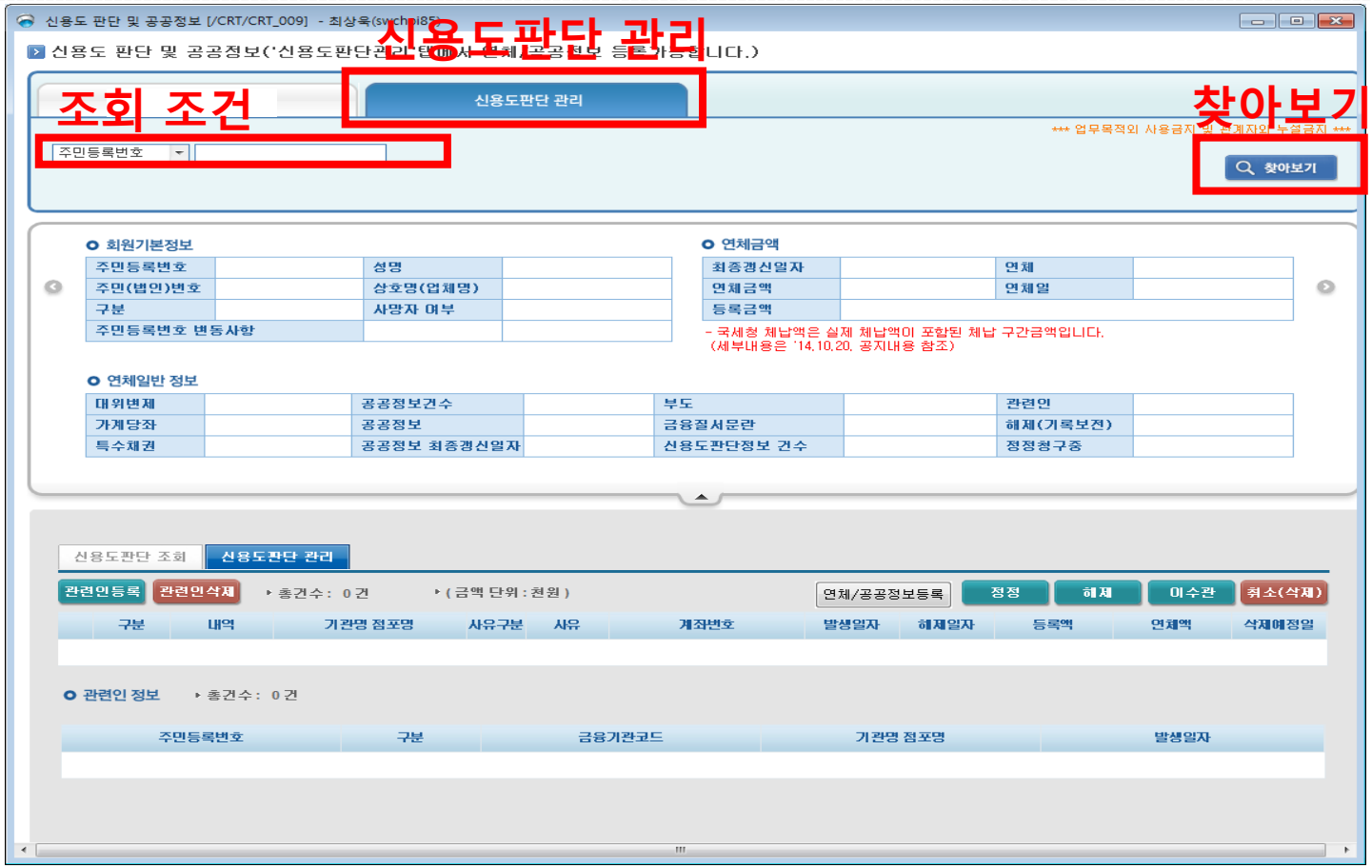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2)**

✓ 팝업화면 상단의 **신용도판단관리** 탭 클릭 → **식별번호 입력** 후 **찾아보기** 클릭 → 해당 식별번호로 집중한 **신용정보 조회**

ⓘ 조회 조건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구분하여 선택한 후 식별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는 앞자리에 999입력 후 조회, 예시 : 123-45-67890 → 9991234567890)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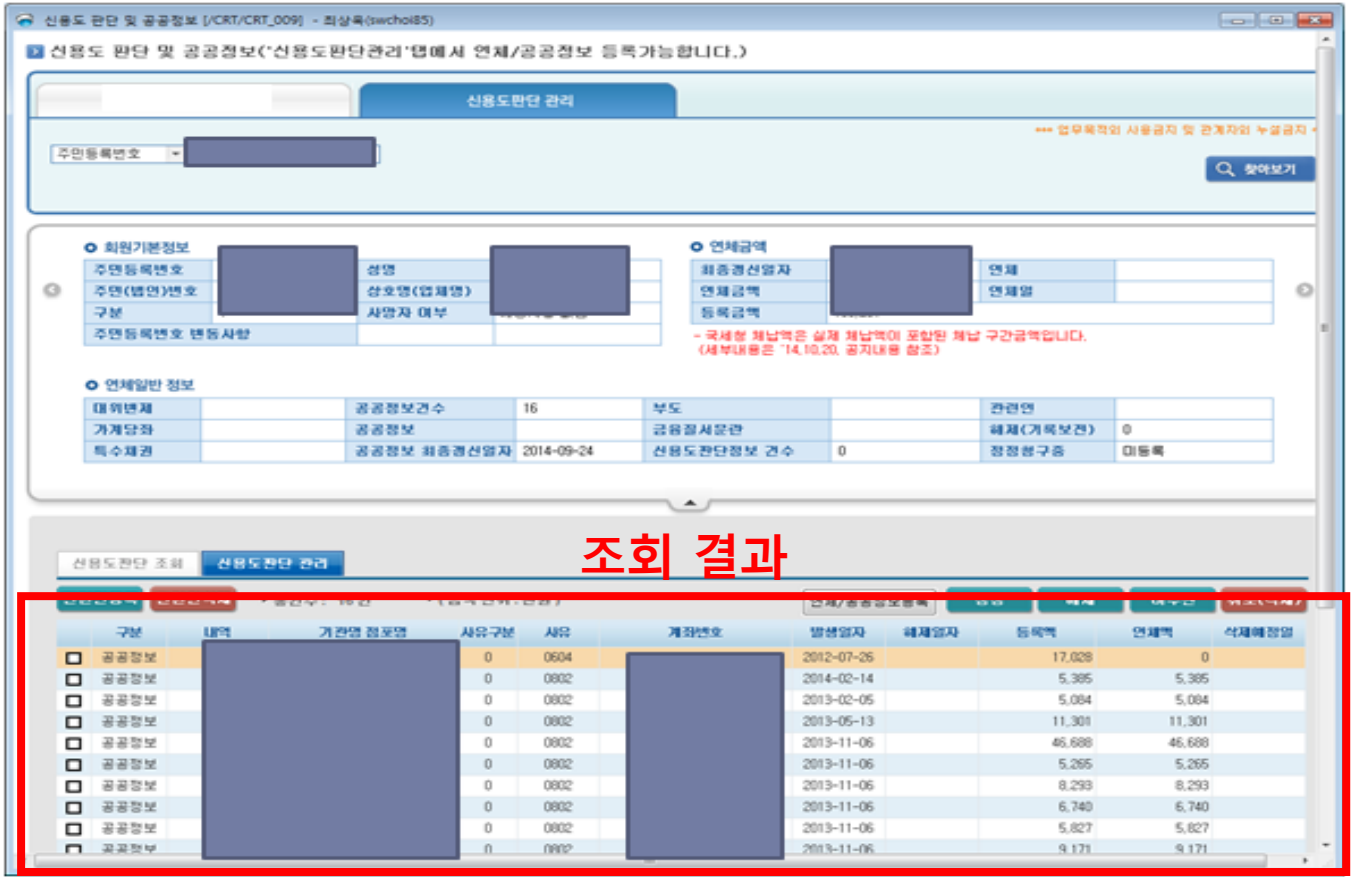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3)**

✓ 화면 하단(**신용도판단 관리**)에 표시되는 내역이 해당 식별정보에 등록된 신용정보 현황(자사가 등록한 정보만 조회됨)

① 조회결과가 없으면 해당 식별정보에 등록된 정보가 없음을 의미함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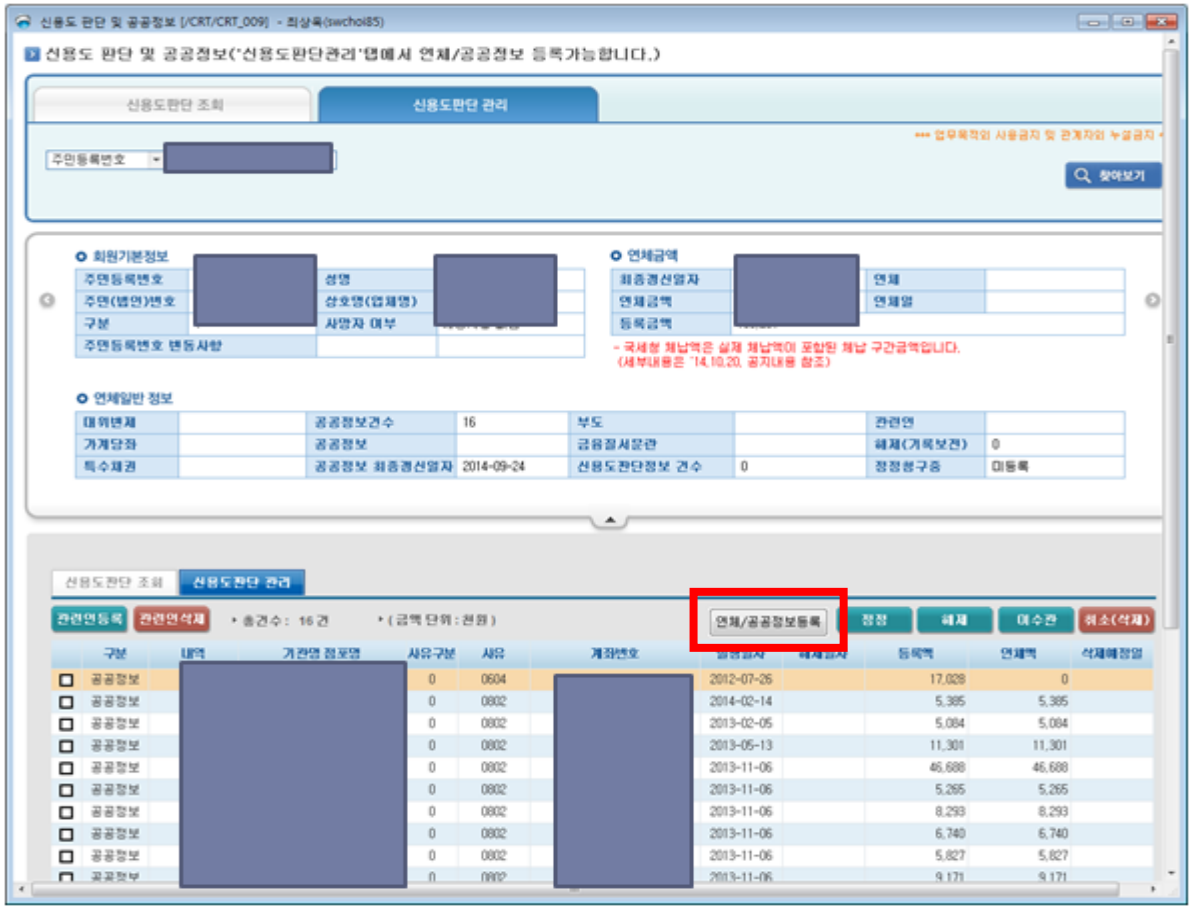


## 조회, 등록

- 해당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기 이전에 신용정보 조회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 완료 후 신용정보 등록 요망(신용정보의 중복 등록 예방)

**정보등록 방법(1)**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기등록정보가 없음을 확인 후 **연체/공공정보등록** 버튼 클릭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관련 기본 기능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 연체정보 등록항목 안내

주민(사업자, 법인) 구분, 등록번호 및 관련 법인(주민) 등록번호 작성

| | 구분 | 등록번호 | 관련등록번호 |
|---|---|---|---|
| 개인 | 주민 등록번호 | 주민 등록번호 | 해당사항없음 (공란으로 비워둘 것)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정보등록 방법(2)**

✓ **연체등록** 팝업을 열람하면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등록항목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작성 필요 없음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 연체정보 등록항목 안내

### 사유구분

- 주채무자(0), 관련인(9), 특수채권편입 주채무자(7), 특수채권편입 관련인(8) 중 선택 입력

### 기업체명(상호)

- 연체 등록대상이 사업자일 경우 그 상호명 입력

### 성명(대표자)

- 연체 등록대상의 성명 입력

### 직업

- 사용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음

### 계좌번호

- 연체 등록대상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부여한 계좌번호

**정보등록 방법(3)**

✓ **연체등록** 팝업을 열람하면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등록항목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작성 필요 없음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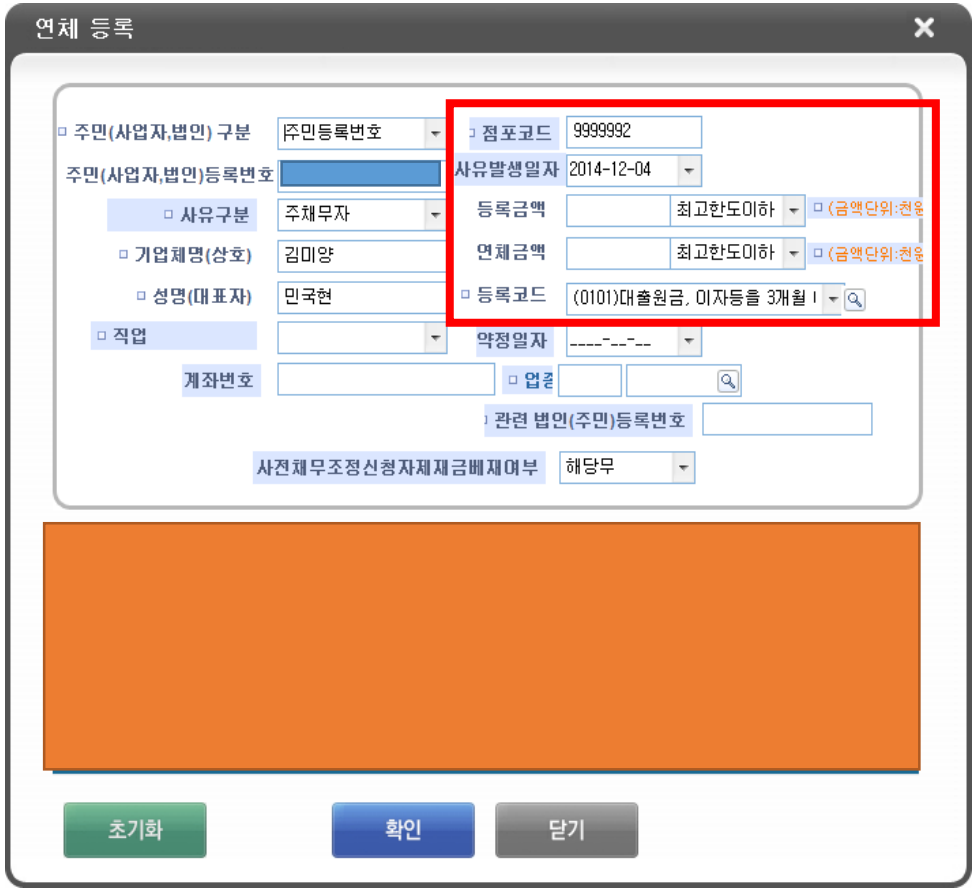


## 연체정보 등록항목 안내

### 점포코드

ⓘ 사전 안내된 해당기관의 코드(화면 접속시 자동 세팅)

### 사유발생일자, 등록금액, 연체금액

ⓘ Ⅲ. 신용정보의 기본 개념 참조 요망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하지 않음

### 최고한도

ⓘ 등록코드 0101의 경우 등록(연체)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 최고한도 이상으로 설정, 0101이외에 다른 코드의 경우 **신용정보온라인설계서 2. 3. 7. 1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금액** 참조 요망

### 등록코드

ⓘ **신용정보 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참조하여 각 상황에 맞는 등록코드 입력

**정보등록 방법(4)**

✓ **연체등록** 팝업을 열람하면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등록항목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작성 필요 없음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정보등록 방법(6)**

- 특이 사례

✓ 채권 양수 : 양수한 채권의 원정보(등록사유발생일, 등록금액 등)와 동일하게 다시 등록

①

**양도기관 A**

**기관명(코드) : A**
등록사유 : 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계좌번호 : 12345**

양수일 : 2015. 12. 15.
(양수일은 등록사유발생일이 아니므로,
정보 등록 주의 요망)

등록사유, 발생일자, 등록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정보는 동일하고, 해당 기관명과 코드만 변경)
연체금액, 계좌번호는 조건 변경시 정정

**양수기관 B**

**기관명(코드) : B**
등록사유 : 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일부 상환시 변경)**
**계좌번호 : 변경가능**

✓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별금융기관의 약정 폐지(취소)로 재등록

①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14. 1. 1.)

개인회생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
(14. 6. 1.)

개인회생 폐지로
인한 연체정보 재등록
(14. 12. 1.)

재등록 시 최초 발생한 연체정보를
그대로 다시 등록(등록사유발생일 : 14. 1. 1.)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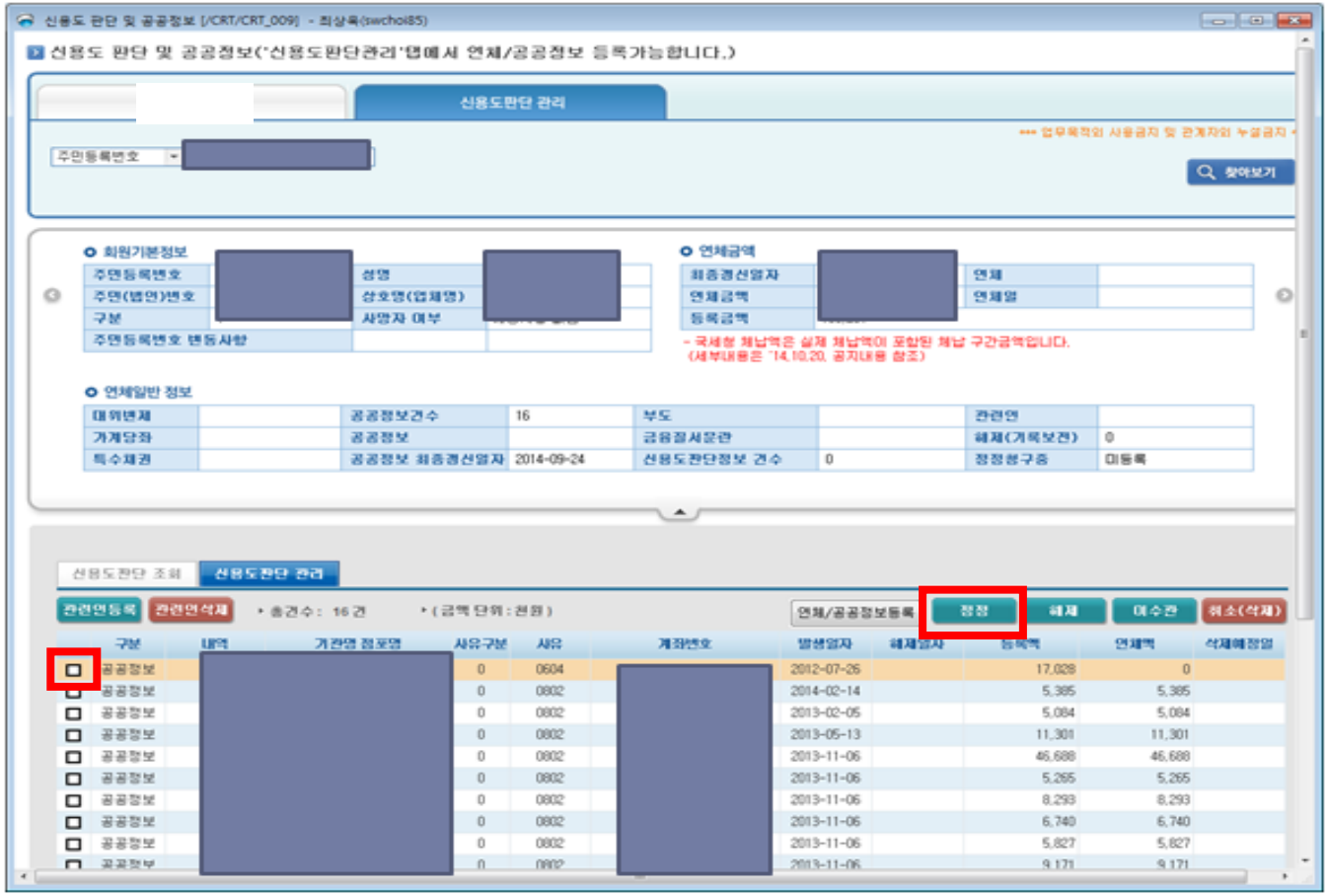


**정보정정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정정이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정정버튼 클릭**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정보정정 방법(2)**

✓ 조회 대상의 기등록 정보**(변경 전)**에서 변경이 필요한 정보만 **(변경 후)** 항목에 입력하고 확인 클릭(변경 후를 공란으로 비워두면 변경 전 정보 변경 없음)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정보정정 방법(3)**

- 특이 사례

## 대손상각 등으로 인한 특수채권 편입시 정보 정정 방법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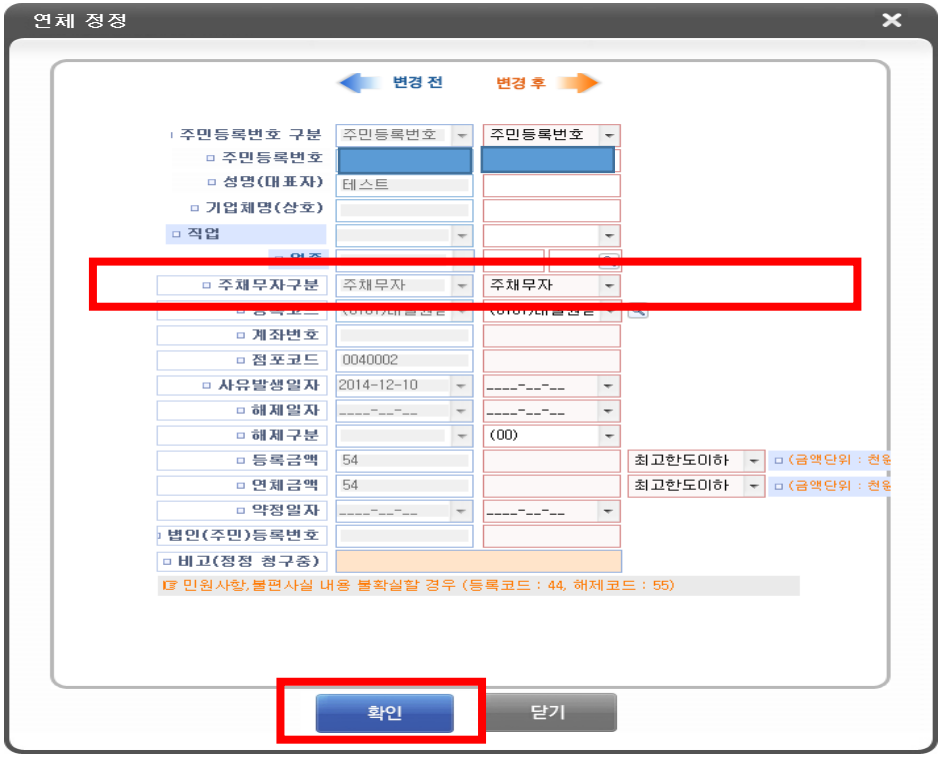


다른 정보의 변동없이 사유구분을 주채무자(0)에서 특수채권편입 주채무자(7)로 정정

**일반채권**

기관명(코드) : A
**등록사유 : "0"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계좌번호 : 12345

**특수채권**

기관명(코드) : A
**등록사유 : "7"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계좌번호 : 필요시 변경**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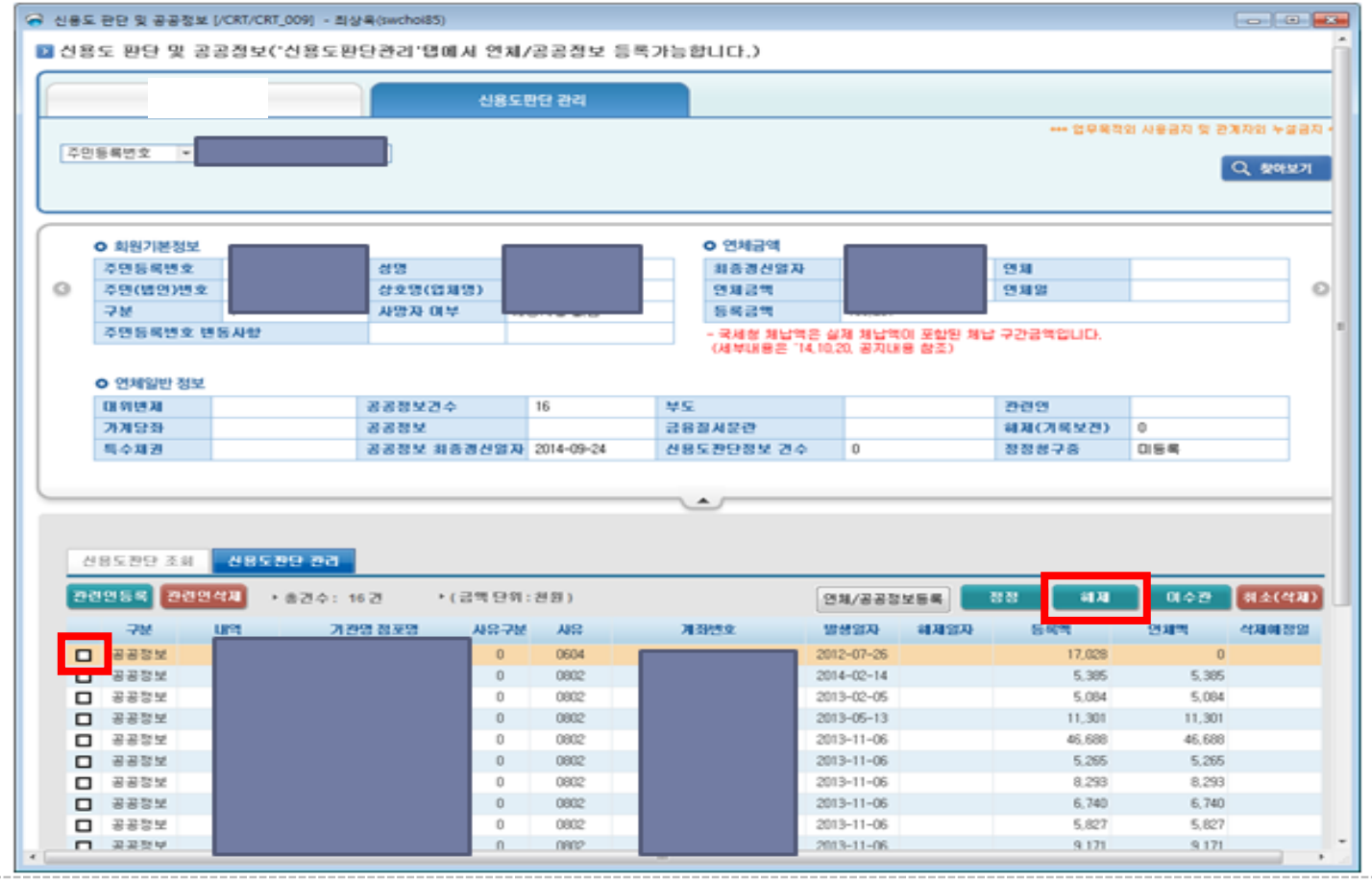


**정보해제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해제가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해제버튼 클릭**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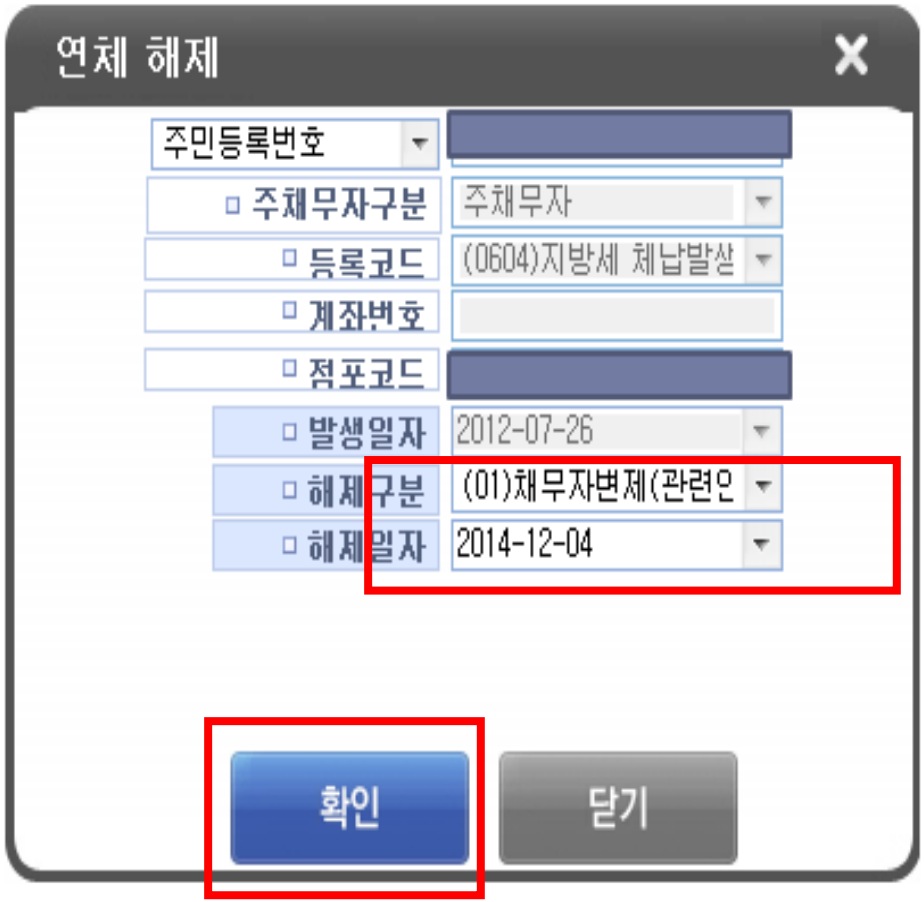


## 연체정보 해제항목 안내

### 해제구분(해제코드)

ⓘ 채무자변제 : 01, 보증인변제 : 02, 강제회수 : 03, 손실처리 : 04,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 06, 소멸시효완성 : 13, 법인의 청산 : 15, 양도(비금융기관) : 16, 양도(금융기관) : 17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요망)**

### 해제일자(해제사유발생일)

ⓘ 기등록된 신용정보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정보해제 방법(2)**

✓ 해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해제구분 및 해제 일자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해제처리 완료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정보삭제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해제가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취소(삭제)버튼 클릭**

# Ⅳ. 신용도판단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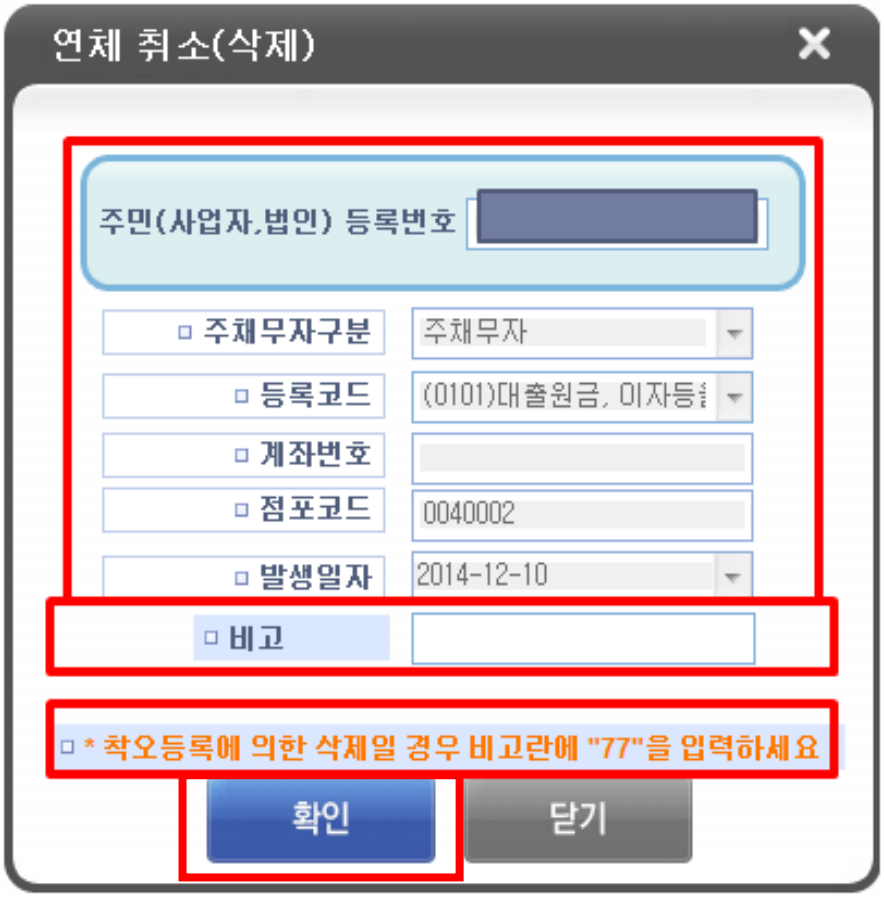


## 신용정보의 취소(삭제)

- 착오등록, 양수채권환매, 사망자, 채무부존재소송, 약정취소 등
  - ⓘ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던 기록 자체를 지우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유의 요망
    - ※ 비대상 정보 삭제시 제재금 부과, 해제건 삭제시 소급 재등록 필요

**정보삭제 방법(2)**

✓ 해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비고에 "77"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취소(삭제)제처리 완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신용거래 정보**

✓ 정의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거래정보의 종류

**개설·발급**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당좌개설·해지 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사실 관련 정보

**개인대출**

당해개인의 대출거래사실

**개인채무보증**

당해개인의 채무보증사실

**카드론**

당해개인의 카드론 거래사실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기업신용공여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사업체 등의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동자료 **2장 : 기업신용공여관련 업무** 참조 요망

※ 신용거래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등록·해지사유, 등록코드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 > 관련법규에서 최신규약을 다운로드하여 참조 요망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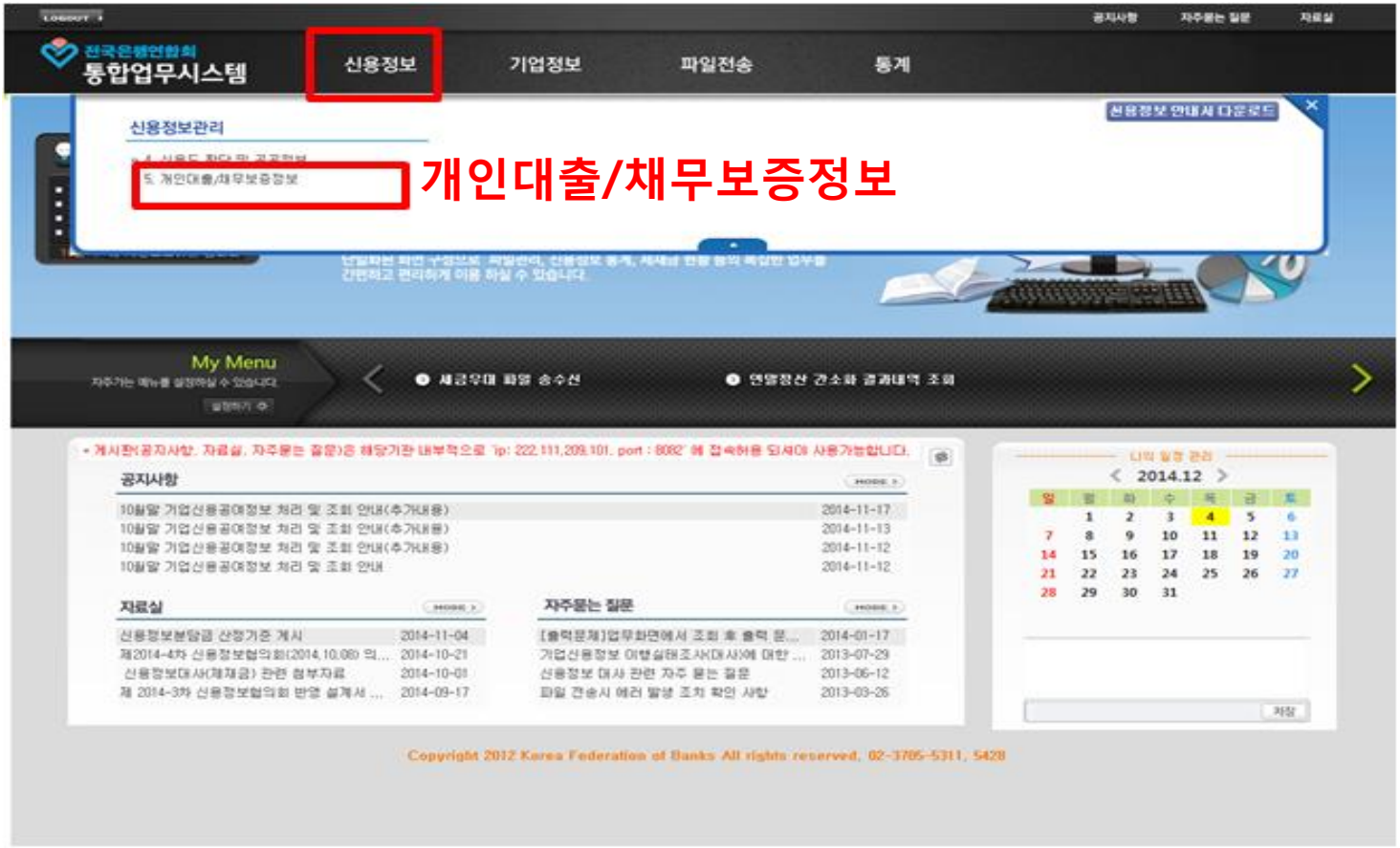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1)**

✓ 메인화면 상단의 **신용정보** 탭 클릭 → **개인대출/채무보증정보** 클릭

ⓘ 향후 신용거래정보 조회, 등록, 정정, 해지, 삭제 등 업무처리는 해당 탭에서 업무처리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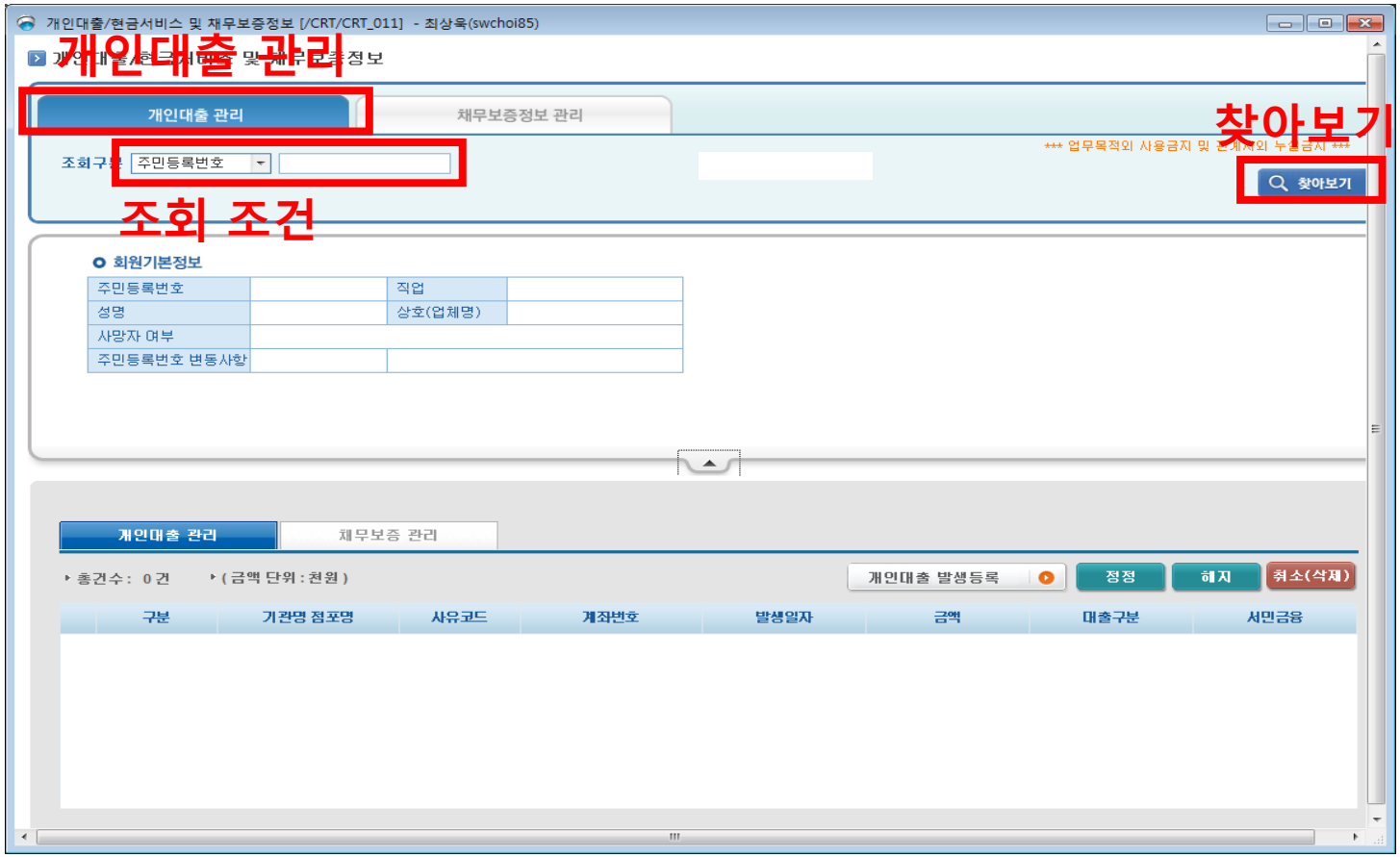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2)**

✓ 팝업화면 상단의 **개인대출관리** 탭 클릭 → **식별번호 입력** 후 **찾아보기** 클릭 → 해당 식별번호로 집중한 **신용정보 조회**

ⓘ 조회 조건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구분하여 선택한 후 식별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는 앞자리에 999입력 후 조회, 예시 : 123-45-67890 → 9991234567890)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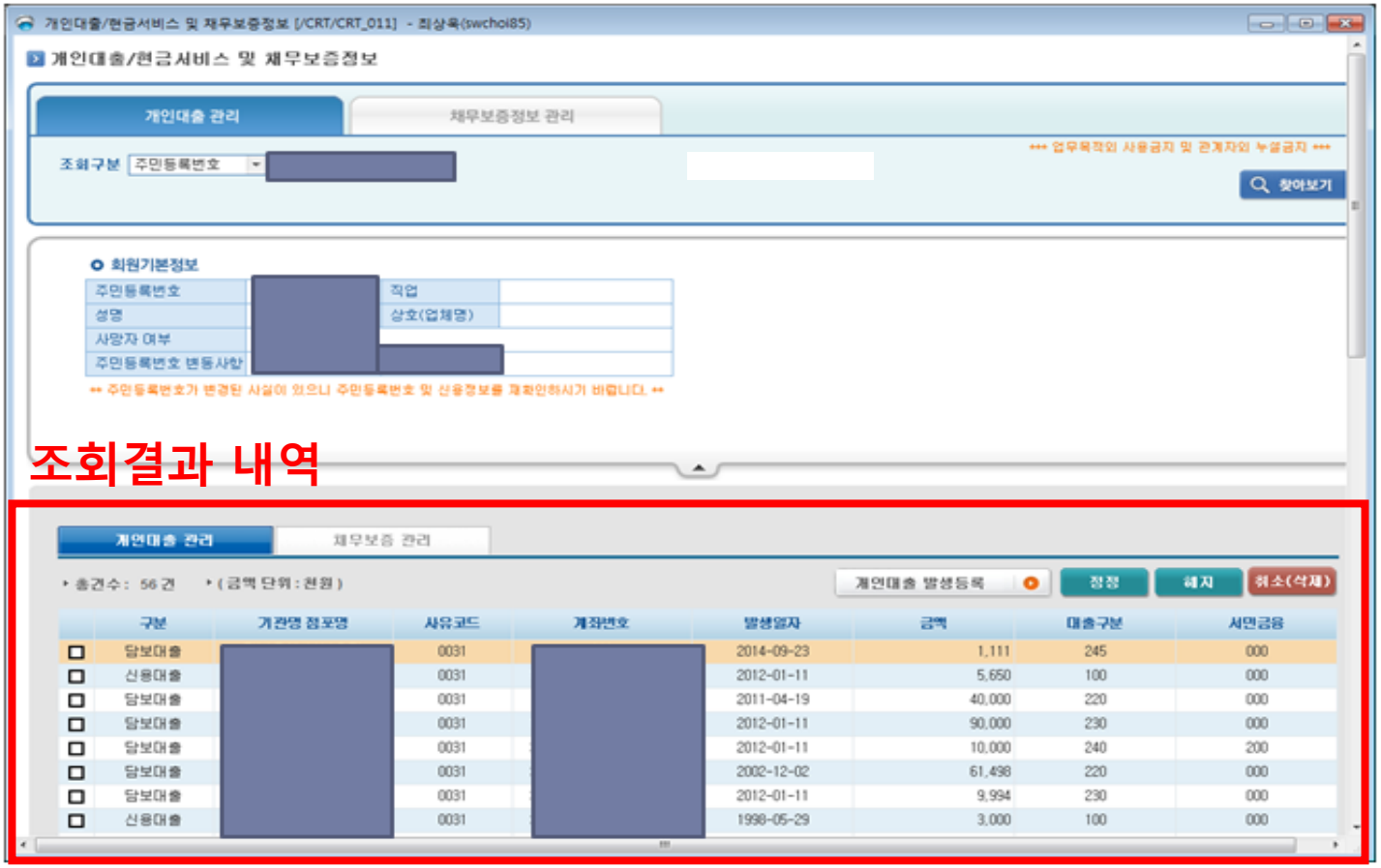


**정보조회 방법(3)**

✓ 화면 하단(**개인대출 관리**)에 표시되는 내역이 해당 식별정보에 등록된 신용거래정보 현황(자사가 등록한 정보만 조회됨)

ⓘ 조회결과가 없으면 해당 식별정보에 등록된 정보가 없음을 의미함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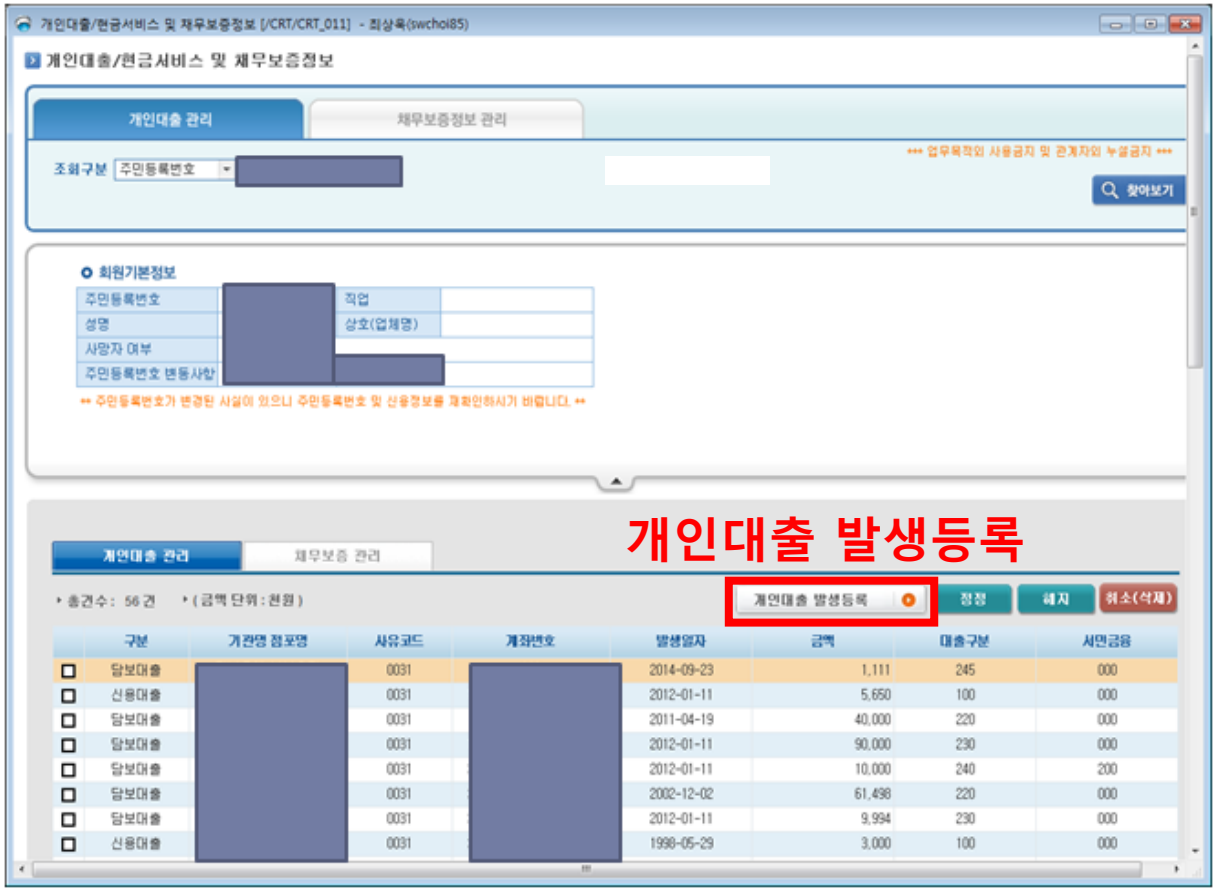


## 조회, 등록

- 해당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기 이전에 신용정보 조회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 완료 후 신용정보 등록 요망(신용정보의 중복 등록 예방)

**정보등록 방법(1)**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기등록정보가 없음을 확인 후 **개인대출발생등록** 버튼 클릭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 대출정보 등록항목 안내

**주민등록번호**

- 개인대출발생 대상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성명(대표자)**

- 연체 등록대상의 성명 입력

**직업**

- 사용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음

**계좌번호**

- 연체 등록대상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부여한 계좌번호

**점포코드**

- 사전 안내된 해당기관의 코드(화면 접속시 자동 세팅)

**사유코드**

- 개인대출 등록코드(0031) 입력

**정보등록 방법(2)**

✓ **개인대출 발생등록**에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등록항목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작성 필요 없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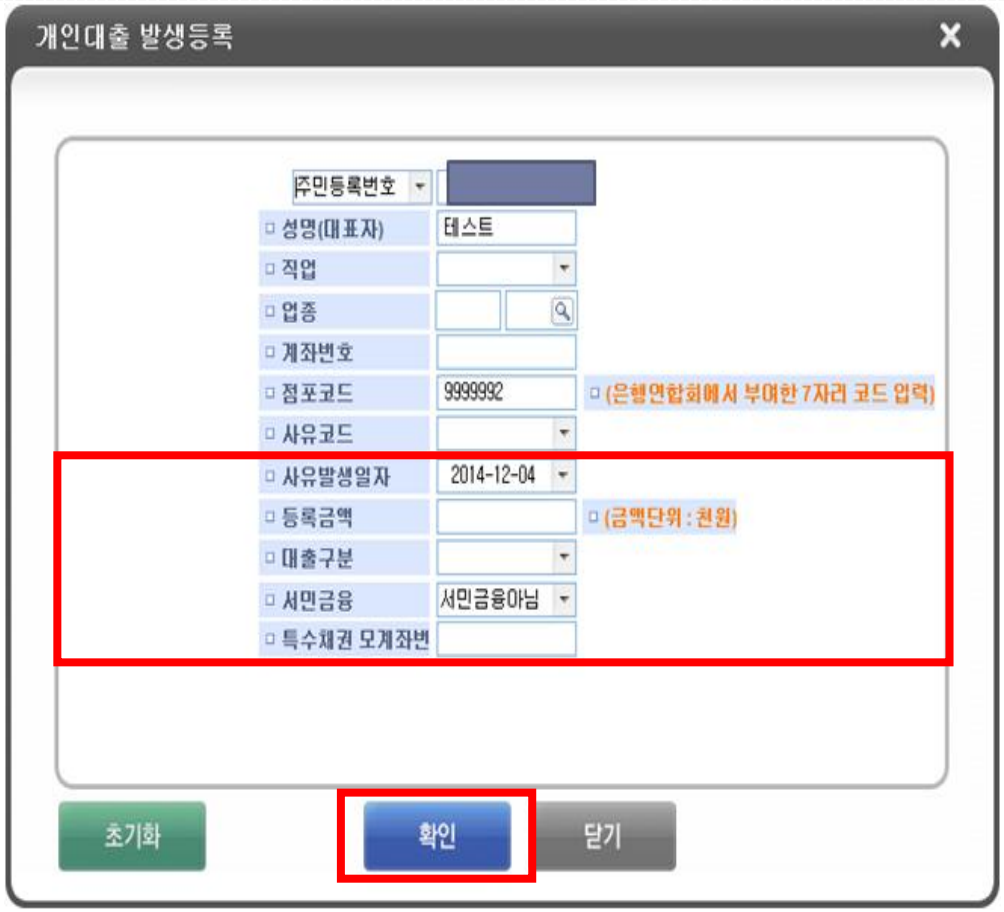


## 대출정보 등록항목 안내

### 사유발생일자

① 등록사유발생일(대출이 발생한 날) 입력

### 등록금액

① 대출금액(단위 : 천원)

### 대출구분

① 해당 대출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코드 입력
신용대출(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담보대출(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할부금융(신차할부금융, 중고차할부금융 등),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 서민금융

① 해당 대출이 서민금융(새희망홀씨, 햇살론, 기타)에 해당할 경우 입력

**정보등록 방법(3)**

✓ **개인대출 발생등록**에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① 등록항목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작성 필요 없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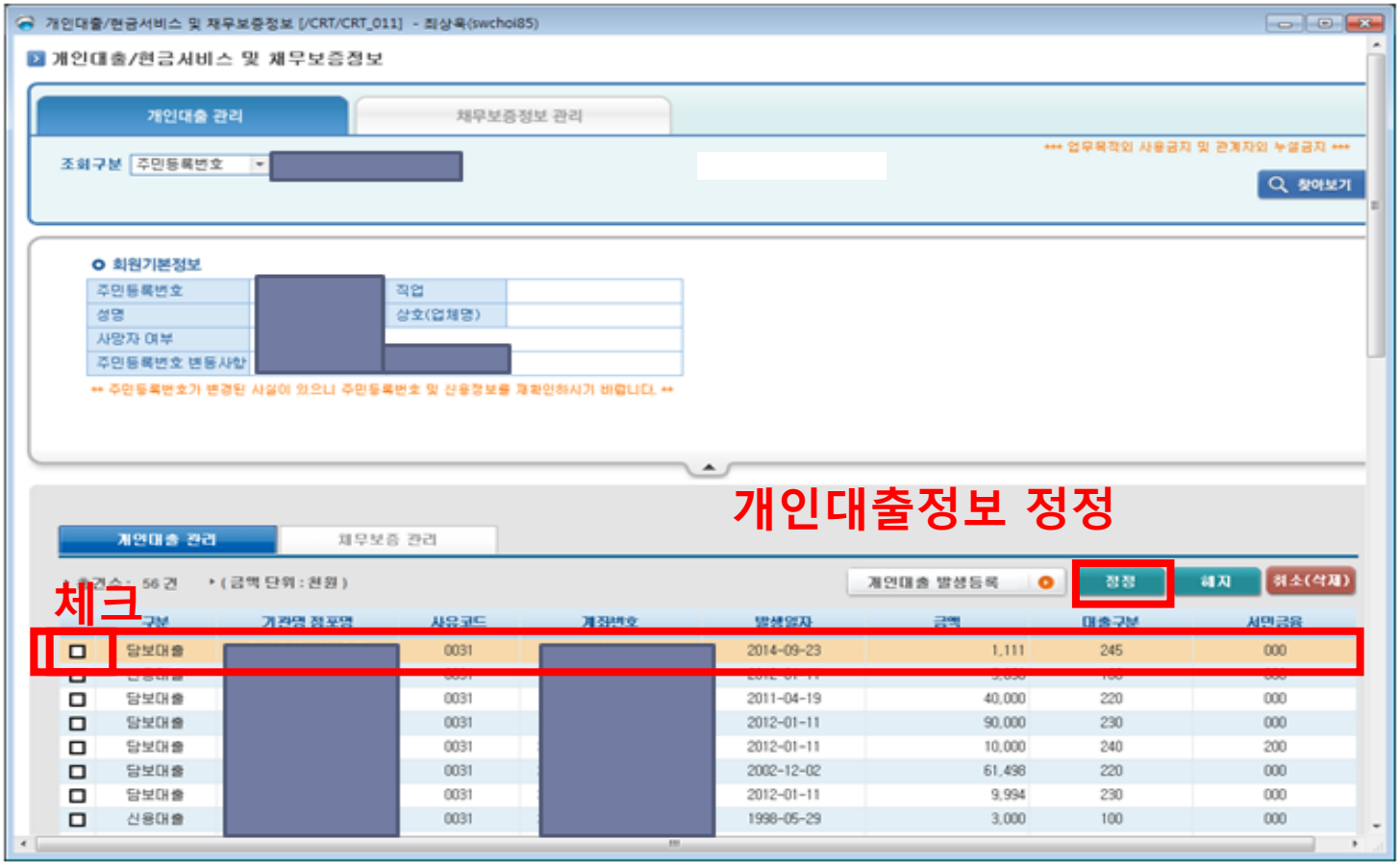


**정보정정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정정이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정정버튼 클릭**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정보정정 방법(2)**

✓ 조회 대상의 기등록 정보**(변경 전)**에서 변경이 필요한 정보만 **(변경 후)** 항목에 입력하고 확인 클릭(변경 후를 공란으로 비워두면 변경 전 정보 변경 없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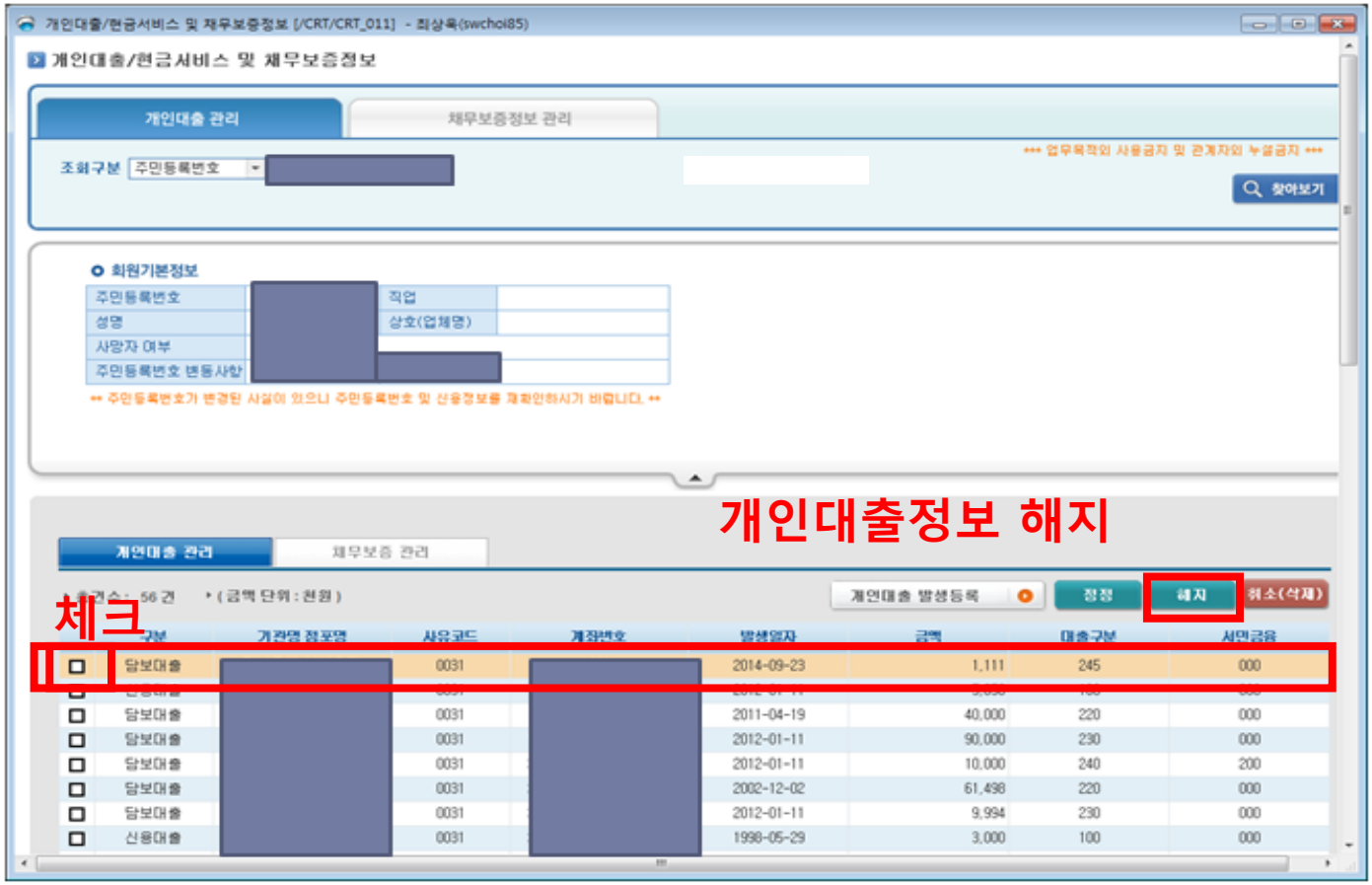


**정보해지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해제가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해지버튼 클릭**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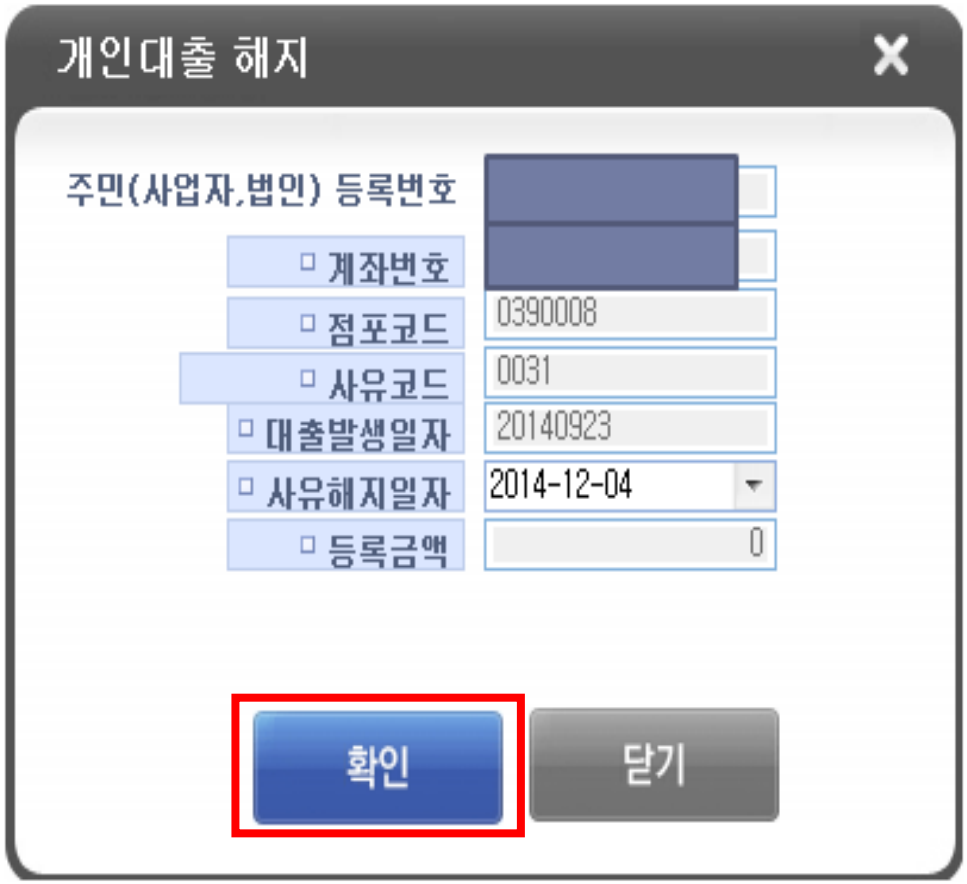


## 개인대출정보 해지항목 안내

- 사유해지일자(해지사유발생일)
  - ⓘ 기등록된 대출정보를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정보해지 방법(2)**

✓ 해지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사유해지일자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해지처리 완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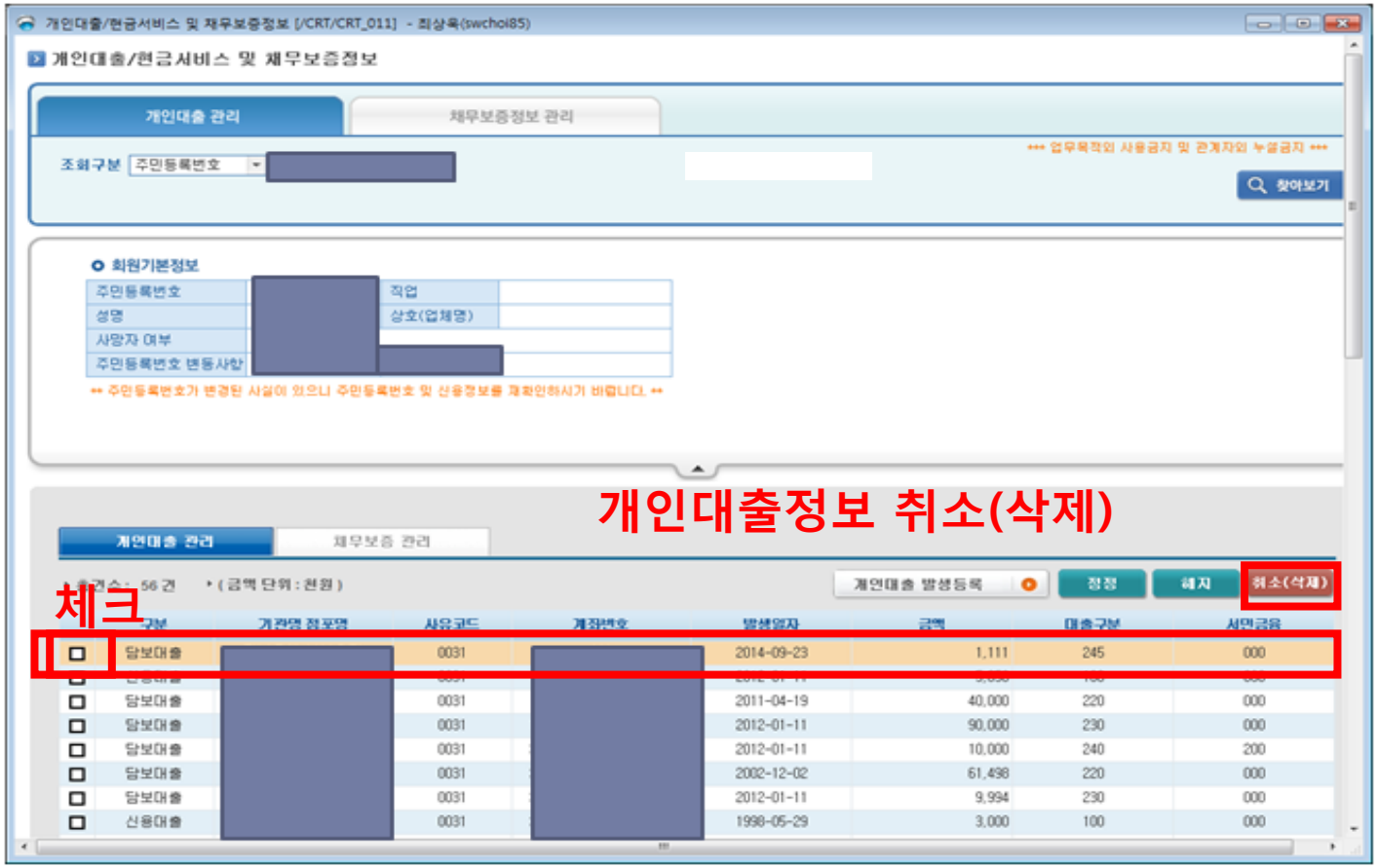


**정보삭제 방법(1)**

✓ 정보조회방법을 참조하여 해지가 필요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 조회** → 정정대상 정보의 **왼쪽 네모 클릭 후 취소(삭제)버튼 클릭**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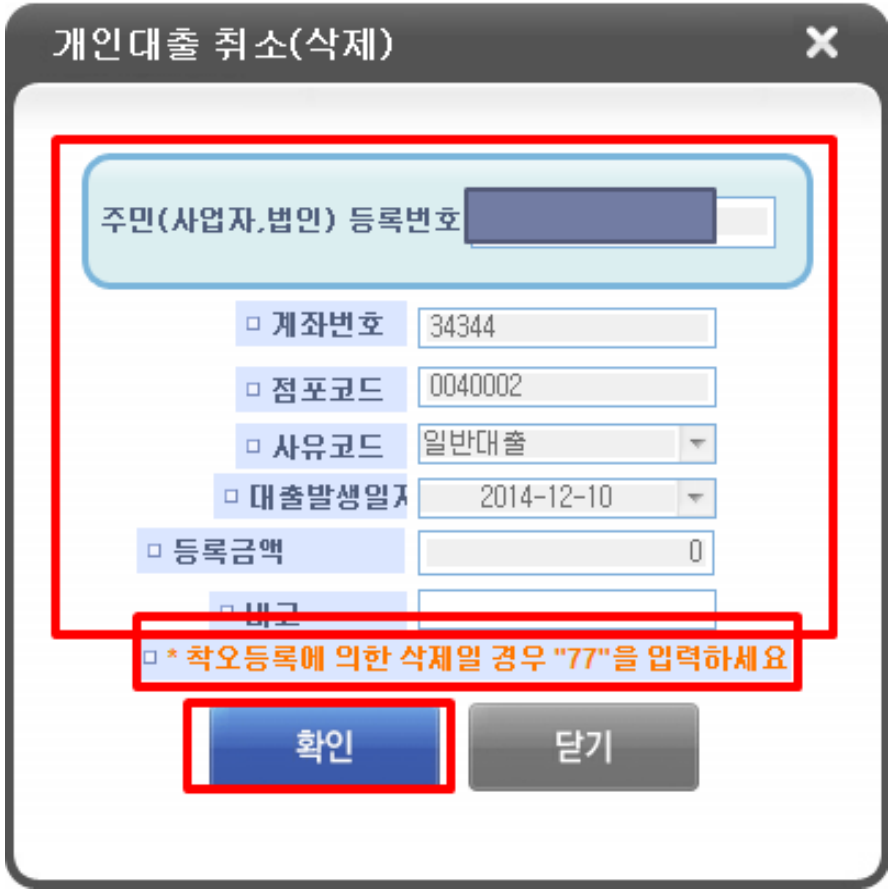


## 신용정보의 취소(삭제)

- 착오등록, 양수채권환매, 사망자, 대출 취소 등

ⓘ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던 기록 자체를 지우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유의 요망

※ 비대상 정보 삭제시 제재금 부과, 해제건 삭제시 소급 재등록 필요

**정보삭제 방법(2)**

✓ 해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비고에 "77"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취소(삭제)제처리 완료

# Ⅴ. 신용거래정보의 처리(건별)

**채무보증 정보**

- 개인대출정보와 등록, 정정, 해지, 삭제 절차가 유사한바, 개인대출 정보를 참조하여 채무보증정보 처리 요망
- 단, 개인대출정보는 발생내역별로 관리하고 채무보증정보는 주체별로 관리하므로 같은 기관에서 추가 채무보증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등록이 아닌 등록금액 정정처리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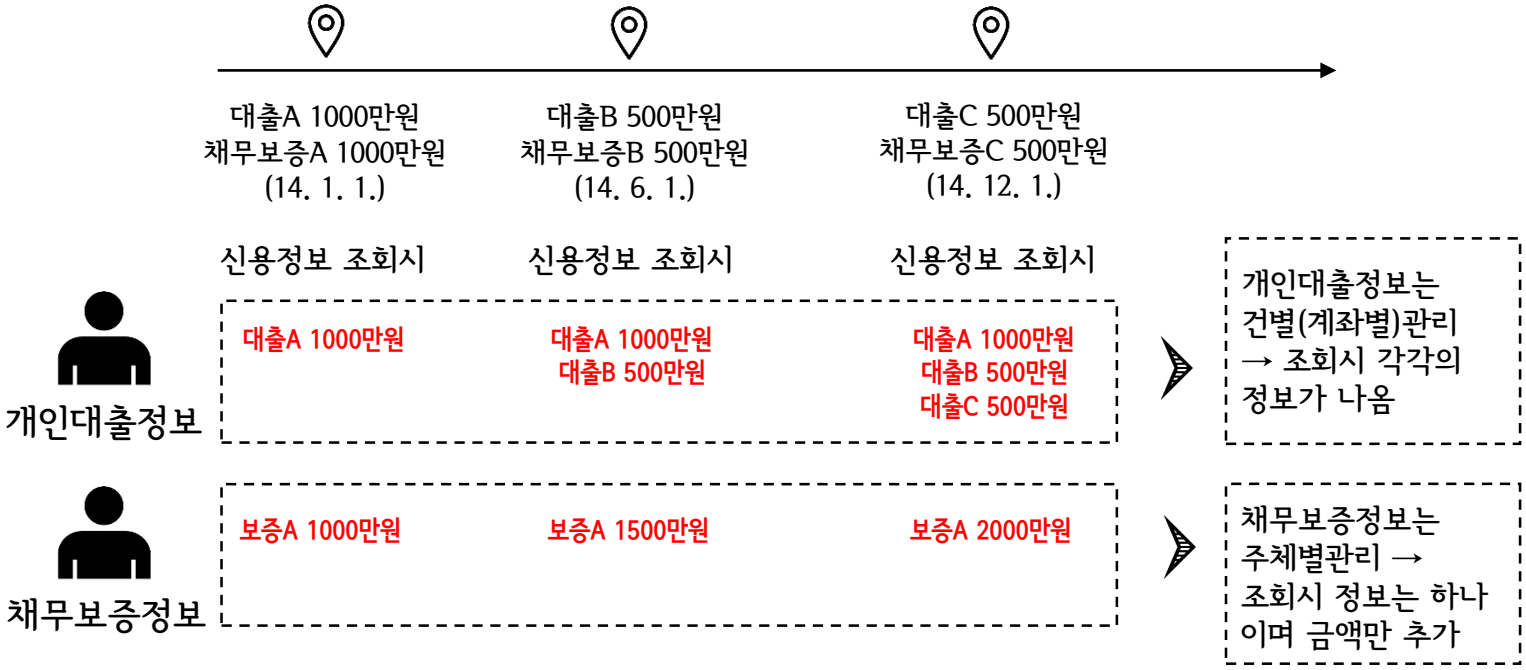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공공 정보**

✓ 공공정보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의 종류

| 세금 체납 | 채무불이행 | 임금 체납 등 | 신용회복지원 |
|---|---|---|---|
| 국세체납, 지방세체납<br>과태료 체납<br>관세체납 등 | 법원의 판결로<br>채무불이행자로<br>결정된 경우 | 고용, 산재보험료<br>체납, 3년이내 임금 등<br>체납으로 유죄가<br>확정된 자 등 | 신용회복지원 확정,<br>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br>개인회생절차 진행,<br>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br>재창업 지원 거래처 등 |

※ 공공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등록·해지사유, 등록코드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 > 관련법규에서 최신규약을 다운로드하여 참조 요망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 공공정보 주요내용 (1)

| 구분 | 신용회복지원 | 파산면책 | 개인회생 |
|---|---|---|---|
| 등록코드 | 1101 | 1201 | 1301 |
| 공공정보 등록기관<br>(등록사유발생일) | 신용회복위원회<br>(신용회복확정일) | 법원<br>(면책결정일) | 법원<br>(변제계획인가일) |
| 공공정보<br>등록기준 | 관련 정보(연체 등 정보)가<br>기등록된 경우에 적용 | 신용정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음<br>(2014.7.1. 부터) | 신용정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음<br>(2014.7.1. 부터) |
| 공공정보 등록일<br>연체등정보 해제일 | 신용회복지원확정일 기준으로<br>연체 등 정보 해제 | 면책결정일 기준으로<br>연체등정보, 개인대출정보,<br>채무보증정보 일괄 해제(지) | 변제계획인가일 기준으로<br>연체등정보 해제 |
| 공공정보<br>해제기준 | 2년 이상 변제 또는 변제 완료<br>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br>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 면책 채권 변제한 때 또는<br>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br>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br>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
| 연체등정보 재등록<br>(당초 사유발생일 및<br>당초 등록금액으로 등록) | 신용회복지원 실효, 취소 등<br>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면책 취소 등<br>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개인회생절차 폐지 등<br>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공공정보 주요내용 (2)**

## 공공정보 등록 및 해제 사례(개인회생)

| 신용정보 조회 시 | 대출발생 (14. 1. 1.) | 연체사유발생 (14. 6. 1.) | 개인회생인가결정 (14. 12. 1.) | 회생계획인가폐지 (15. 6. 1.) |
|---|---|---|---|---|
| | 대출A 1000만원 | 대출A 1000만원<br>연체A 1000만원 | 대출A 1000만원<br>연체A 1000만원(해제)<br>개인회생(1301) | 대출A 1000만원<br>연체A 1000만원(재등록)<br>개인회생(1301)(해제) |
| | 최초대출발생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정보A 등록 | 연체사유발생으로 대부업체에서 연체정보A 등록 | 법원에서 개인회생정보 등록 (130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연체등 정보 일괄 해제 | 개인회생정보 법원에서 해제 (1301), 개별 대부업체에서 기해제 연체등정보 재등록 |

? 만약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미포함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가 기해제된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재등록**(신용회복확정의 경우 신용회복 미대상 기관이나 미포함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는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재등록 처리)

? 회생의 경우 연체등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 전에 회생개시결정,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연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하지 아니함(뒷페이지에 계속)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공공정보 주요내용 (3)**

## 연체등록 관련 유의사항

①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제한될 경우 연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봄 (실질은 연체이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집중시 연체가 아닌 것으로 보는 특례)

① 사례 1 : 등록사유발생일 이전 위 사유 발생하여 연체 등 정보 **등록 하지 않는 경우**

2014. 3. 1. 연체기산일 → 2014. 5. 1. 금지명령 → 2014. 6. 1. 등록사유발생(X)

① 사례 2 :등록사유발생일 이후 위 사유 발생하여 연체 등 정보 **등록 하는 경우**

2014. 3. 1. 연체기산일 → 2014. 6. 1. 등록사유발생(O) → 2014. 6. 3. 금지명령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1)**

## 채권 양수 사례

**양도기관 A**

**기관명(코드) : A**
등록사유 : 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계좌번호 : 12345**

양수일 : 2015. 12. 15.
(양수일은 등록사유발생일이 아니므로,
정보 등록 주의 요망)

등록사유, 발생일자, 등록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정보는 동일하고, 해당 기관명과 코드만 변경)
연체금액, 계좌번호는 조건 변경시 정정

**양수기관 B**

**기관명(코드) : B**
등록사유 : 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일부 상환시 변경)**
**계좌번호 : 변경가능**

시행일('15. 3. 30.) 이전
채권 양수건 집중하지 않음

시행일
(3. 30)

시행일('15. 3. 30.) 이후 금융기관
으로부터 양수건 신용정보 집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속하는 기관(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포함)

시행일('15. 3. 30.) 이후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직권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양수한 채권은 등록 대상이 아님

**※ 3개월 이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정보제재금 부과**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2)**

## 채권 양도 사례

**양도기관 A**

기관명(코드) : A
등록사유 : 0101
발생일자: 2012-08-10
등록금액 : 2,100
연체금액 : 1,000
계좌번호 : 12345
해제코드 : 16, 17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에 양도한 경우**
개인대출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지(기업신용공여정보는 “0” 처리)
연체등정보는 해제 처리하고, 해제코드는 “17”로 처리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이 아닌 기관에 양도한 경우**
개인대출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지(기업신용공여정보는 “0” 처리)
연체등정보는 해제 처리하고, 해제코드는 “16”으로 처리(중요)

## 공휴일

-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 다음영업일이 등록사유 발생일
- 연체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 약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약정일로 하여 연체기산일 산정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3)**

## 채무부존재소송

① 연체등정보의 경우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1월 내에 삭제(취소) 처리해야 함. 단, 대부업자가 먼저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중에 차주가 채무부존재를 제기할 경우에는 내부품의일(최종판결확정일보다 빠른 날이어야 함)로부터 1월내에 삭제(취소) 처리해야 함

①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의 경우 채무부존재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실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록을 유예해야 하며, 등록 이후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정정청구 요청을 받으면 즉시 정정청구중(0044)임을 입력하고, 정정 청구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한 신용정보를 삭제(취소) 처리

① 채무부존재소송이 확정되어 삭제(취소)한 신용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최종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며, 이때 연체등정보의 경우 등록사유발생일은 예외적으로 최종판결확정일로 함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4)**

## ✓ 신용정보 배치파일(대량) 처리 방안

① 신용정보 온라인, 파일전송 설계서를 참조하여 배치 파일 작성

① 사례 1 : 신용정보 배치파일의 형태

```
DB904411000000039000000392014121 7   헤더 부분
DB9044220000001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DB9044220000002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DB9044220000003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데이터 부분
DB9044220000004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DB9044220000005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DB904422000000601999123456789020000000000000
DB904433999999903900000039000006   트레일러 부분
```

1 2 3 4 5 6 7 8 …

위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 배치파일을 설계서에 명시된 순서(헤더, 데이터, 트레일러)에 맞게 차례대로 작성하여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등록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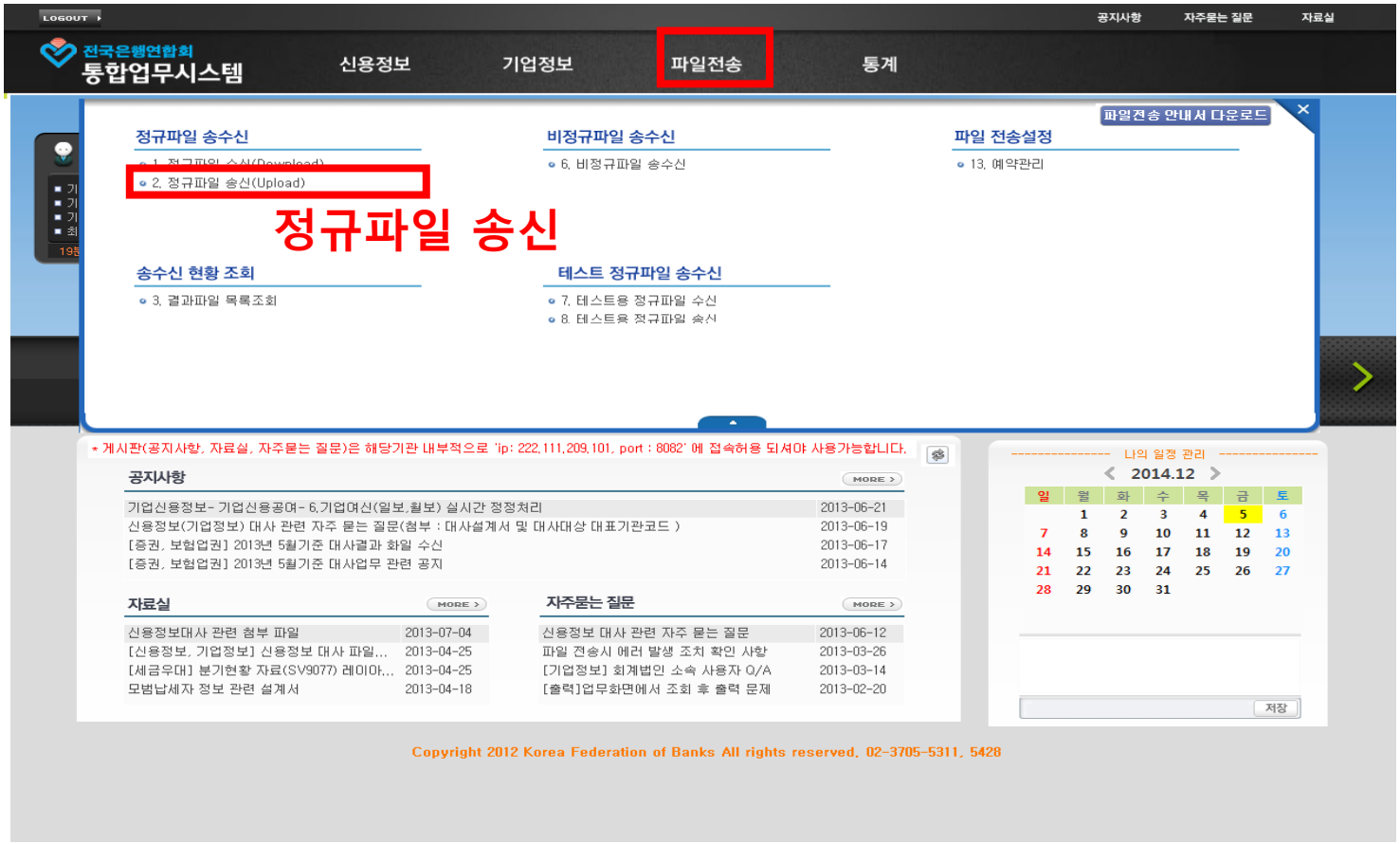


**참고사항 (5)**

✓ **파일전송 → 정규파일 송신** 클릭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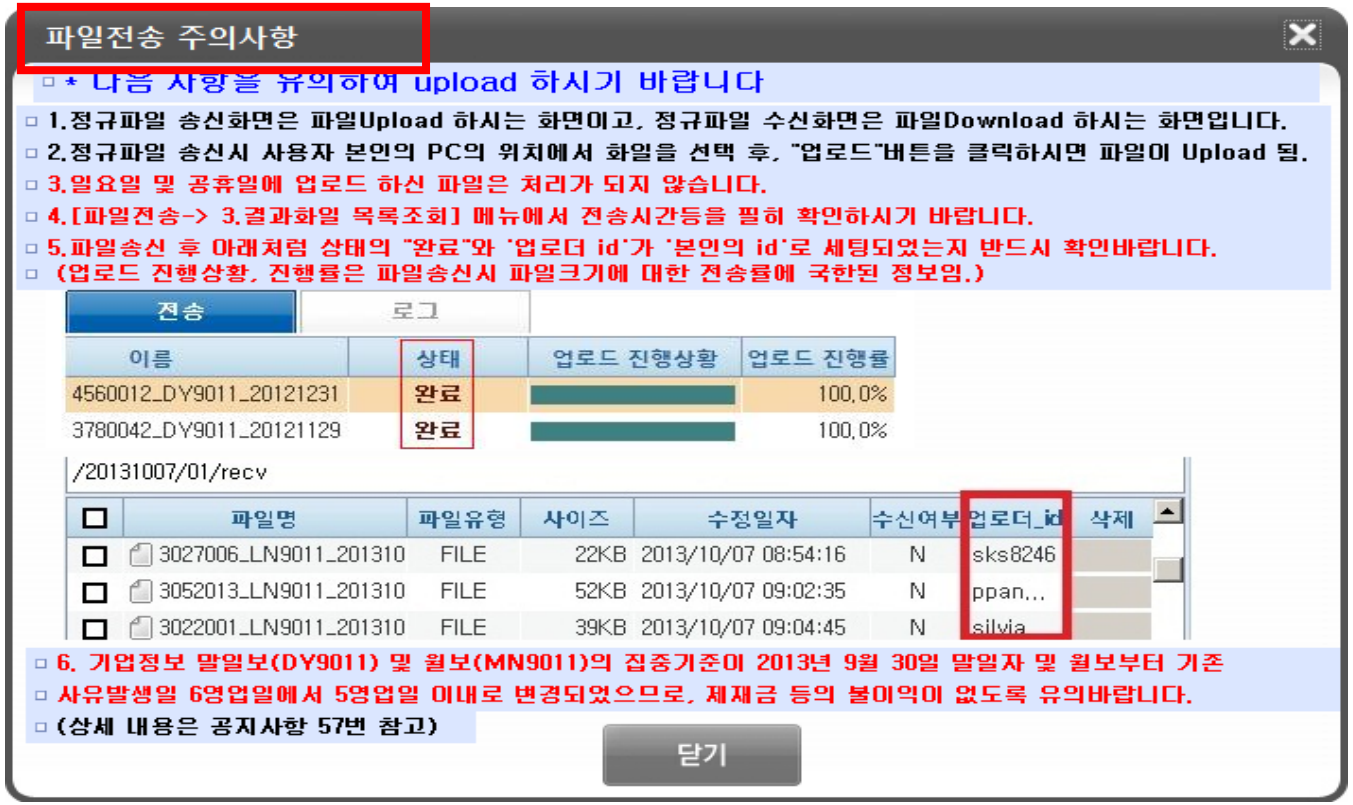


**참고사항 (6)**

✓ **파일전송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 후 **닫기** 클릭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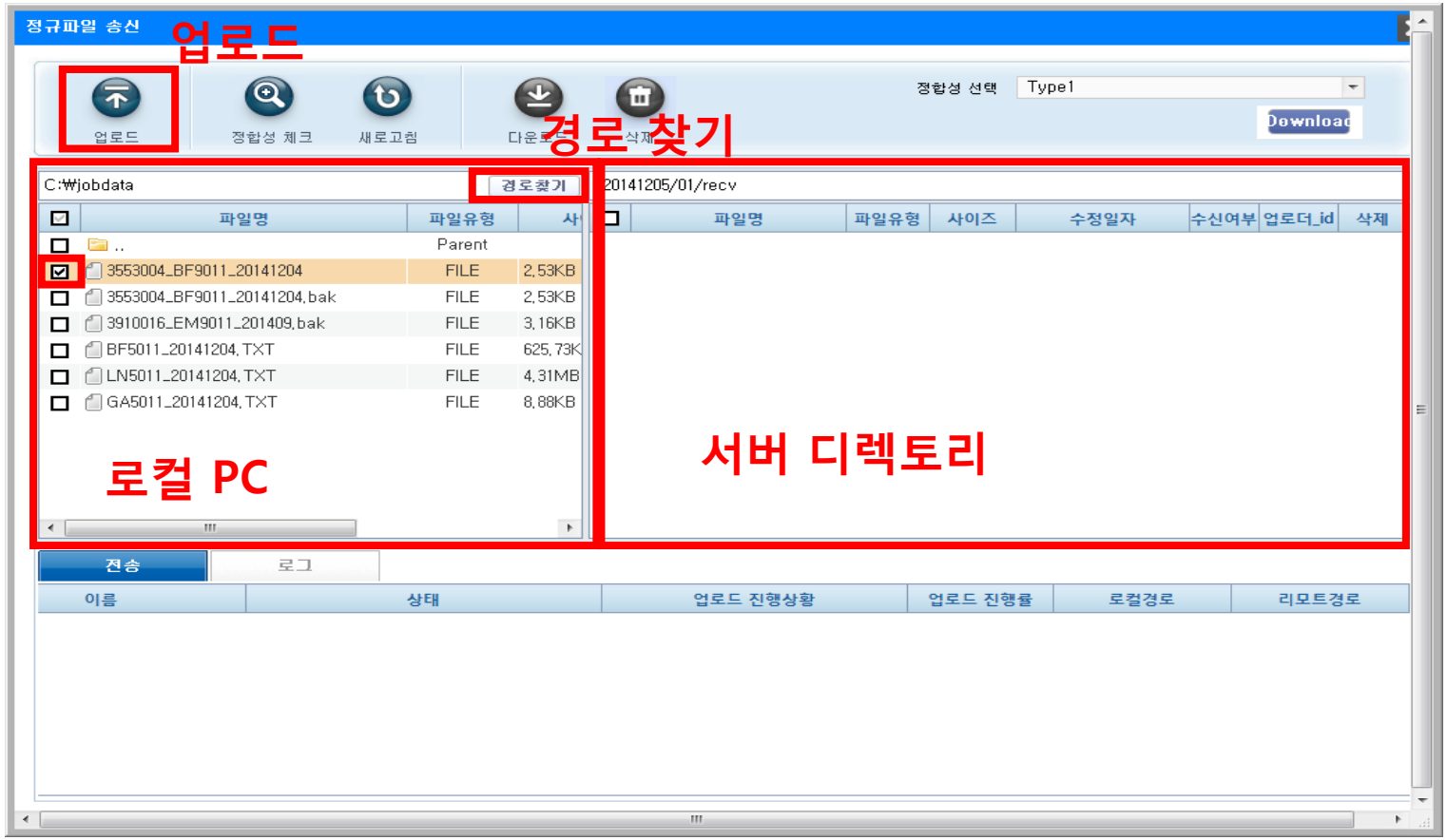


**참고사항 (7)**

✓ 화면의 왼쪽에는 현재 담당자가 이용중인 PC의 디렉토리, 오른쪽은 파일 송신 화면(서버 디렉토리)이며, 생성해 놓은 파일을 **경로찾기**로 찾아 **좌측 네모를 클릭 후 업로드**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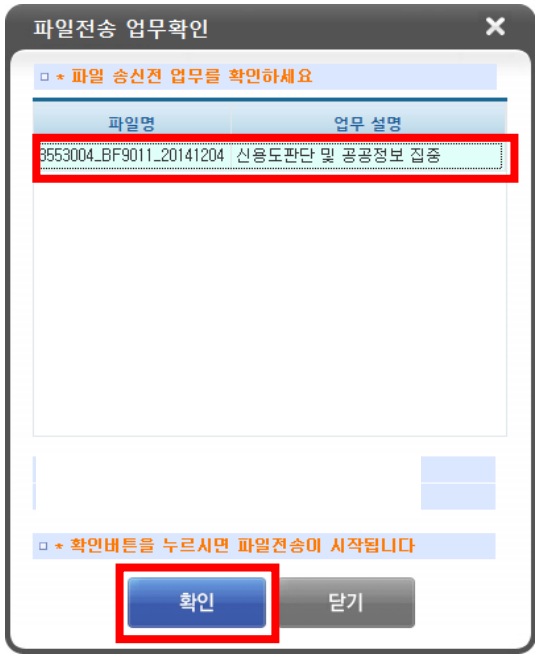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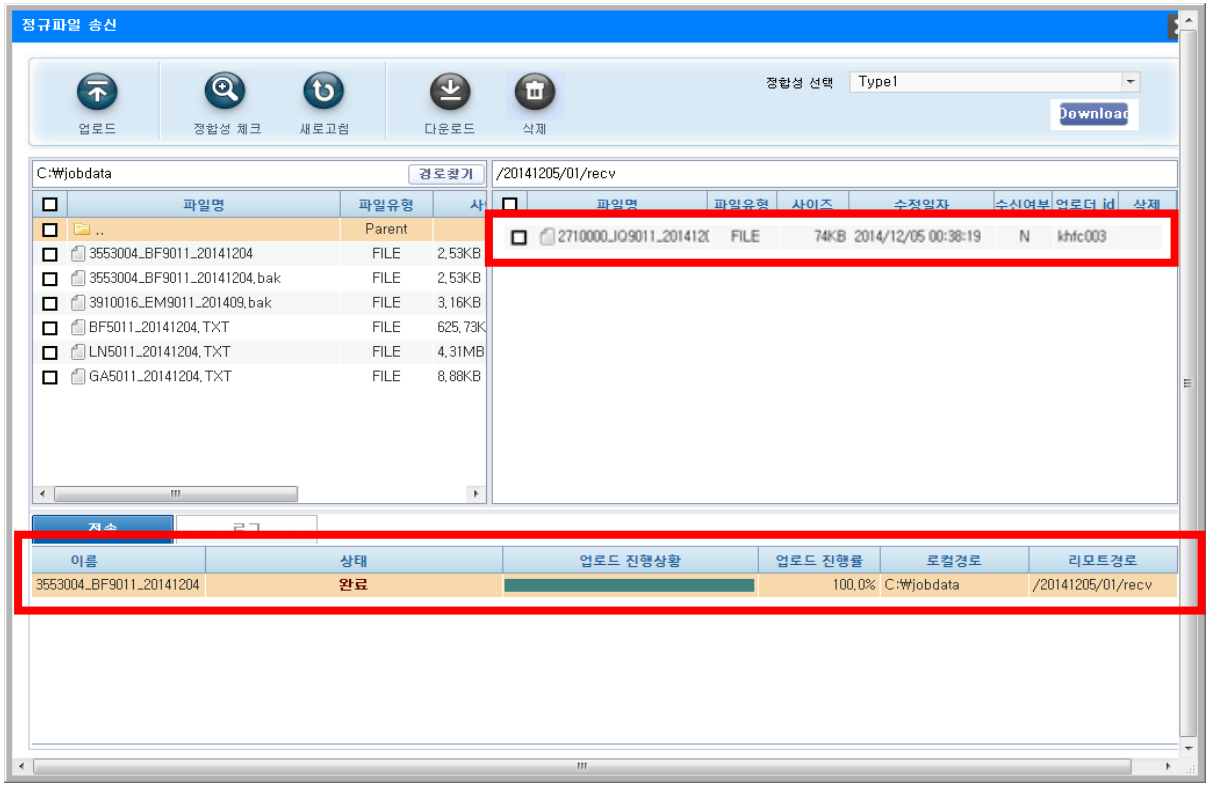


**참고사항 (8)**

✓ 파일전송 업무확인 탭에서 유효성을 체크한 후, **확인**버튼 클릭 시 업로드가 진행되며, 업로드가 완료되면 **로그 생성 및 서버 디렉토리에 파일 생성**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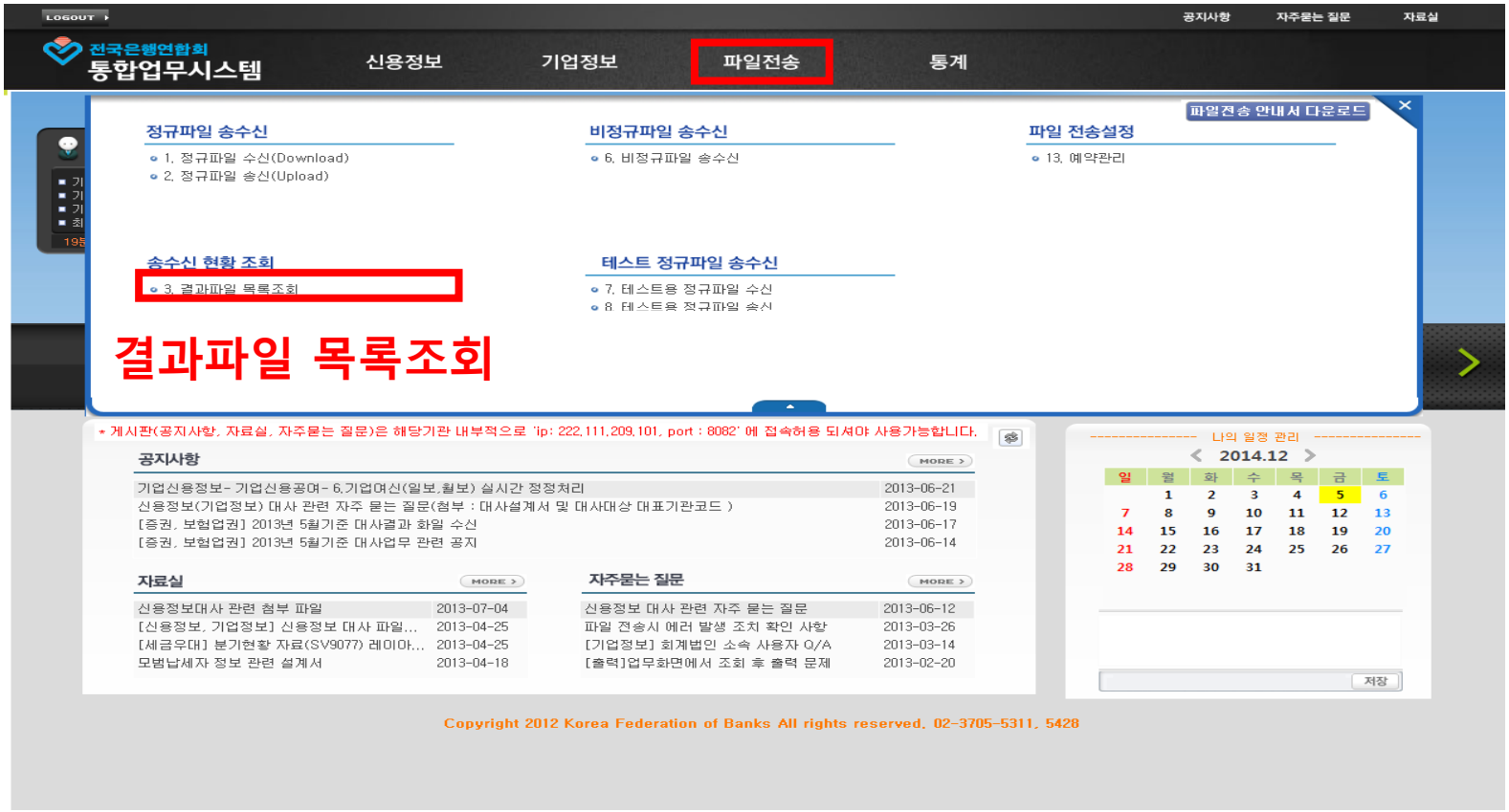


**참고사항 (9)**

✓ **파일전송** 클릭 후 **결과파일 목록조회**버튼 클릭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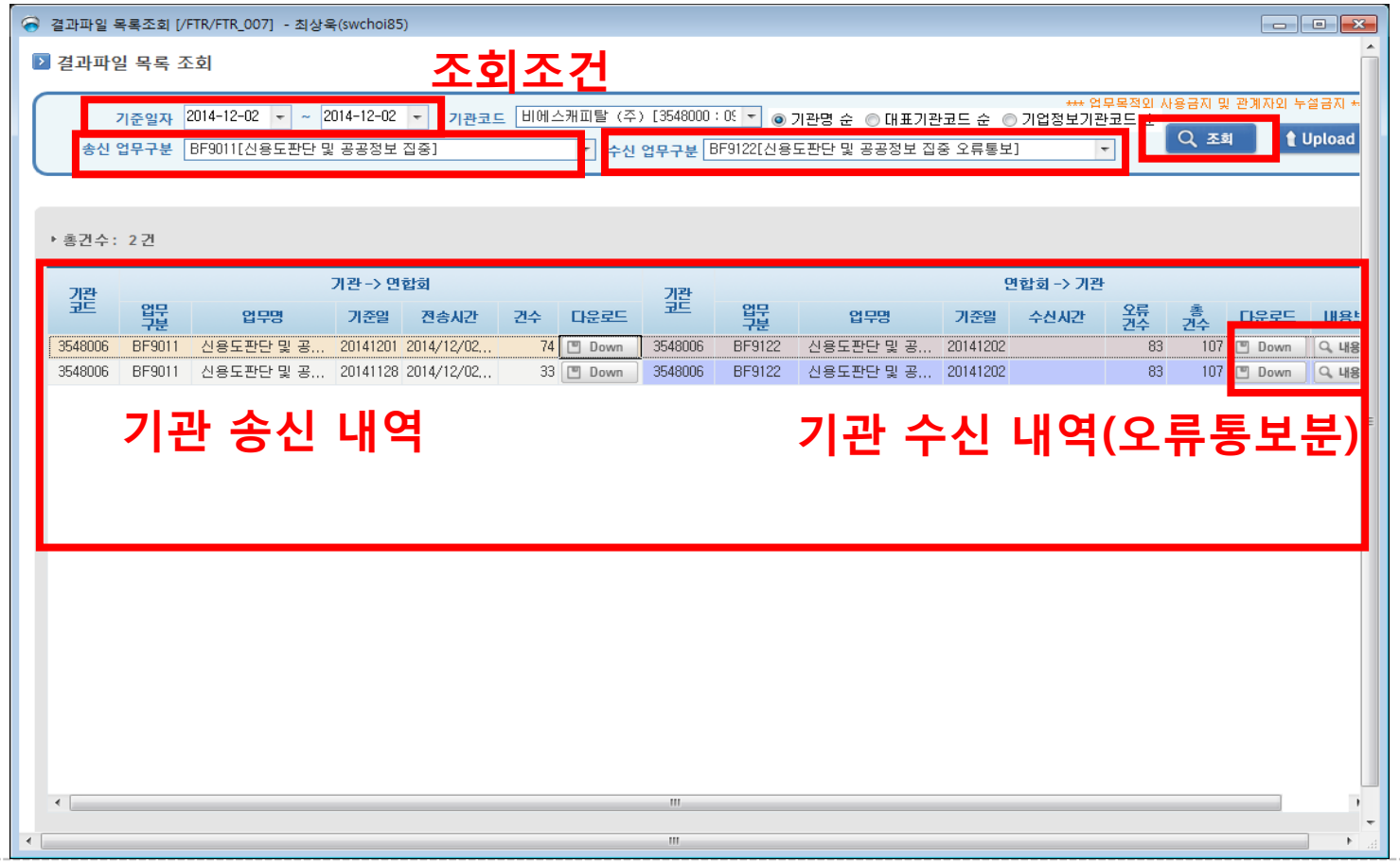


**참고사항**

**(10)**

✓ 기준일자, 기관코드(기설정), 송신업무구분 등 원하는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기관의 송수신 파일 내역 확인

ⓘ 오류 통보분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상세 오류내역 확인 가능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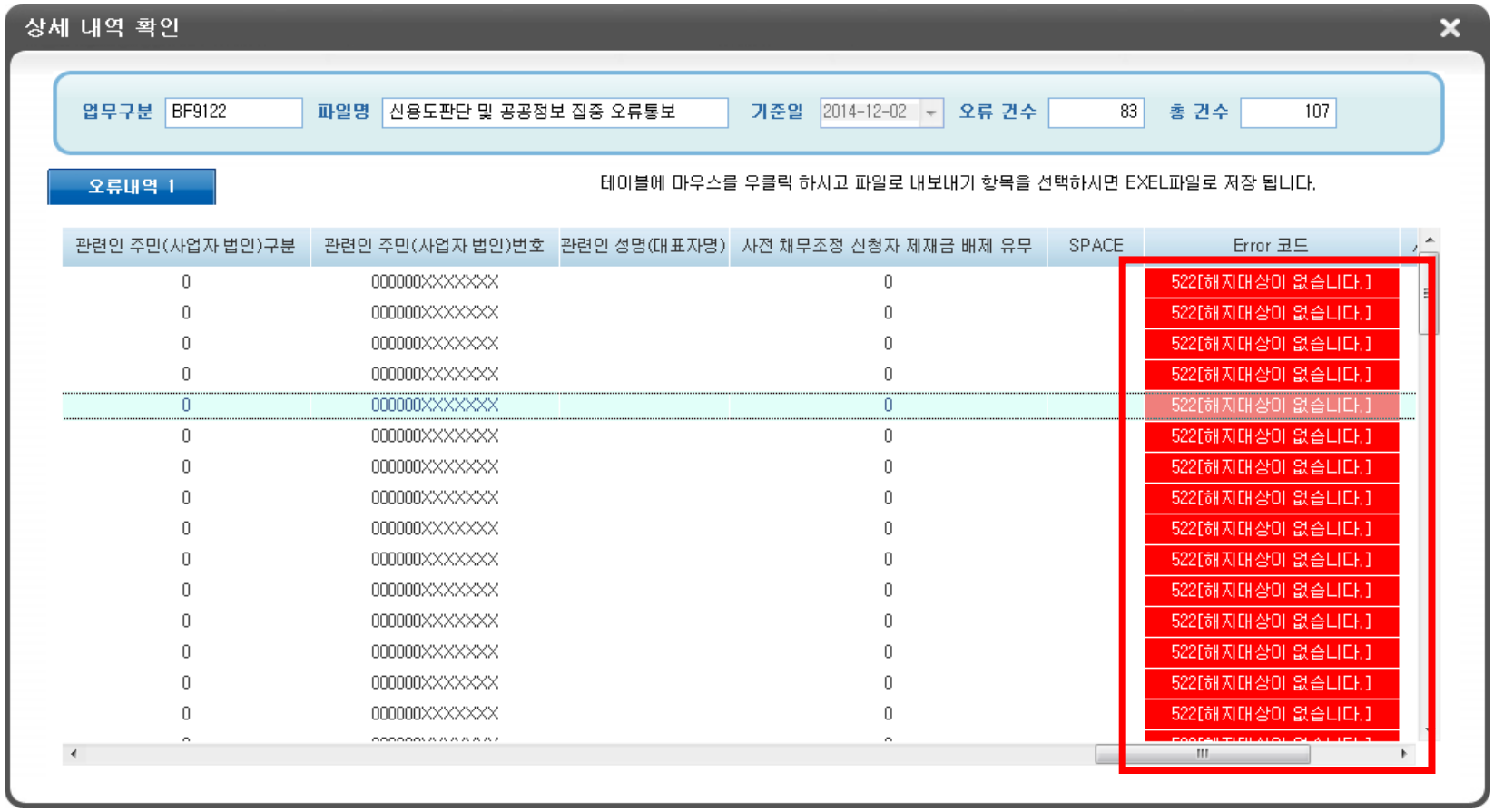


**참고사항**

**(11)**

✓ Error코드 확인을 통해 상세 오류내역 확인 가능

①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오류내역 파악 후 파일을 수정하여 등록/해제 재보고 요망**(반드시 확인)**

# Ⅵ. 공공정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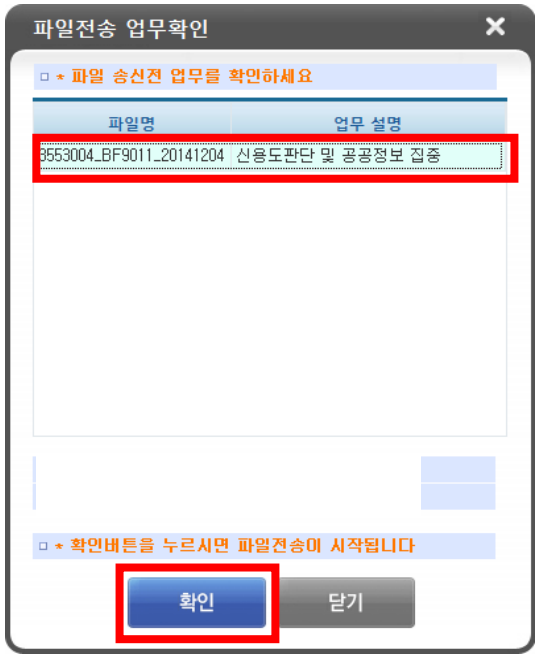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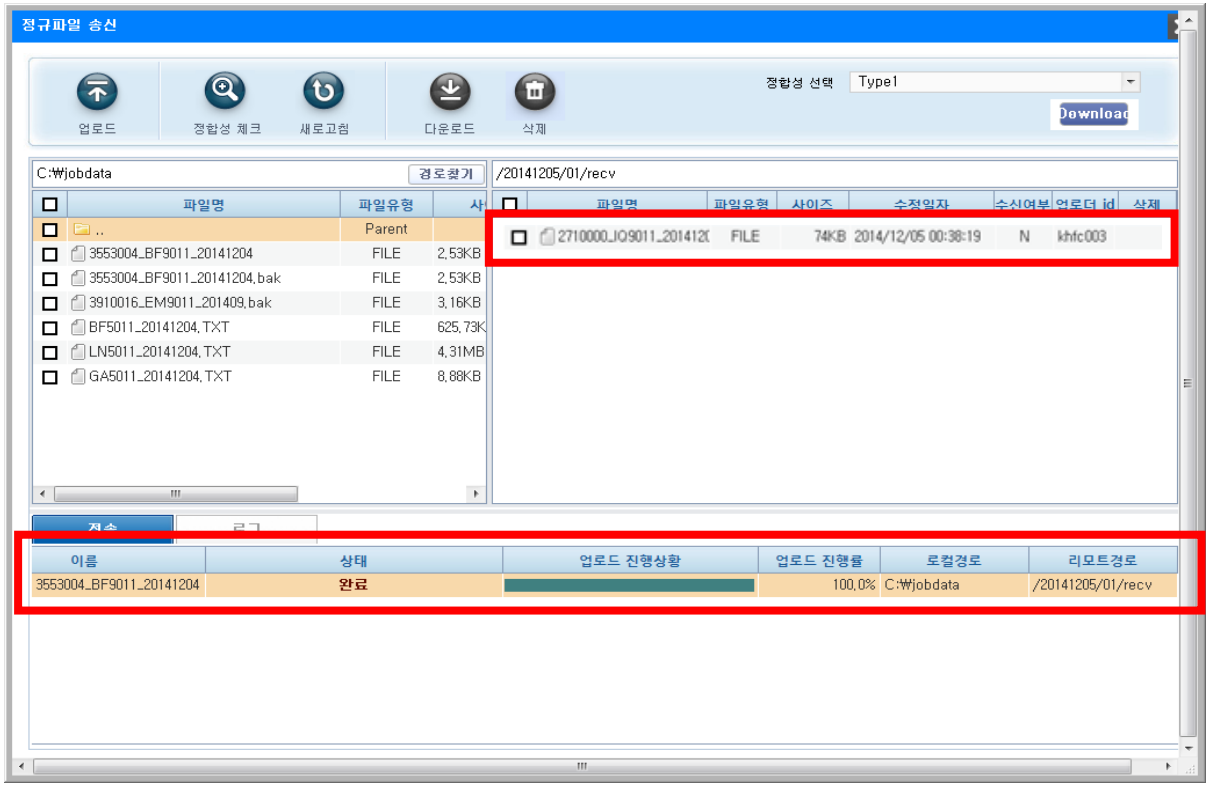


**참고사항 (12)**

✓ 파일전송 업무확인 탭에서 유효성을 체크한 후, **확인**버튼 클릭 시 업로드가 진행되며, 업로드가 완료되면 **로그 생성 및 서버 디렉토리에 파일 생성**

# 2장 : 기업신용공여정보 관련 업무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기업신용 공여정보 (1)**

- 집중 대상 :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납세번호 증 포함)을 발급받은 자

- 집중 정보
  - ① 대상기업체 정보 :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
  - ① 일일여신 : 금융회사가 기업에 제공한 대출금 등 신용공여금액과 단기연체정보를 포함한 만기구조
    - 평일보 : 월중 변동있는 건의 변동 후 잔액
    - 말일보 : 월말영업일 현재 모든 잔액
  - ① 월말여신 : 한도, 담보, 채무보증 등
  - ① 기업어음거래정보 : 기업어음 거래내역

-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금융기관이 제공한 대상기업체정보, 일일여신, 월말여신, 기업어음거래정보 등을 주어진 형식과 체계에 맞게 집중하는 업무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 구분 | 대상기업체정보 | 일일여신(평일보) | 일일여신(말일보) | 월말여신 |
|---|---|---|---|---|
| **보고서명 (전문양식)** | 대상기업체 변동상황 보고서 (DC9011) | 31번 보고서 (DD9011) | 31번보고서(월말영업일 기준) (DD9011) | 32, 33, 34번보고서 (월말 영업일 기준) (DM9011) |
| **집중기한** | 2영업일 | 2영업일 | 5영업일 | 5영업일 |
| | | 집중기한 내 보고한 집중기관의 보고서에 한하여 재집중기간 추가 1영업일 부여 | | |
| **집중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번호, 대표자, 업체명 등 | 전월말 이후, 월중 해당 기준일의 신용공여 변동분 (단기연체포함) | 월말 영업일 기준 금융회사의 모든 거래처의 신용공여 (만기구조, 단기 연체 포함) | 월말 영업일 기준 금융회사의 모든 거래처의 담보, 한도, 채무보증 등 내역 |

**기업신용 공여정보(2)**

✓ 대상기업체정보, 일일여신(평일보, 말일보), 월말여신 관련 주요내용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기업신용 공여정보 기본개념 (1)**

✓ 대상기업체 정보 : 금융기관이 기업과 거래 시 해당 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내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해당 기업체의 식별번호가 은행연합회 보유 대상기업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여신 정보 처리 가능)

ⓘ 만약 식별번호가 대상기업체 정보에 미등록(또는 불일치)된 경우,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또는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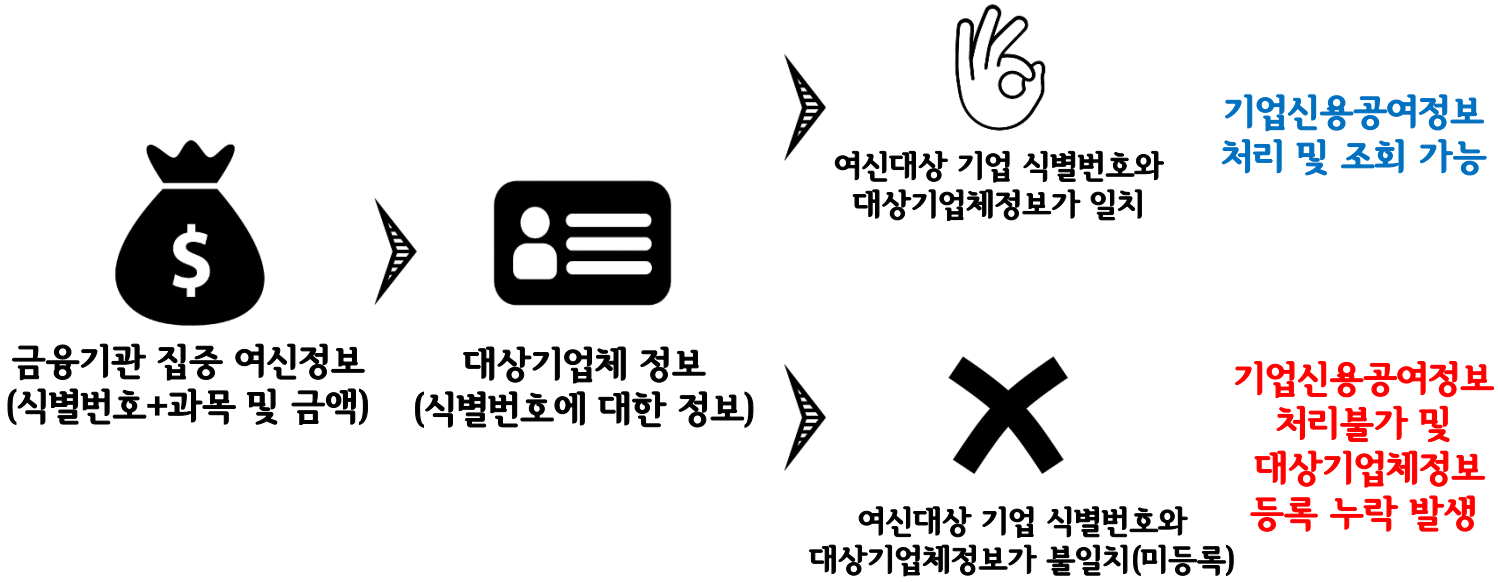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기업신용 공여정보 기본개념 (2)**

✓ 기준일 : 금융기관이 집중하는 기업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집중일과 다름)

- 평일보 : 신용공여금액이 변동된 날
- 말일보 : 월말영업일

ⓘ 금융기관이 집중한 기업신용공여정보는 기준일별로 처리되며, 기준일별로 조회됨

ⓘ 오류(응답)전문은 집중 익일에 해당 기관으로 전송

✓ 보고서 : 기업신용공여정보는 개인대출 또는 신용도판단정보와 달리 개별 건별로 보고가 불가하며 항상 보고서 단위로 집중

ⓘ 집중기한 내에는 동일한 기준일의 보고서를 정정 보고가능하나, 기준일별 처리 시에 해당 기준일의 최종 보고서만이 처리됨(일부 오류가 있어 오류 정정 후 오류 정정된 전체 내역이 아닌 오류 정정 분만 보고 한다면 그 부분만 처리되므로, 주의 요망)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기업신용 공여정보 기본개념 (3)**

✓ 예시(**평일보**, 집중기한 : 2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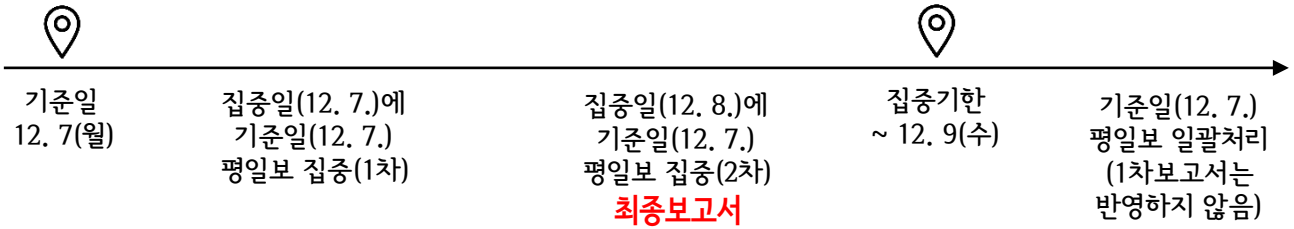


✓ 예시(**말일보**, 집중기한 :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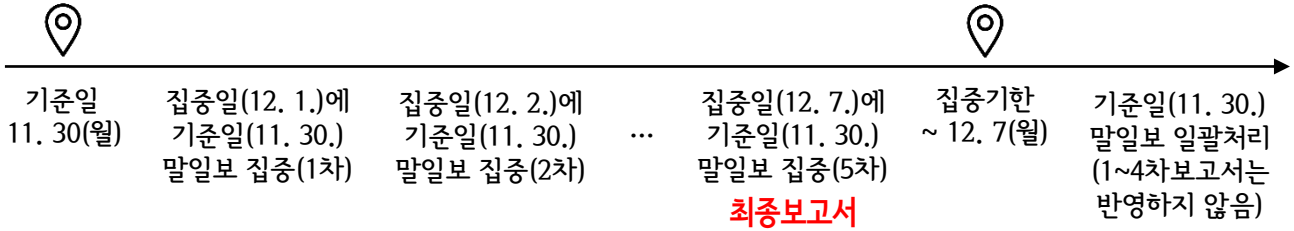


**기업신용공여정보는 해당 여신의 발생(변동)이 일어난 기준일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기준일은 실제 집중하는 날짜(집중일)와는 다른 개념임. 또한 집중기한 내에서 마지막으로 집중한 보고서만 실제 일,월보에 반영되며, 기집중한 보고서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사항만 보고하면 수정한 건만 보고서에 반영되므로 주의할 것.**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기업신용공여발생일**
**('15.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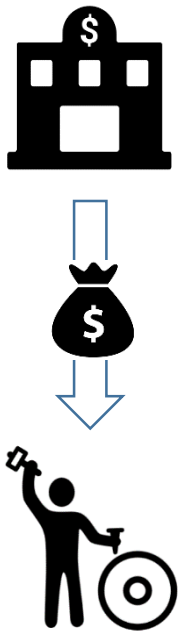

**① 대상기업체정보 작성**
- 대상기업체, CH9011
- 보고서작성 이전에 **대상기업체정보 조회**를 통해, 현재 대상기업체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② 여신보고서 작성**
- 일일여신(평일보), DD9011

**③ 여신보고서 전송 및 정상접수 여부 확인**

**④ 오류 확인**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오류일 경우
  : 대상기업체 등록 또는 변경
- 보고서 관련 오류일 경우
  : 집중기한 내 오류 정정하여 해당 기준일 보고서 재집중

**⑤ 정상처리 확인**
- 기준일별 보고서 정상처리 확인

**⑥정보 조회**
- 집중기한 이후 정보 조회 가능

**기업정보 집중절차(1)**

✓ 기업신용공여 최초 발생시 : 대상기업체정보 작성 → 여신보고서 작성 → 전송 및 정상접수여부 확인 → 오류확인 → 정상처리 확인 → 조회

# 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업무 개요

**월말영업일**
**('1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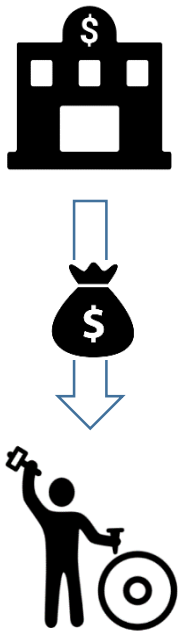

**① 여신보고서 작성**
- 일일여신(말일보), DD9011
- 월말여신(월보), DM9011

12월말 영업일자를 기준일로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의 신용공여 정보를 **말일보**로 집중하고, 한도, 담보, 채무 보증정보를 **월보**로 집중

**② 여신보고서 전송 및 정상접수 여부 확인**

**③ 오류 확인**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오류일 경우
  : 대상기업체 등록 또는 변경
- 보고서 관련 오류일 경우
  : 집중기한 내 오류 정정하여 해당 기준일 보고서 재집중

**④ 정상처리 확인**
- 기준일별 보고서 정상처리 확인

**⑤ 정보 조회**
- 집중기한 이후 정보 조회 가능

**기업정보 집중절차(2)**

✓ 월말영업일 : 여신보고서 작성 → 전송 및 정상접수여부 확인 → 오류확인 → 오류반영 정정보고서 정상접수여부 확인 → 조회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대상기업체 정보 작성 (1)**

## 대상기업체 정보의 구성

| 일련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업종코드 | 결산월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차주번호 입력란으로써 대상기업체정보의 차주 구분이 필요하며, 구분 값은 아래와 같음 | |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1 | 3 |
| | 조합, 중종, 임의 단체 등으로 구분된 경우(사업자등록번호 3,4번째 자리가 80,82,83,84,89 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차주번호에 입력하여 집중하고 구분 값은 '3'을 입력함<br>(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주번호 입력하고 해당 차주 구분 값 입력) | |
| 사업자등록번호 | 차주번호와 연결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앞에 999 붙임) | |
| 상호명 | 모두 빈칸(SPACE)인 경우, 2바이트 완성형 한글코드가 아닌 경우 등 오류<br>(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식상호를 사용해야 함) | |
| 대표자명 | 모두 빈칸(SPACE)인 경우, 2바이트 완성형 한글코드가 아닌 경우, 숫자로만 입력된 경우 오류 | |
| 주소 | 2바이트 완성형 한글코드가 아니면 오류 | |
| 업종코드 | 4자리. 숫자가 아닌 경우 오류<br>(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 | |
| 결산월 | 숫자가 아닌 경우 오류 | |

대상기업체정보는 어떤 금융회사든 한 금융회사에서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므로, 해당 구분에 맞는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정보 집중 요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대상기업체 정보 작성 (2)**

## 대상기업체 정보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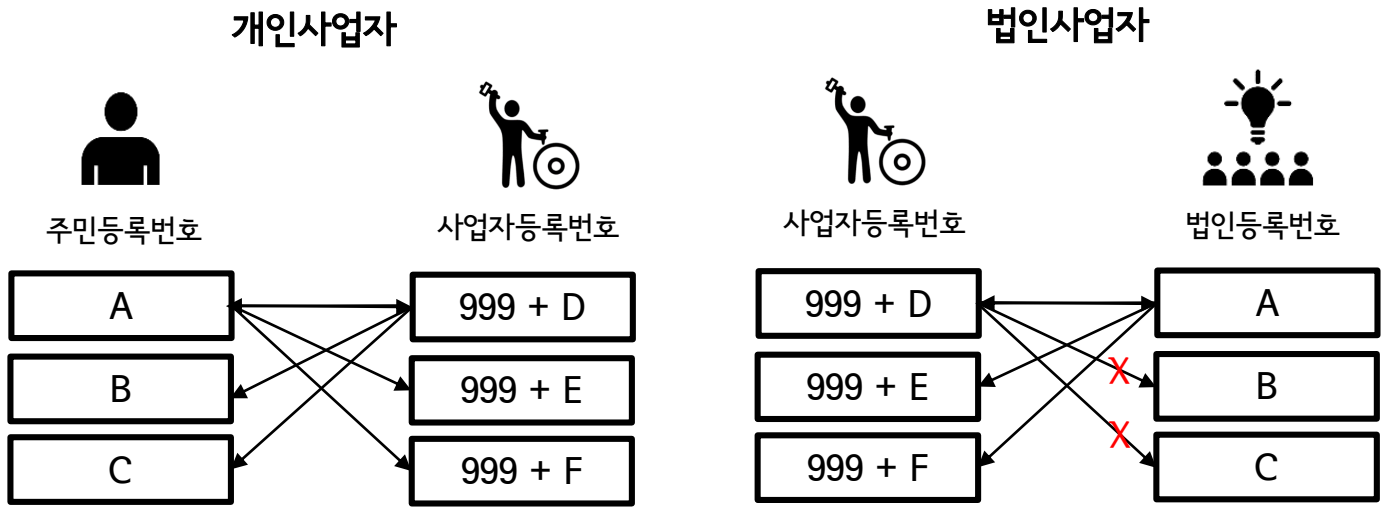


① 한 개의 주민등록번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연결 가능
①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 연결 가능

① 한 개의 법인등록번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연결 가능
①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개의 법인등록번호 연결 불가능

**일일여신 또는 월말여신으로 보고된 기업의 신용공여는 대상기업체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신용공여로 관리되어짐**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대상기업체 정보 작성 (3)**

## 대상기업체 정보 집중방법

ⓘ 신규 집중 : 금융기관이 새로운 거래업체에 대하여 신규로 신용공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대상기업체정보를 집중(여신정보 집중 후 대상기업체 미등록이 지속될 경우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발생)

**(사례) 인쇄업을 경위하고 결산월이 12월인 A 법인 사업자 신규 등록**

| 기업체명 | 대표자 | 법인(주민) 등록번호 | 구분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업종 코드 | 결산월 |
|---|---|---|---|---|---|---|---|
| A | 홍길동 | 1234561234567 | 3 | 9991234567890 | 서울 중구 명동 11길 | 1811 | 12 |

ⓘ 변경 집중 : 신규 거래처 또는 기존 거래처의 업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되어있는 대상기업체 정보와 다른 경우(또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 후,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정보가 틀리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집중
※ 기 등록된 대상기업체가 틀린 경우에도 변경(정정) 가능

**(사례) 인쇄업을 경위하고 결산월이 12월인 법인 A 사업자를 법인 B 사업자로 변경 등록(사업장 인수)**

| 구분 | 기업체명 | 대표자 | 법인(주민) 등록번호 | 구분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업종 코드 | 결산월 |
|---|---|---|---|---|---|---|---|---|
| 기 등록되어있는 A사업자를 지정 | A | 홍길동 | 1234561234567 | 3 | 9991234567890 | 서울 중구 명동 11길 | 1811 | 12 |
| 지정된 대상기업체에 변경 내용 입력 후 변경 등록 | B | 고길동 | 6543211234567 | 3 | 9991234567890 | 서울 중구 명동 11길 | 1811 | 12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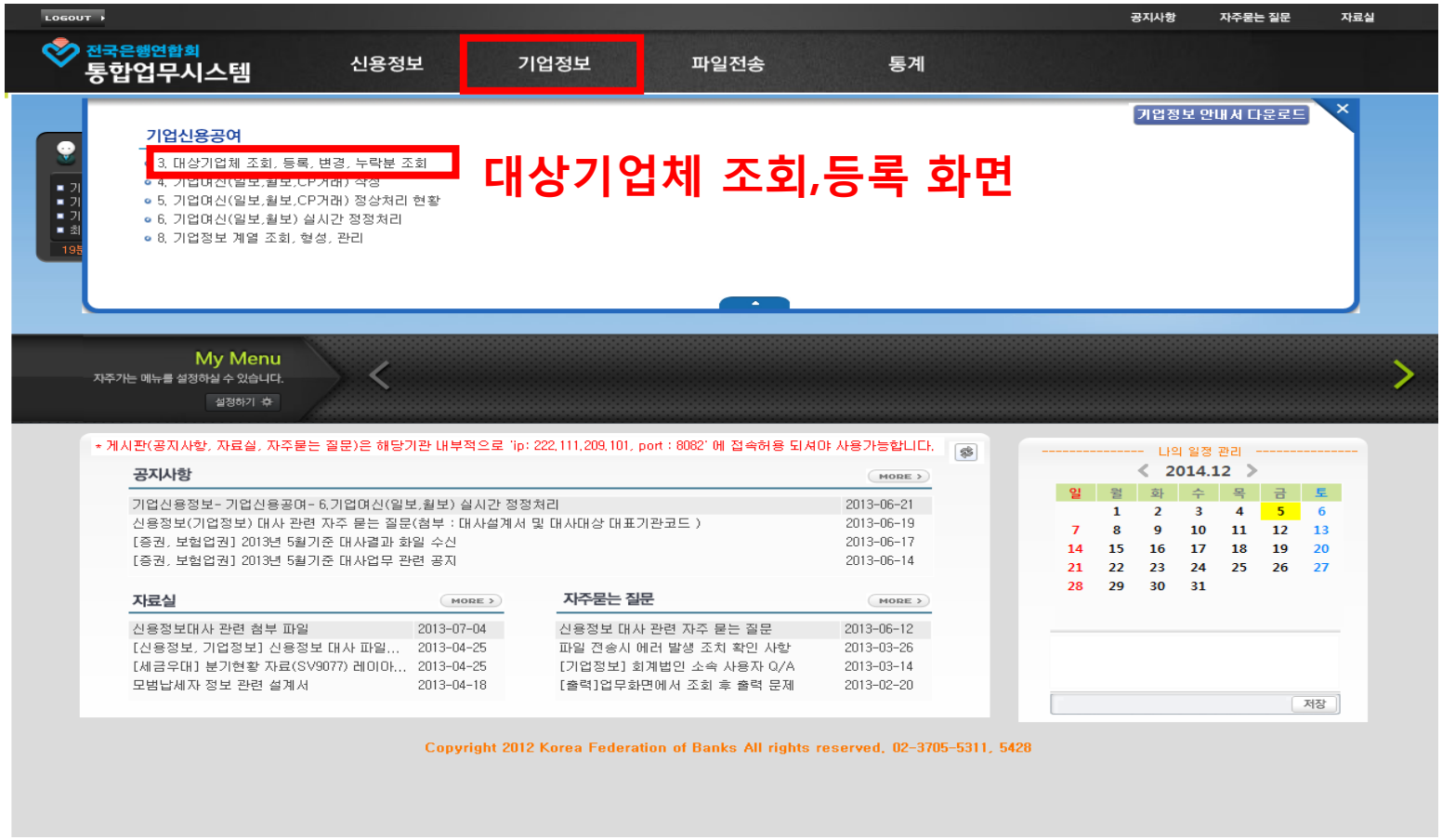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4)**

✓ 메인화면에서 기업정보 → 기업신용공여 → 대상기업체 조회, 등록, 누락분 조회 레이블 선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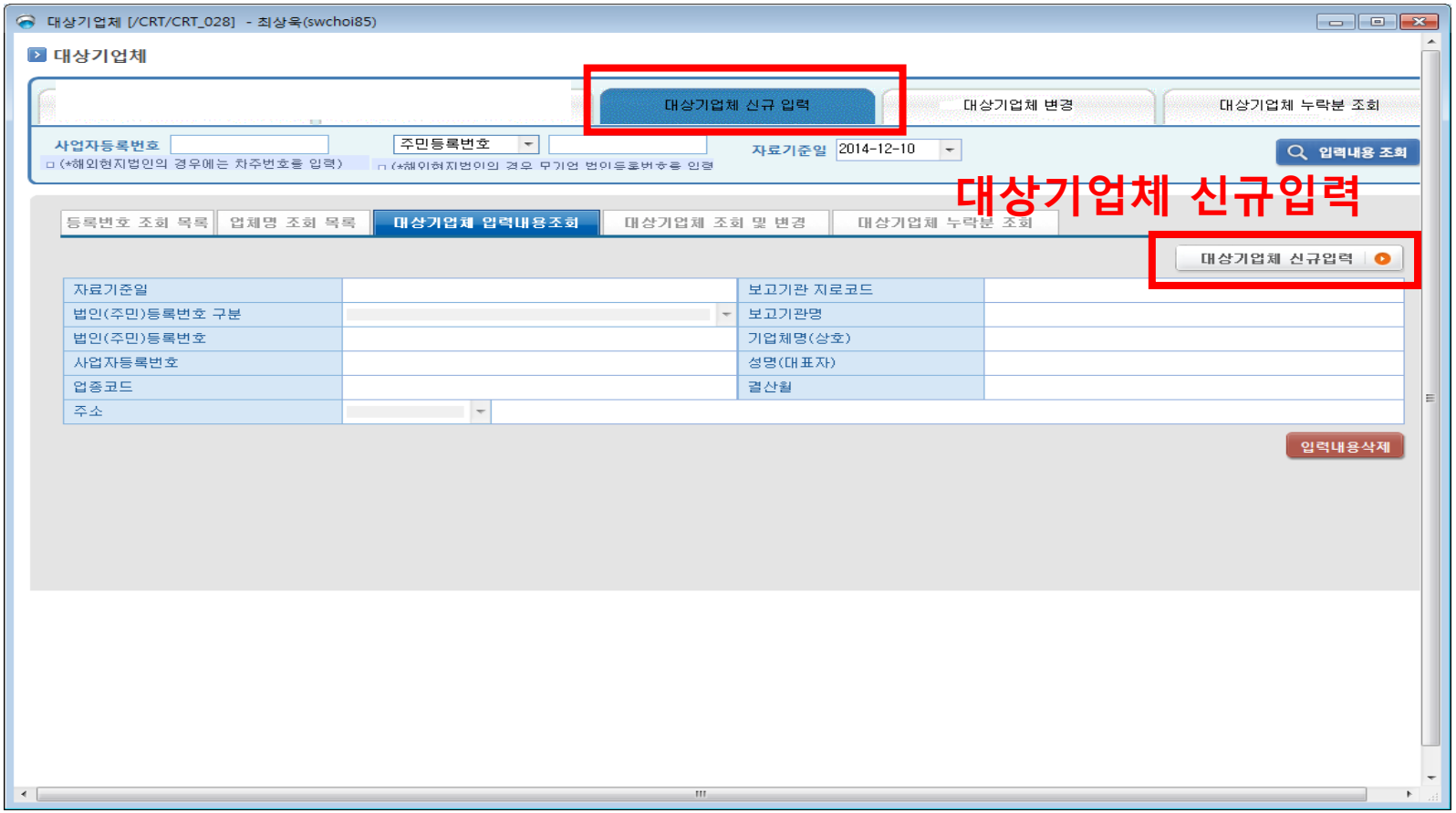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5)**

✓ 대상기업체 신규입력 탭에서 대상기업체 신규입력 클릭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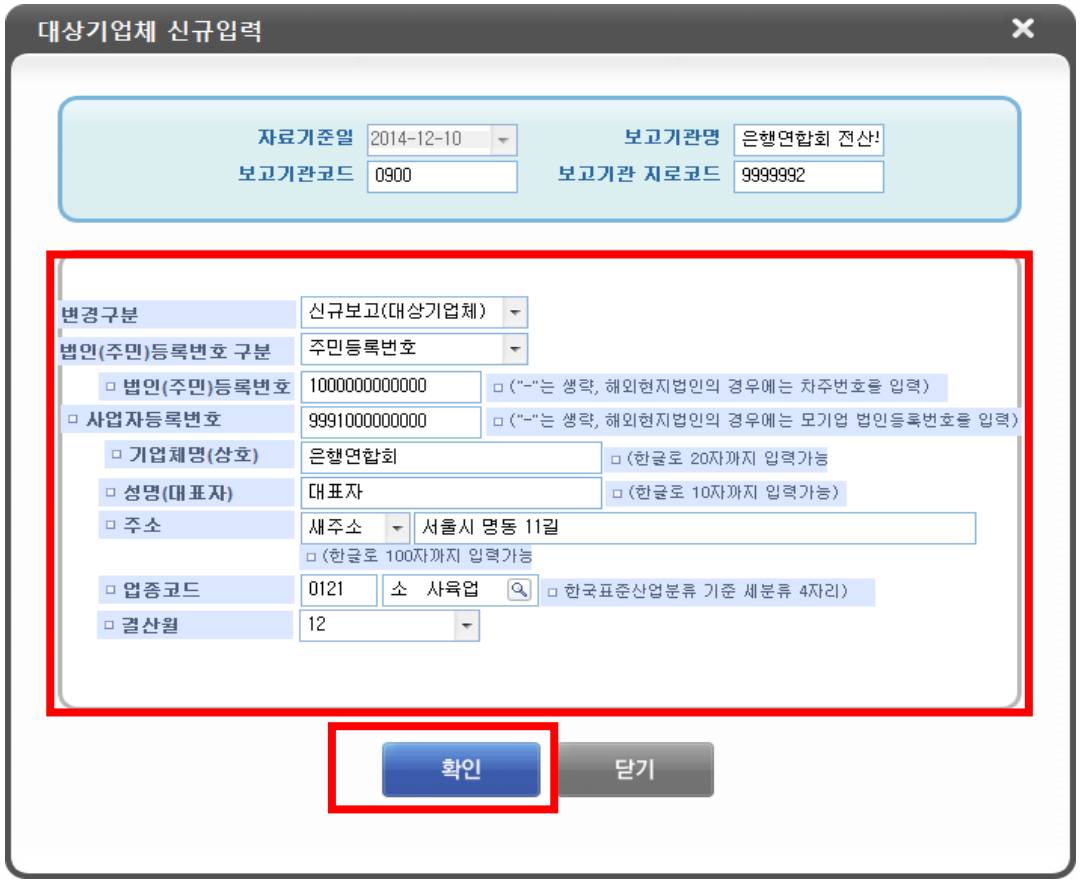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6)**

✓ 대상기업체 정보작성(1)을 참조하여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체명, 성명, 주소, 업종코드, 결산월 등 입력 → 확인버튼 클릭 → 대상기업체 정보 신규 등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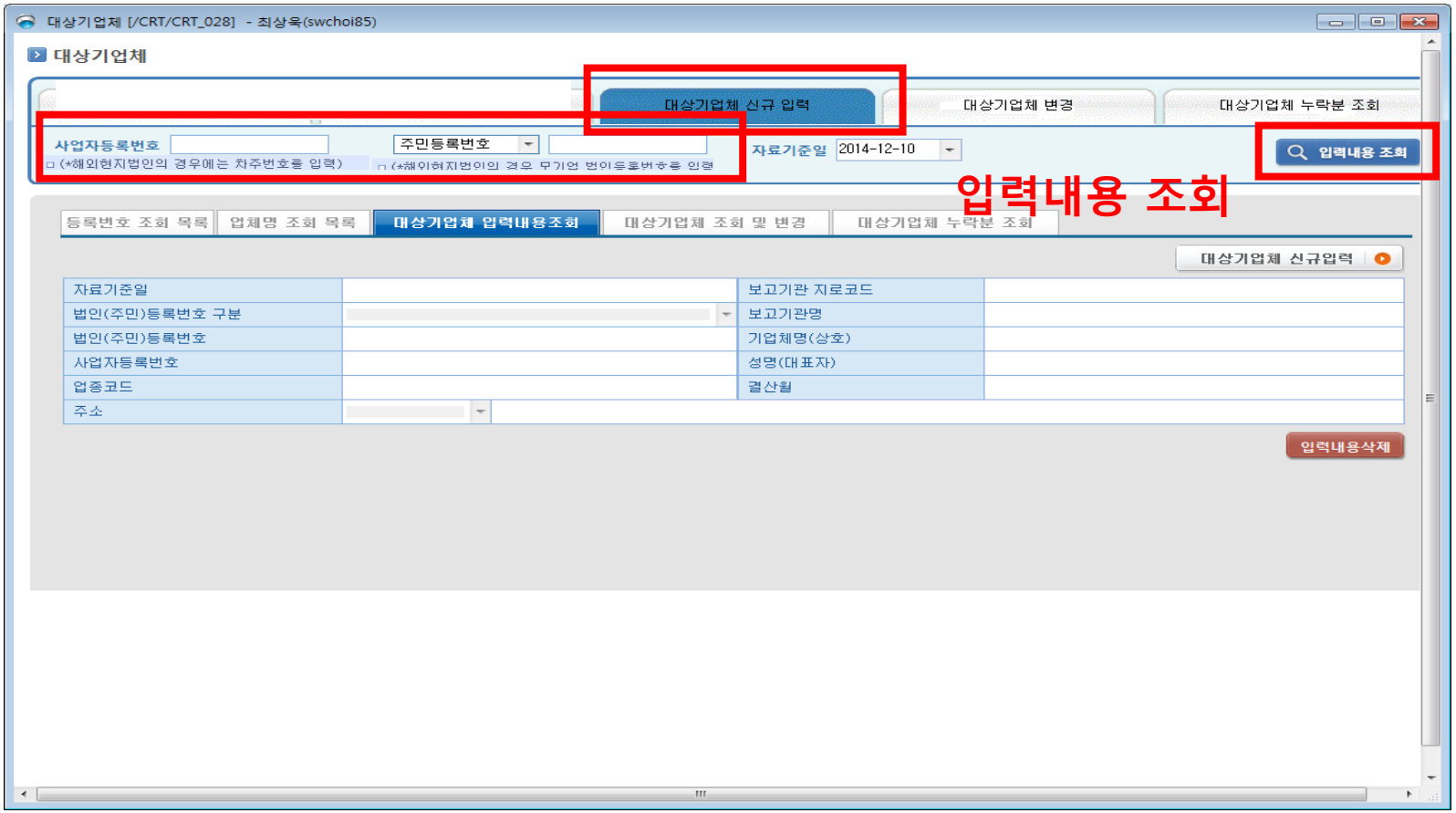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7)**

✓ 대상기업체 신규입력 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내용조회 클릭 → 해당 대상기업체 정보 조회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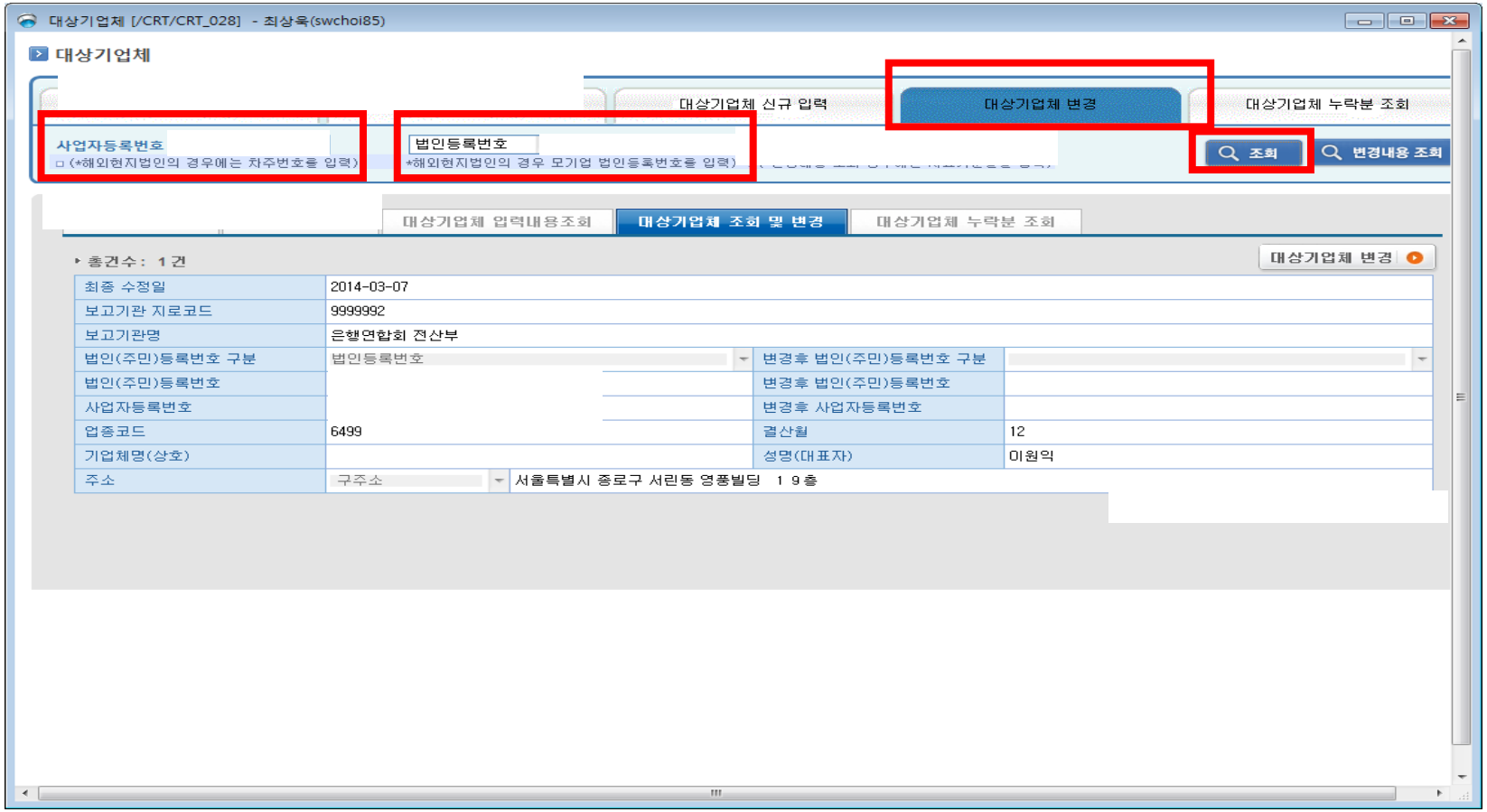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8)**

✓ 대상기업체 변경 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클릭 → 해당 대상기업체 정보 조회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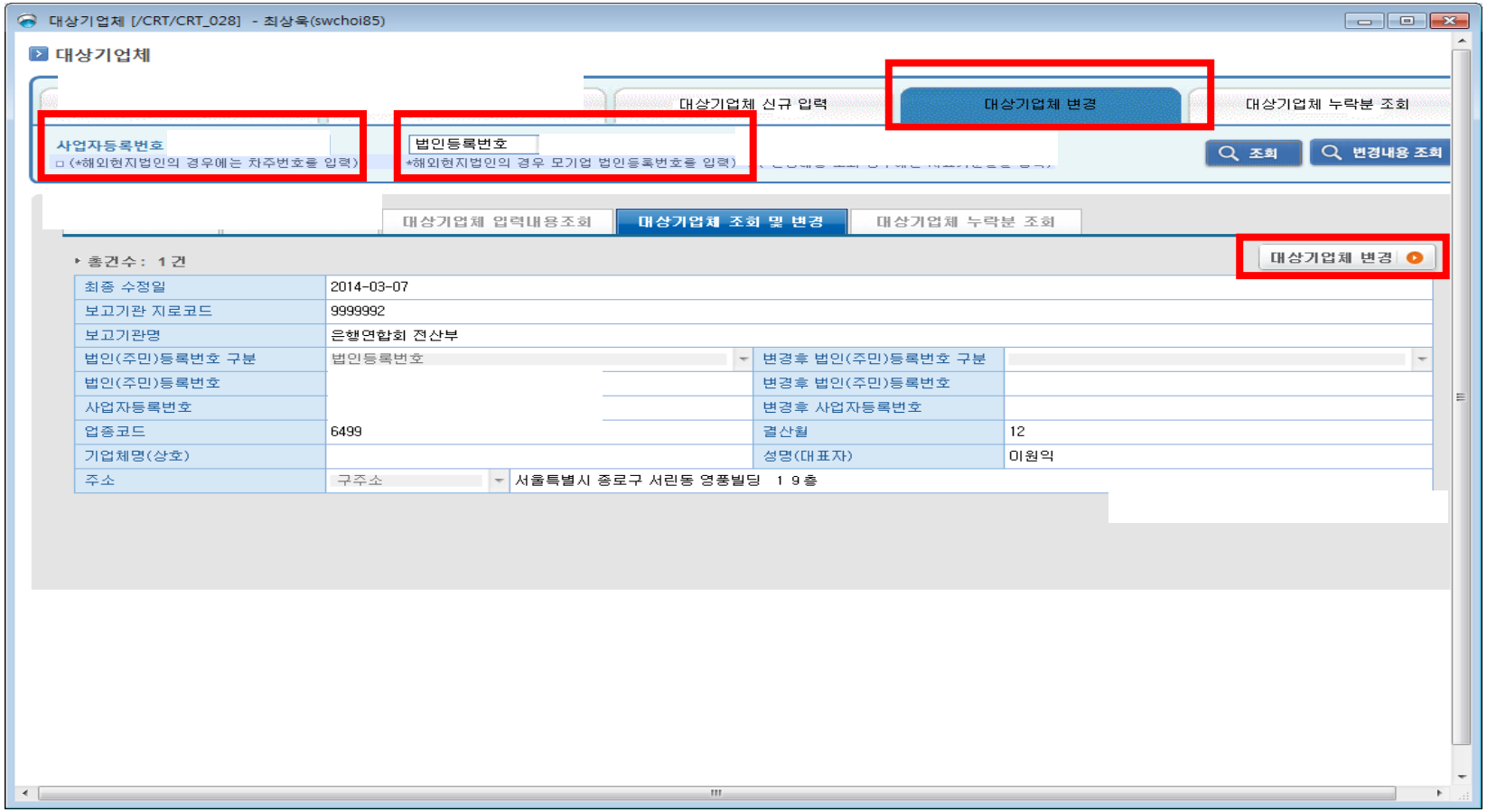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9)**

✓ 조회된 정보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체 변경 버튼 클릭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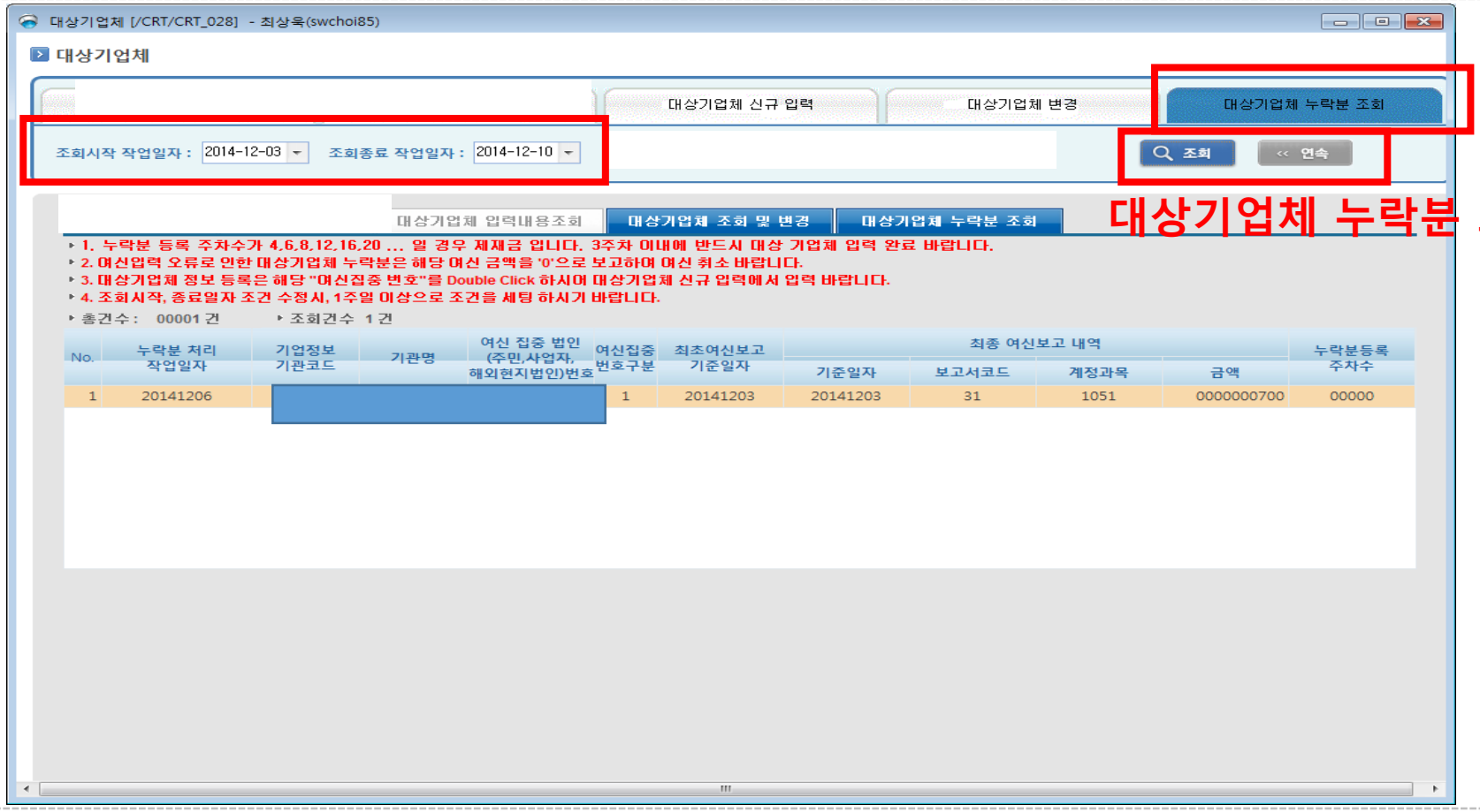


**대상기업체 정보(10)**

✓ 자사의 대상기업체 누락분(신용공여는 존재하나, 대상기업체 정보는 누락된 명단)을 조회하는 경우 : 대상기업체 누락분 조회 → 작업일자 세팅 → 조회 클릭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신용공여기록 | 31 | | | | | | | | | | | <만기구조>(단위:백만원) |
|---|---|---|---|---|---|---|---|---|---|---|---|---|
| 대과목 | 소과목 | Code | 금잔 (1) | 3월이하 (2) | 3월초과 6월이하(3) | 6월초과 1년이하(4) | 1년초과 2년이하(5) | 2년초과 (6) | 연 체 | | |
| | | | | | | | | | 연체금액(7) | 연체기산일(8) | 이자연체여부(9) |
| 대출채권 | 상업어음할인(CMA포함) | 101 | | | | | | | | | |
| | 무역어음할인(CMA포함) | 102 | | | | | | | | | |
| | 유가증권담보대출 | 104 | | | | | | | | | |
| | 부동산담보대출 | 106 | | | | | | | | | |
| | 예적금담보대출 | 108 | | | | | | | | | |
| | 계약금액내대출 | 110 | | | | | | | | | |
| | 어음담보대출 | 112 | | | | | | | | | |
| | 기업어음할인(CMA포함) | 113 | | | | | | | | | |
| | 지급보증(담보)대출 | 114 | | | | | | | | | |
| | 공제금대출(K biz) | 116 | | | | | | | | | |
| | 농수산정책자금(aT) | 118 | | | | | | | | | |
| | 중금원화대출 | 119 | | | | | | | | | |
| | 신용대출(종합통장대출) | 120 | | | | | | | | | |
| | 신기술금융대출 | 121 | | | | | | | | | |
| | 외화대출금 | 131 | | | | | | | | | |
| | 금융리스 | 132 | | | | | | | | | |
| | 내국수입유산스 | 133 | | | | | | | | | |
| | 역외외화대출금 | 135 | | | | | | | | | |
| | 운용리스 | 136 | | | | | | | | | |
| | 자금대여 | 138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39 | | | | | | | | | |
| | 약정투자 | 140 | | | | | | | | | |
| | 할부금융 | 142 | | | | | | | | | |
| | 외상대출채권(팩토링채권) | 145 | | |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입(신탁포함) | 149 | | | | | | | | | |
| | 콜론 | 151 | | | | | | | | | |
| | 사모사채 | 153 | | | | | | | | | |
| | 기타 | 189 | | | | | | | | | |
| | **대출채권계** | **190** | | | | | | | | | |

**일일여신 작성(1)**

✓ 일일여신(DD9011) 신용공여조사표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신용공여기록 | 31 |
|---|---|

<만기구조> (단위: 백만원)

| 대과목 | 소과목 | Code | 금잔 (1) | 3월이하 (2) | 3월초과 6월이하(3) | 6월초과 1년이하(4) | 1년초과 2년이하(5) | 2년초과 (6) | 연 체 | | |
|---|---|---|---|---|---|---|---|---|---|---|---|
| | | | | | | | | | 연체금액(7) | 연체기산일(8) | 이자연체여부(9) |
| 유가증권 | 기업어음매입 | 202 | | | | | | | | | |
| | 공모사채 | 231 | | | | | | | | | |
| | 대여유가증권 | 233 | | | | | | | | | |
| | 기타 | 289 | | | | | | | | | |
| | **유가증권계** | **290** | | | | | | | | | |
| 주 석 (지급보증 등) | 지급보증 | 302 | | | | | | | | | |
| | 어음지급보증 | 304 | | | | | | | | | |
| | 담보배서어음매출 | 305 | | | | | | | | | |
| | 무역어음인수 | 306 | | | | | | | | | |
| | 이행지보 | 307 | | | | | | | | | |
| | 기타 | 389 | | | | | | | | | |
| | **지급보증등계** | **390** | | | | | | | | | |
| 기 타 | 여신성 가지급금 | 401 | | | | | | | | | |
| | 자산유동화에따른신용보강수단 | 405 | | | | | | | | | |
| | 대손상각채권 | 407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포함) | 409 | | | | | | | | | |
| | 기타 | 489 | | | | | | | | | |
| | **기타계** | **490** | | | | | | | | | |
| 신 탁 |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 | 995 | | | | | | | | | |
| 신용공여합계 | **대출채권** | **610** | | | | | | | | | |
| | **유가증권** | **620** | | | | | | | | | |
| | **지급보증등** | **640** | | | | | | | | | |
| | **기타** | **650** | | | | | | | | | |
| | **합계** | **690** | | | | | | | | | |

**일일여신 작성(2)**

✓ 일일여신(DD9011) 신용공여조사표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신용공여기록 | 31 | | | | | | | | | | | |
|---|---|---|---|---|---|---|---|---|---|---|---|---|
| | | | <만기구조> | | | | | | | | | (단위: 백만원) |
| 대과목 | 소과목 | Code | 금잔 (1) | 3월이하 (2) | 3월초과 6월이하(3) | 6월초과 1년이하(4) | 1년초과 2년이하(5) | 2년초과 (6) | 연체 | | | |
| | | | | | | | | | 연체금액(7) | 연체기산일(8) | 이자연체여부(9) | |

보고서 번호

계정과목 : 계정과목 해설과 신용공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코드 입력 (이어지는 계정과목 해설 참고)

대출잔액

차주별 · 계정과목별로 계좌단위 잔존만기를 만기구조의 해당 구간에 금액 표시하여 집중

기업신용공여 정보는 단위가 백만원이므로 주의 요망 (반올림하여 백만원이 안될 경우 집중 제외)

10일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시 일일여신에 원금 연체금액 또는 이자연체 여부 집중

**일일여신 작성(3)**

✓ 일일여신(DD9011) 신용공여조사표 구분별 해설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대과목 | 계정과목 | 내 용 |
|---|---|---|
| 대출<br>채권 | 지급보증<br>(담보)대출<br>(114) | - 고객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 |
| | 공제금대출<br>(116) |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조합, 기타의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br>-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자금 대출 등 |
| | 농 수 산<br>정책자금<br>(118) |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 대출로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하였으나, 2008. 1. 1.부터 본 계정으로 통합하여 집중하는 계정 |
| | 종금원화<br>대 출<br>(119) | - 종금사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담보(물건, 지급보증)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
| | 신용대출금<br>(종합통장대출)<br>(120) | -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소액신용대출, 인터넷전용대출, 무보증신용대출 등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계정<br>- 예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
| | 신 기 술<br>금융대출<br>(121) |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 및 국산신기술인정을 받은 기업, 공업발전법에 의한 개발기술 실용화 인정 및 우수품질인정을 받은 기업 등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계정 |
| | 외 화<br>대출금<br>(131) | - 금융회사가 거래처에 외화로 대출하거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br>-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이라도 표시통화 및 대출.회수금액의 결정 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대출로 봄 |
| | 금융리스채권<br>(132) |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

**일일여신 작성(4)**

✓ 대과목, 소과목, Code : 계정과목 관련 주요 내용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대과목 | 계정과목 | 내 용 |
|---|---|---|
| 대출<br>채권 | 내국수입<br>유 산 스<br>(133) | - 외국환은행이 자행이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수입환어음을 수입화물 도착 즉시 인수함과 동시에 대외결제하고 동 어음 만기일내에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상환받는 외환여신으로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이를 취급하였을 경우리 처리하는 계정 |
| | 역외외화<br>대 출 금<br>(135) | - 타 off-shore(역외금융) 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국의 타 off-shore(역외금융) 계정 앞으로 취급한 외화대출계정 |
| | 운용리스<br>(136) |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고 그 자산의 유지관리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
| | 자금대여<br>(138) |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
| | 지급보증<br>대지급금<br>(139) | - 금융회사가 신용장 개설이나 지급보증서 발행에 의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후 결제기일에 고객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대신하여 결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구상권 |
| | 약정투자<br>(140) |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투자회사 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 시에는 주식 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 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하는 투자 방식 |
| | 할부금융<br>(142) |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처리하는 계정 |
| | 외상매출<br>채 권<br>(145) | - 금융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가 상거래와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 또는 비어음외상매출채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대금을 직접 회수하고 사업체에게는 간접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br>-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집중 제외<br>- 팩토링채권, 외상매출채권매입, 수출팩토링채권 등 |

**일일여신 작성(5)**

✓ 대과목, 소과목, Code : 계정과목 관련 주요 내용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대과목 | 계정과목 | 내 용 |
|---|---|---|
| 대출 채권 | 신용카드 채 권 (147) | -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 선지급한 회원의 신용구매대금과 회원에게 자금을 융통한 신용판매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회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
|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신탁포함) (149) | - 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가액을 처리하는 계정<br>- 종금사의 경우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은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계정으로 집중 |
| | 콜론 (151) | -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 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콜거래가 허용된 기관에서 원화 및 외화자금을 단기로 대여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br>- 종금사의 경우 원금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은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계정으로 집중<br>- 금융회사간 조정자금은 제외 |
| | 사모사채 (153) | - 공모사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정보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사채와 다르며 이를 금융회사가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분을 처리하는 계정 |
| | 기타(189) |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
| 유가증권 | 기업어음 매 입 (202) | - 기업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표지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의 대출채권으로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포함하여 어음할인의뢰인 기준으로 작성<br>- 기업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경우 기업어음할인계정으로 집중하며 유통물 매입인 경우 기업어음매입으로 집중 |
| | 공모사채 (231) |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상품유가증권이나 투자유가증권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집중<br>- 외화회사채, 원화발행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정부출자기업채권 등 |
| | 대 여 유가증권 (233) | - 금융회사가 대여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처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 |
| | 기타(289) | – 상기 유가증권 항목에 속하지 않은 계정을 처리 |

**일일여신 작성(6)**

✓ 대과목, 소과목, Code : 계정과목 관련 주요 내용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대과목 | 계정과목 | 내 용 |
|---|---|---|
| 주 석<br>(지급보증등) | 지급보증<br>(302) | - 금융회사가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주는 우발채무(보증채무)로서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액을 집중<br>- 금융회사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 지급보증 포함 |
| | 어 음<br>지급보증<br>(304) | - 금융회사가 기업 등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
| | 담보배서<br>어음대출<br>(305) | - 종금사가 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매입절차를 필하고 보관중에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에게 할인 매출하는 것으로 만기시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배서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배서어음) |
| | 무 역<br>인수어음<br>(306) | -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구입이나 생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신용장(LC)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 수출업체는 신용장이 도착하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수출업체가 이를 종합금융회사나 은행에 지시하면 일정금리를 공제한 뒤 나머지 돈을 대출받게 된다. 종금사는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각, 유통시킵다. |
| | 이행지보<br>(307) | -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계약이행보증이라고도 함. |
| | 외화대출<br>약 정<br>(371) | -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출공여약정(외화대출 공여, 역외포함)을 체결 시 그 한도 중 미인출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
| | 기타(389) | - 상기 지급보증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
| 기타 | 자산유동화에 따른신용보강수단<br>(405) | - 자산보유자가 SPC에 원화대출약정, ABCP(유동성기업어음) 매입약정, 하자담보책임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질 경우 처리하는 계정 |
| | 대손상각<br>채 권<br>(407) | -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서 거래 존속시 까지 집중<br>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등록, 채권포기,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의 경우에는 집중 제외 |
| | 기타(489) |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
| 신탁 | 원본.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br>(995) | -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에서 발행하는 신용공여를 처리하는 계정<br>-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연금신탁 등<br>- 일보(말일자)의 만기구조 제외 |

**일일여신 작성(7)**

✓ 대과목, 소과목, Code : 계정과목 관련 주요 내용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 구분 | 평일보(일일여신) | 말일보(일일여신) |
|---|---|---|
| **연체일 기준** |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기준일에 연체 등록<br>(연체기산일 :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둘 중 빠른(오래된)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날) | |
| **연체금액 기준** | 원금연체는 반올림하여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집중하며, 이자연체는 금액과 무관하게 여부<br>(있을 경우 : 1, 없거나 전액 상환한 경우 : 0)를 표시 | 원금연체는 반올림하여 1 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집중하며, 이자연체는 금액과 무관하게 여부<br>(있을 경우 : 1, 없을 경우 : 표시 안함)를 표시 |
| **연체정보 구성** |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인 경우<br>「금잔(1) + 연체금액(7) + 연체기산일(8) + 이자연체여부(9)」는 모두 함께 등록 |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인 경우<br>「금잔(1) + (연체금액(7)) + 연체기산일(8) + ((이자연체여부(9))」을 등록(해당사항 있는 정보만 입력) |
| **신용도판단 정보와 관계** | - 일일여신으로 연체 집중 후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신용도판단정보의 연체 등 정보에도 별도 집중<br>- 기타 사항으로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등 정보'와 동일하게 처리(등록유예나 제외 사항 등) | |
| **만기구조 작성여부** | 만기구조 중 단기연체금액만 표기 | 단기연체정보를 포함한 만기구조 작성 |
| **만기구조 작성요령** | 단기연체금액이 금잔보다 크면 안됨 | 단기연체금액을 포함한 만기구조 합계가 금잔과 일치해야 함 |
| **'0'값** | 상환 등을 보고하기 위해 '0'값 입력 가능 | 월말 기준 모든 거래처의 신용공여를 입력하므로 '0'값 입력 불가 |
| **비고** | - 연체 상환 우선순위(일부 상환 등)에 따른 원금연체 또는 이자연체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판단<br>- 만기구조는 계정과목마다 계좌 단위 잔존만기를 입력하며, 분할상환계좌의 경우 가장 늦은 만기를 입력 | |

**일일여신 작성(8)**

✓ 평일보, 말일보 작성(연체, 만기구조) 차이점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일일여신 작성(9)**

## 일일여신 작성 예시(평일보)

① 기준일 : 2015. 1. 2.
- 법인A에 대한 대출원금 3천만원 신규 발생(납입기한 1월 8일)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3월~ 2년초과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30 | | | | |

② 기준일 : 2015. 1. 4.
- 대출원금 2천만원 상환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3월~ 2년초과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 | | | | |

③ 기준일 : 2015. 1. 18.
- 원금 납입일인 1월 8일에 원금 1천만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10일이상 된 경우의 집중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3월~ 2년초과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 | | 10 | 20150108 | 0 |

④ 기준일 : 2015. 1. 20.
- 원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연체 된 경우의 집중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3월~ 2년초과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 | | 10 | 20150108 | 1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일일여신 작성(10)**

## 일일여신 작성 예시(말일보)

① 기준일 : 기준일 : 2015. 1. 31.
- 법인 A에 대한 원금 1억원, 잔여대출기간 7개월, 연체 없는 경우의 집중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6월~ 1년이하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0 | 100 | | | |

② 기준일 : 2015. 1. 31.
- 법인A에 대한 원금 1억원, 연체된 분할상환금 1천만원 (납입기한 1월 9일), 잔여대출원금 9천만원 (잔여대출기간 7개월)인 경우의 집중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6월~ 1년이하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0 | 90 | 10 | 20150109 | |

③ 기준일 : 201X. 1. 31.
- 법인A에 대한 원금 1억원, 원금 연체없으며 대출잔여기간 7개월, 이자만 연체 (납입기한 1월 9일)인 경우의 집중

| 식별 번호 | 구분 | 보고서 코드 | 과목 코드 | 만기구조 합계 | 금잔 | 6월~ 1년이하 | 연체금액 | 연체 기산일 | 이자 연체여부 |
|---|---|---|---|---|---|---|---|---|---|
| 1234561234567 | 3 | 31 | XXXX | | 100 | 100 | | 20150109 | 1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월말여신 작성(1)**

(단위:백만원)

| 한도거래상황 | 32 | 한도거래회전대출 | | | |
|---|---|---|---|---|---|
| 과목 | | Code | 회전한도액 | Code | 대출(보증)잔액 |
| 상업어음할인 | | 1111 | | 1112 | |
| 당좌대출 | | 1121 | | 1122 | |
| 일반자금대출 | | 1131 | | 1132 | |
| 기업어음할인 | | 1141 | | 1142 | |
| 무역금융 | | 1151 | | 1152 | |
| 무역어음할인 | | 1161 | | 1162 | |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 1171 | | 1172 | |
| 구매자금대출 | | 1181 | | 1182 | |
| 보증기관지급보증 | | 1191 | | 1192 | |
| 외화대출 | | 3111 | | 3112 | |
| 기타 | | 5001 | | 5002 | |
| 계 | | 6001 | | 6002 | |

## ✓ 32번 보고서 : 한도거래상황

- ⓘ 금융회사가 차주와의 신용공여에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이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금액(한도)와 실 대출금액(대출잔액)을 집중. 단, 1회성 한도거래의 경우 집중 제외
- ⓘ 회전한도액 및 실 대출잔액을 집중할 때 한도계정의 실 대출잔액(이자 제외)이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중
- ⓘ 회전한도액만 있고 실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회전한도액만 집중
- ⓘ 한도거래상황보고서의 실 대출잔액은 31번 신용공여조사표의 해당 대출잔액과 일치하거나 적어야 함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월말여신 작성(2)**

| 담보기록 | 33 |
|---|---|

(단위:백만원)

| 담보종류 | | | 유효담보가액및담보범위 | |
|---|---|---|---|---|
| | | | Code | 금월말잔액 |
| 재산권 | 부동산 | 대지건물 | 1111 | |
| | | 임야 | 1121 | |
| | | 기타부동산 | 1191 | |
| | 특수저당 | 선박항공기 | 1211 | |
| | | 자동차중기 | 1221 | |
| | | 광업권어업권 | 1231 | |
| | | 공장및광업재단 | 1241 | |
| | | 지식재산권 | 1251 | |
| | | 기타특수저당 | 1291 | |
| | 동산 | 기계기구 | 1311 | |
| | | 농축산물 | 1321 | |
| | | 재고자산 | 1331 | |
| | | 기타동산 | 1391 | |
| | 유가증권 | | 1401 | |
| | 채권 | 예금적금 | 1511 | |
| | | 확정채권 | 1521 | |
| | | 기타채권 | 1591 | |
| | 기타재산권 | | 1901 | |
| 보증 | 정부보증 | | 2111 | |
| | 금융기관지급보증 | | 2121 | |
| | 보 증 기 금 보 증 | | 2131 | |
| 기타 | | | 5001 | |
| 담보총계 | | | 6001 | |

## 33번 보고서 : 담보기록

-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담보, 설정액을 공제한 후 담보권실행이 가능한 유효(가용)가액을 집중
-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차고 취득 등 담보효력이 확보된 담보만 집중
- 담보의 종류 중 유가증권에는 주식 등도 포함하며, 이 경우 대용가를 적용함
- 정부보증의 경우 무역보험공사 등이 해당되며, 보증기금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해당됨(이 경우 금액은 보증서 발행금액 중 유효가액을 집중)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월말여신 작성(3)**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34 |
|---|---|

(단위:백만원)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 |
|---|---|---|
| 과 목 | Code | |
| 법인채무보증(일반) | 1111 | |
| 법인채무보증(부동산개발(PF) 관련) | 1121 | |
| 법인채무보증(SOC PF 관련) | 1131 | |
| 법인채무보증 소계 | 1901 | |
| 법인채무인수약정(일반) | 2111 | |
| 법인채무인수약정(부동산개발(PF) 관련) | 2121 | |
| 법인채무인수약정(SOC PF 관련) | 2131 | |
| 법인채무인수약정 소계 | 2901 | |
| 기 타 | 5001 | |
| 합 계 | 6001 | |

## 34번 보고서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신용정보제공기관에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법인에 대하여 정보 집중
- 대표자 등 개인이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채무보증정보로 집중
- 협약서 등에 자금보충 및 책임준공 사항의 경우 금액 구분이 가능한 경우 기타계정으로 집중
-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약정 시 협약서 등도 포함하며, 협약서와 보증서가 동일금액으로 이중 보증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으로 집중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월말여신 작성(4)**

## 월말여신 작성 예시

① 한도 거래 집중(32번 보고서), 기준일 : 201X. 1. 31. 법인A
한도액 1억원 중 실제 대출 실행된 금액은 3천만원인 경우의 집중

| 식별번호 | 구분 | 보고서코드 | 과목코드 | 만기구조합계 | 한도액 | 잔액 |
|---|---|---|---|---|---|---|
| 1234561234567 | 3 | 32 | XXXX | | 100 | 30 |

② 담보 내역 집중(33번 보고서), 기준일 : 201X. 1. 31. 법인A
대출 실행금액 1억원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대지건물을 담보로 취급하였으며,
대지건물에는 선순위 채권 8천만원이 있음

| 식별번호 | 구분 | 보고서코드 | 과목코드 | 만기구조합계 | 한도액 | 잔액 |
|---|---|---|---|---|---|---|
| 1234561234567 | 3 | 33 | XXXX | | | 120 |

③ 법인채무보증 등 집중(34번 보고서), 기준일 : 201X. 1. 31. 법인A
B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A기업이 금융기관에 1억원의 보증을 제공

| 식별번호 | 구분 | 보고서코드 | 과목코드 | 만기구조합계 | 한도액 | 잔액 |
|---|---|---|---|---|---|---|
| 1234561234567 | 3 | 34 | XXXX | | | 100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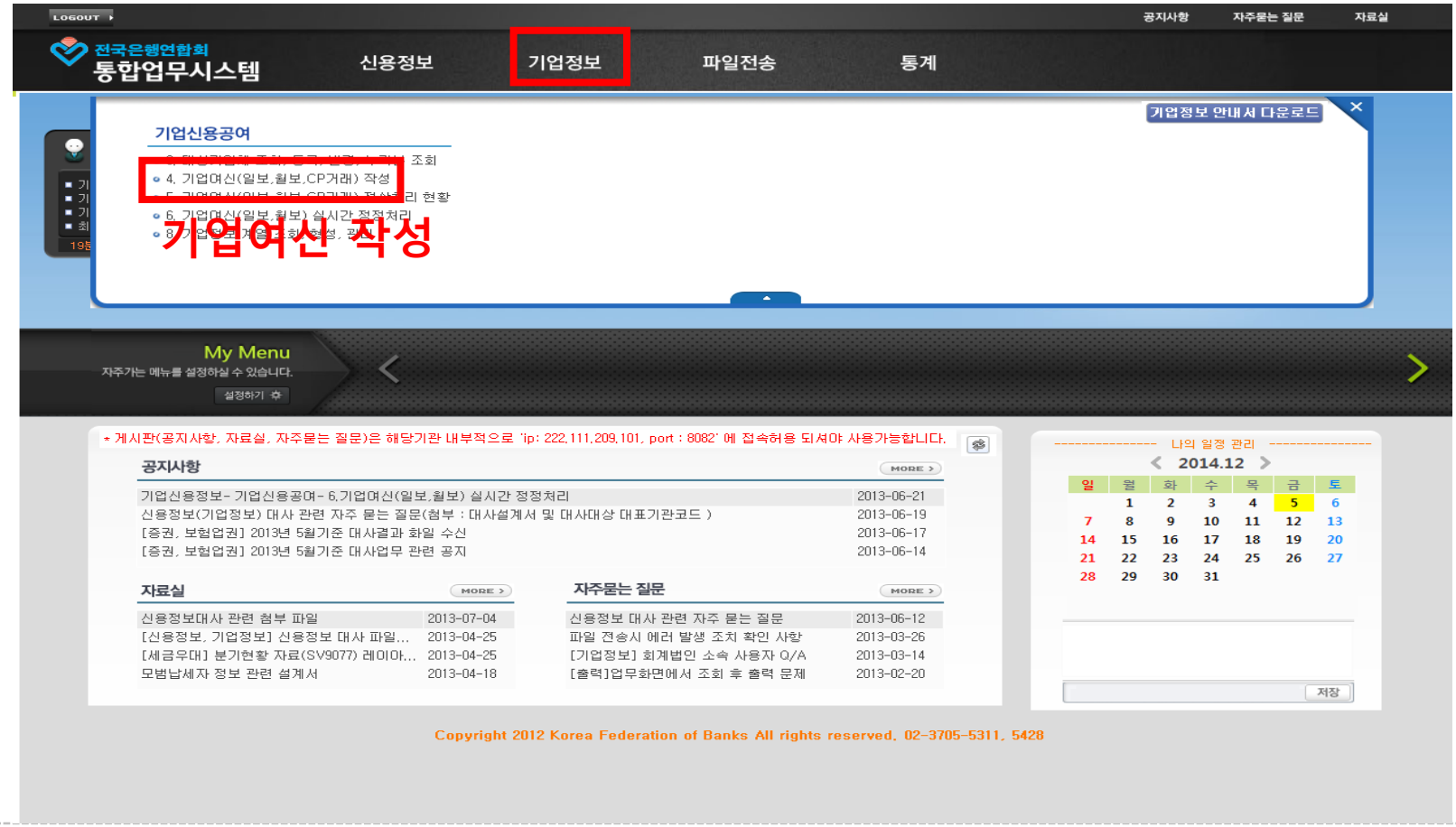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1)**

✓ 메인화면에서 기업정보 → 기업신용공여 → 기업여신(일보, 월보, CP거래) 작성 레이블 선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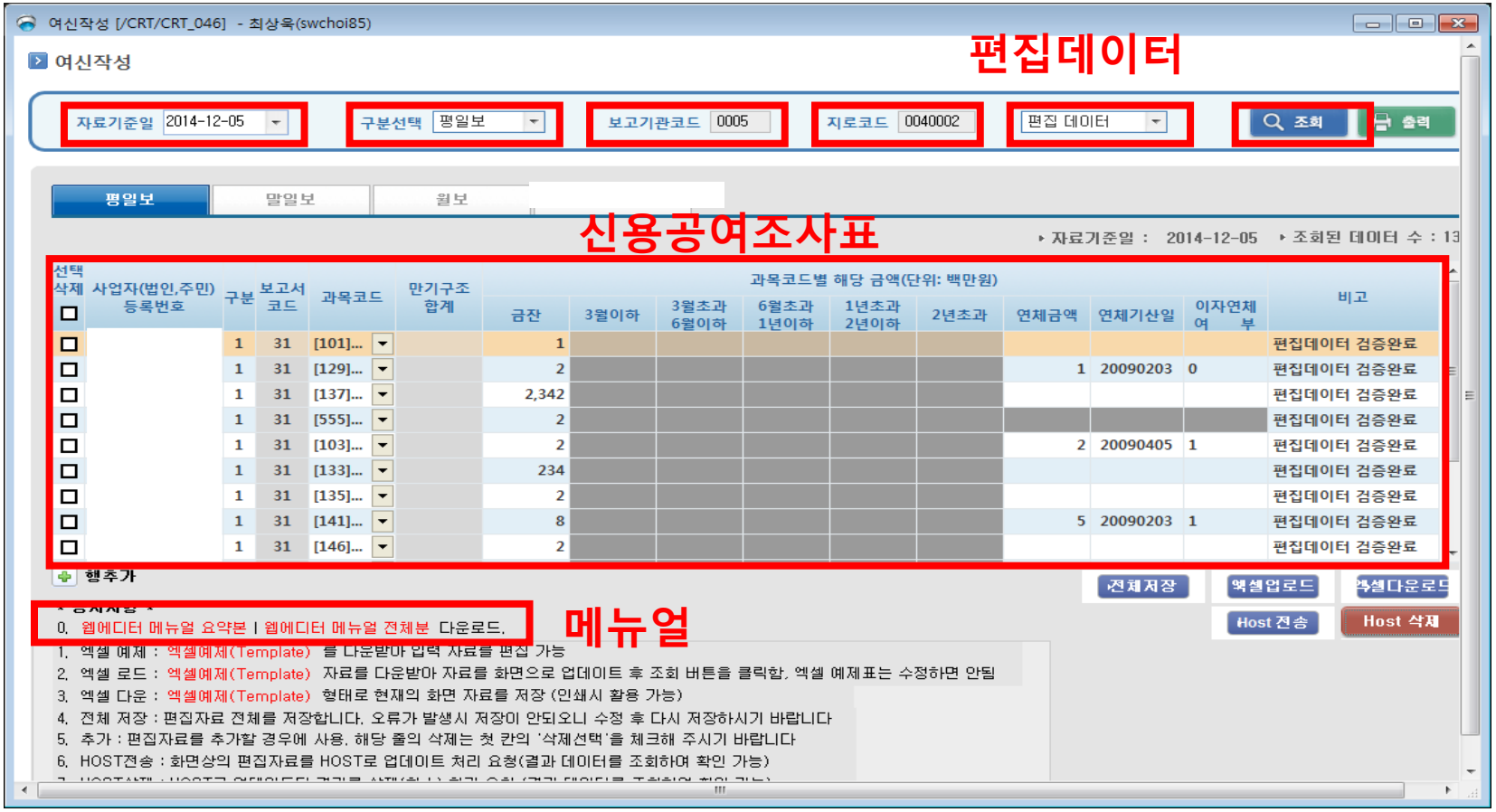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2)**

✓ 기준일자, 구분(평일보, 말일보, 월보)을 선택 후 '신용공여조사표' 에 해당 내용 입력(상세작성방법은 매뉴얼 참조 요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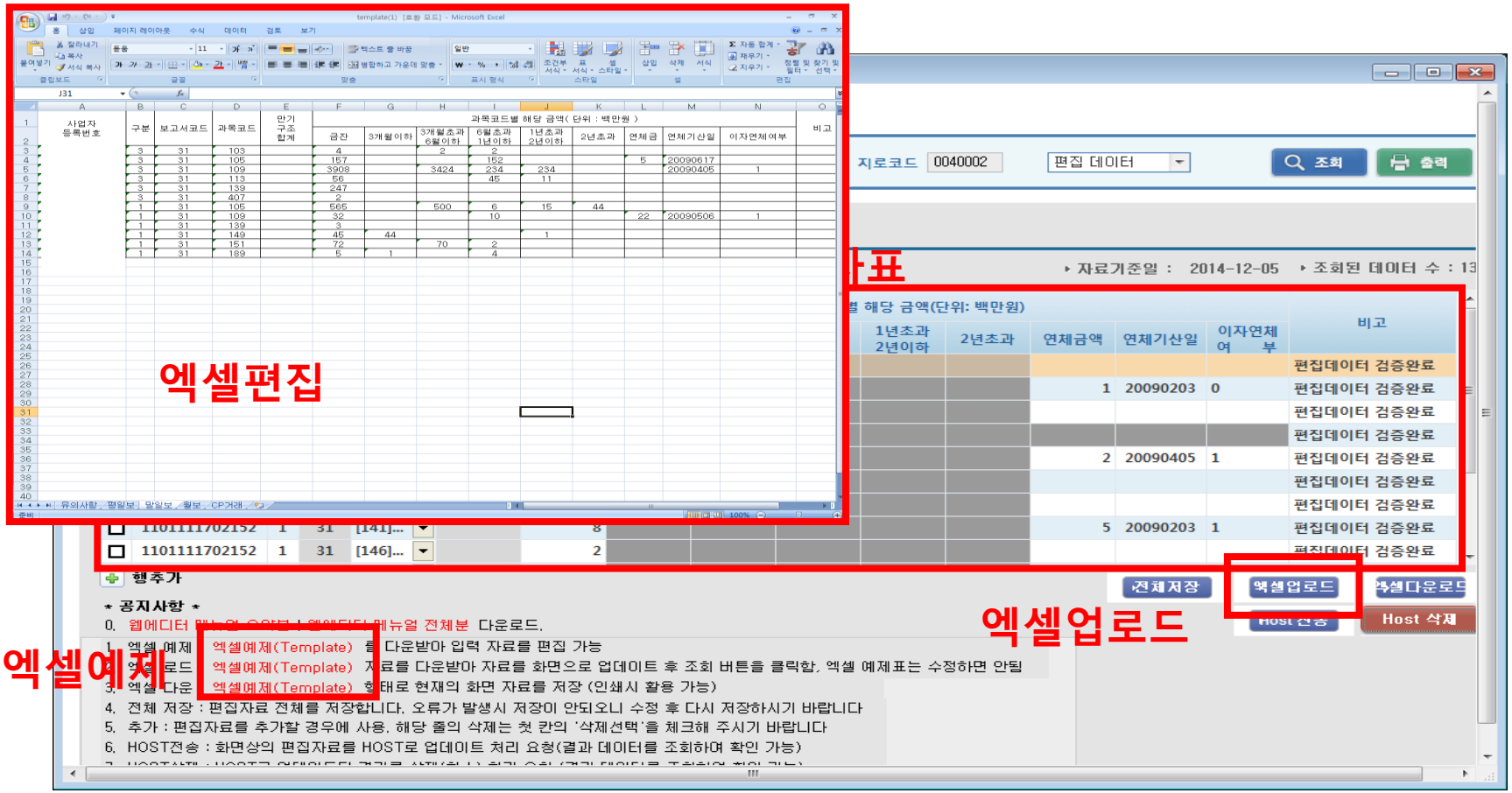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3)**

✓ 필요시 엑셀예제(템플릿)을 다운 받아 편집한 후, 엑셀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통해 다건의 데이터 업로드가 가능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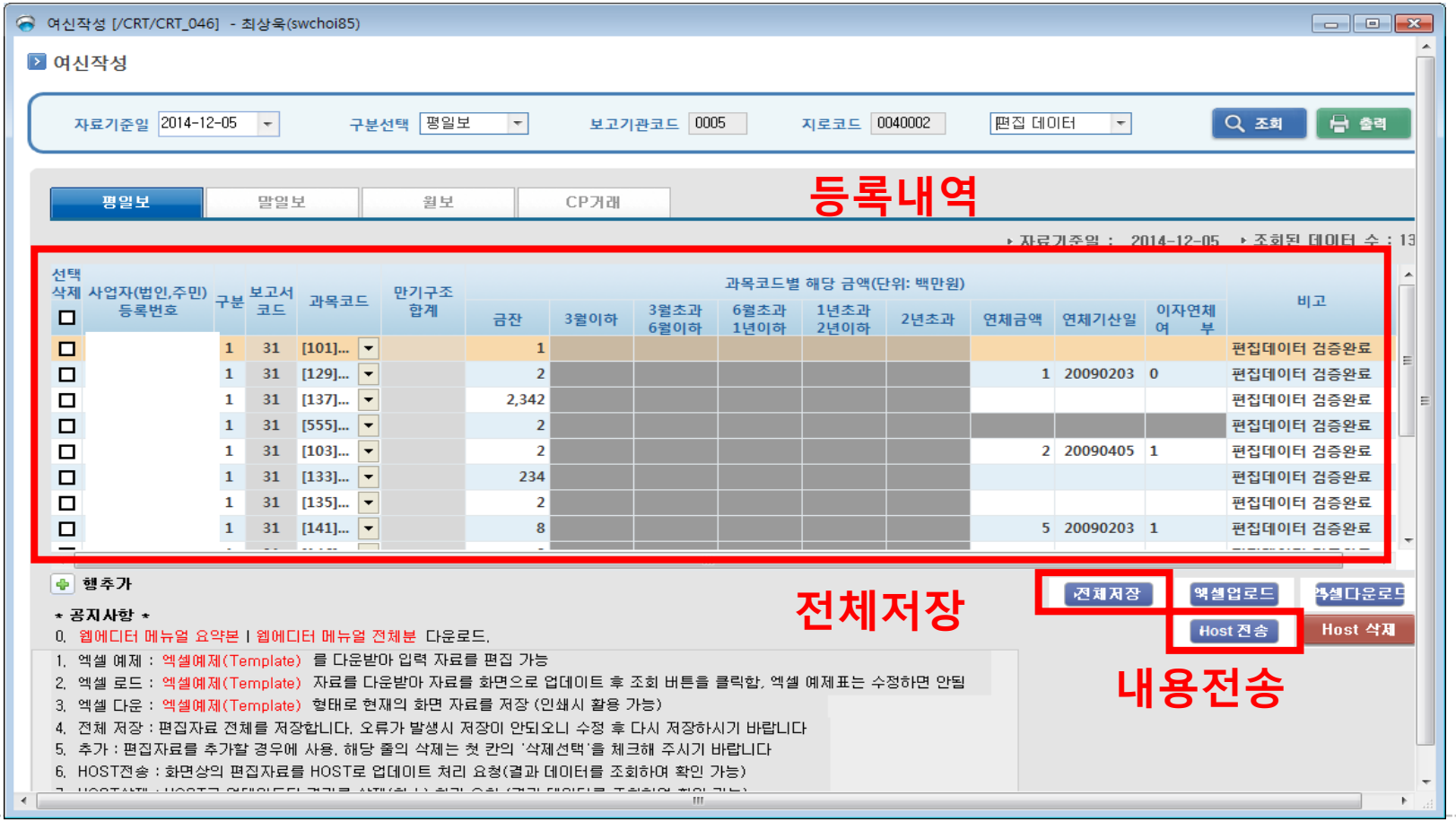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4)**

✓ 내용 입력 완료 후 ① **전체저장** → ② **HOST전송** 을 클릭하여 기업여신 보고서 최종 전송(반드시 저장 후 전송할 것)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기업여신 작성(5)**

✓ **HOST전송**이 완료되면 편집 데이터를 결과데이터로 변경하여 조회하면, 전송된 내용 확인 가능(만약 정정이 필요한 경우, HOST삭제 한 후, 편집데이터를 재편집한 후 저장 및 전송)

**※ 정정 필요 내용만 전송하는 경우, 동건만 전송되어 나머지 기업신용공여정보는 집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요망 (예시 _ 100건중 9건만 정정하여 편집데이터로 보낼경우, 9건만 보고됨)**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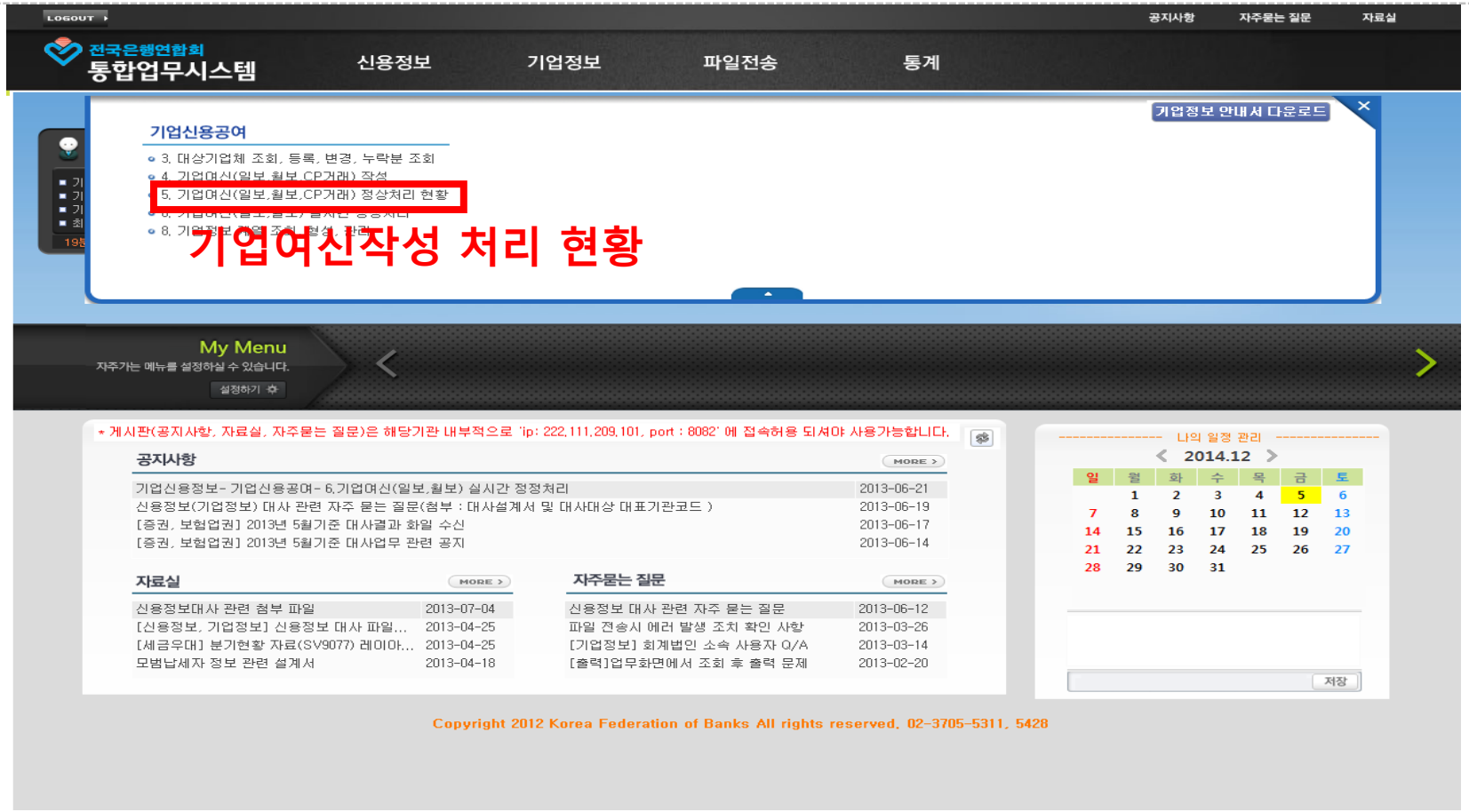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6)**

✓ 메인화면에서 기업정보 → 기업신용공여 → 기업여신(일보, 월보, CP거래) 정상처리 현황 레이블 선택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처리(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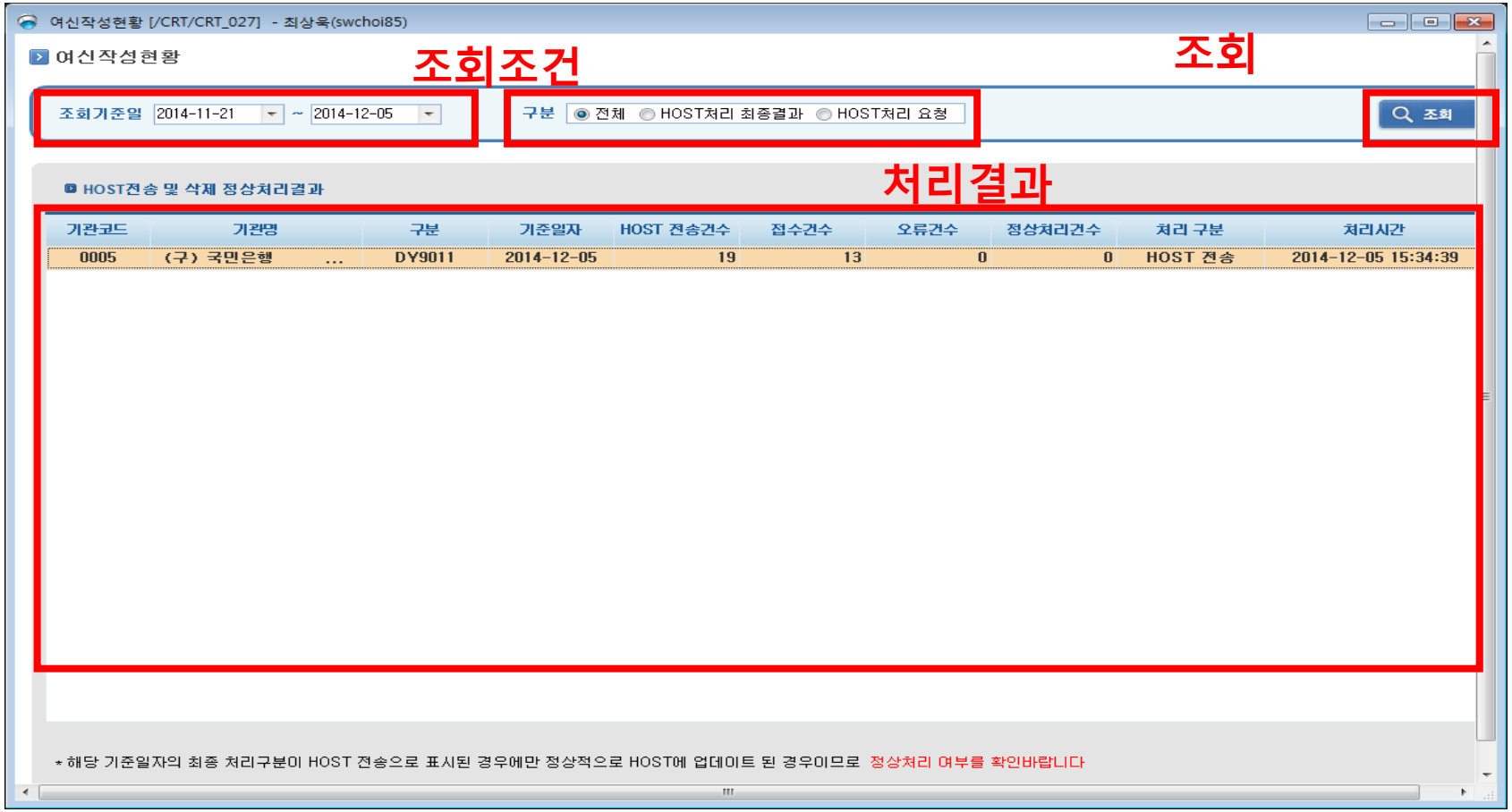


**기업여신 작성(7)**

✓ 조회기준일, 구분(전체, 최종결과, 처리요청) 을 선택하고 '조회' 클릭 후 처리결과를 조회 가능(오류내역이 존재할 경우, 여신작성 화면에서 '결과 데이터' 조건으로 조회하면 확인 가능)

# 3장 : 신용정보 제재금 관련 업무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신용정보 제재금**

✓ 신용정보 제재금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시 누락 및 지연, 거짓등록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이 정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신용정보 집중기한

①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①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 대상기업체정보(CH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일일여신(DY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말일자 일일여신 5영업일) 이내
- 월말여신(MN9011)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기업어음거래정보(CP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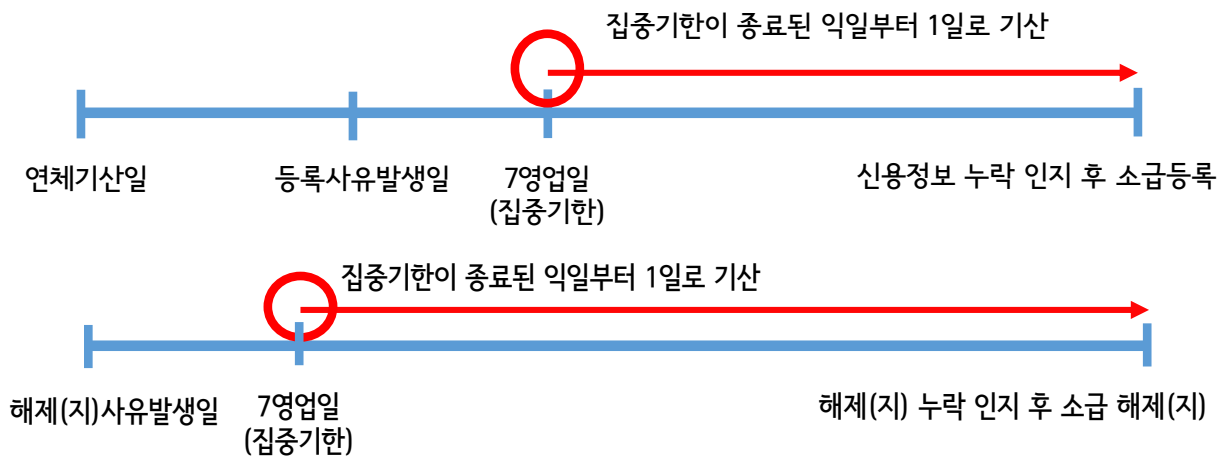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유형**

✓ 지연 : 신용정보 정확 + 자발적 집중 + 집중기한 경과

✓ 누락 : 신용정보 정확 + 비자발적 집중 + 집중기한 경과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의 확인 등에 의해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제재금이 가중되므로, 오류 발생 즉시 정정할 것

✓ 등록내용의 부정확 : 사유발생일, 등록금액 등 오류

① 등록금액 부정확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경우 제외
②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은 지연, 누락, 고의·부적절로 분류

✓ 고의·부적절

① 고의적으로 지연, 누락 처리
② 누락 등의 미처리 사실이 확인·안내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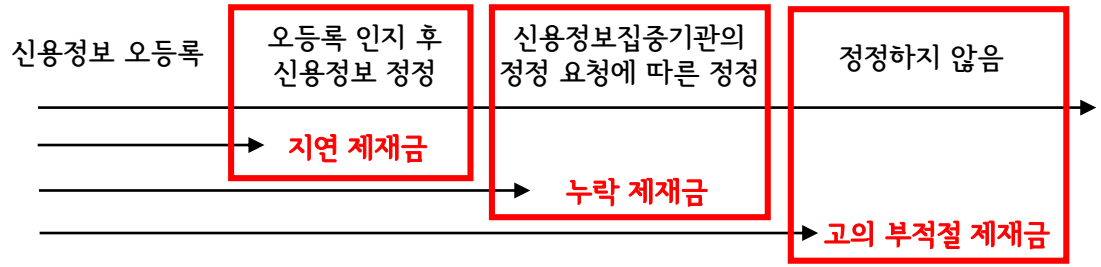


※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제재금이 증가하므로, 오등록 인지 후 즉시 신용정보 정정 요망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세부 부과기준 (1)**

| 구분 | 부과대상 | | 지연일수 | 제재금 |
|---|---|---|---|---|
| 지연 | - 당좌(가계당좌) 개설정보<br>-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정보<br>- 개인대출정보, 카드론정보 현금서비스정보<br>- 연체 등 정보 | | 30일 이내 | 2만원 |
| | | | 90일 이내 | 4만원 |
| | | | 180일 이내 | 6만원 |
| | | | 180일 초과 | 8만원 |
| | - 일일여신, 월말여신 등록<br>-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 | 별첨 참조 | |
| 누락 | - 당좌(가계당좌) 개설정보<br>-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정보<br>- 개인대출정보, 카드론정보 현금서비스정보<br>- 연체 등 정보 | | 30일 이내 | 4만원 |
| | | | 90일 이내 | 6만원 |
| | | | 180일 이내 | 8만원 |
| | | | 180일 초과 | 10만원 |
| | - 신용공여정보<br>- 기업어음거래정보<br>- 대상기업체정보 | | 별첨 참조 | |
| 부정확 | - 등록내용의 부정확 | - 신용공여정보 | 별첨 참조 | |
| | | - 기타정보의 등록 금액 오류 | 2만원 | |
| | - 고의·부적절 | | 100만원 | |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세부 부과기준 (2)**

## ✓ 제재금 심사 원칙

부정확한 신용정보 ➤ 정정 과정 ➤ 정확한 신용정보

신용정보 제재금 대상을 / 상황에 맞는 정정을 통해 /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

ⓘ **상황에 맞는 정정(일반 원칙)**

| | | |
|---|---|---|
| 신용정보 등록 및 해지(제)누락 | → | 정보 등록 및 해지(제) |
| 등록되서는 안되는 정보 착오등록 | → | 등록 취소(해제코드 : 77) |
| 해지(제)해서는 안되는 정보 해지(제) | → | 기록보존기간이라면 해제취소하고,<br>삭제되었다면 소급재등록 후 신용정보회사에 안내 |
| 등록금액, 계좌번호, 사유발생일 등에 잘못된 정보 입력 | → | 발견 즉시 정정 |

ⓘ 부정확한 신용정보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정보 처리의 중복 등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으로 안내 필요

ⓘ 동일 주체인 경우에도 등록, 해지.해제별로 각각 제재금 부과(단,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제재금이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의 제재금만을 부과)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 업무처리 절차 (1)**

## ✓ 업무처리 개요 및 흐름도

제재금 예정부과 ➤ 이의신청 ➤ 제재금 심사 ➤ 확정부과 ➤ 이의신청 절차종료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재금 담당자**

① 한달 간 발생한 제재금 부과 대상(공문, 이의신청 예시 등) 통보

② 공문 수신 후 신용정보집중기관 송수신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제재금 명단 수령

③ 제재금 명단 송부

④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료(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송수신 담당자에게 제출

⑤ 심사 및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심사완료 및 확정부과(지로용지 송부)

⑥ 확정부과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 가능

⑦ 확정부과 완료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절차 종료

**대부업체 제재금 담당자**

※ 청색 :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재금 담당자 업무, 홍색 : 대부업체 제재금 담당자 업무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 업무처리 절차 (2)**

## 제재금 예정부과

① 한달 간 발생한 규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대상 통보 (공문 발송)

① 개별 기관은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 (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 를 작성하여 파일을 송수신 담당자에게 제출

① 공문 수령 즉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송수신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자료(암호화) 수신 (신용정보 통합업무시스템 "파일전송 > 비정규 파일송수신 " 가능을 통하여 제재금 리스트 송수신)

## 이의신청

①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 공문, 이의신청내역서, 입증자료 를 작성하여 송수신 담당자에게 파일 제출

① 이의신청 서류는 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로 구성됨

① 공문 : 제재금 부과 대상 통보에 대한 회신공문을 개별 금융기관의 고유 양식으로 송부

② 이의신청 내역서 : 이의제기 핵심내용을 간략·이해 가능하게 기재

③ 입증자료 :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을 제출

### 입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배제내용 : 제재금 부과기준상 배제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 관계 확인 증빙 필요

ex) 회생계획 인가폐지로 인한 소급재등록(배제코드 : 625)의 경우 인가 폐지된 리스트를 증빙자료로 제출, 채권양수로 인한 소급재등록(배제코드 : 711)의 경우 채권양수 계약서 및 제재금 대상이 채권양수 목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② 유예기간 : 유예기간 내에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일 자료 증빙 필요

ex) 신용정보 등록 시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배제코드 : 311)의 경우 오류통보된 내역(신용정보 주체 및 오류통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착오로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배제코드 : 811)의 경우 업무착오가 발생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2015년 ____월 제재금 이의신청 내역서

**이의신청기관 : OOOOOO**

| 일련번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부과유형 | 정보유형 | 부과사유 | 이의신청 여부 | 이의신청 내용 | 배제사유코드 | 증빙자료 |
|---|---|---|---|---|---|---|---|---|---|
| 1 | 홍길동 | OOOOOO-OOOOOOO | 지연분 | 연체등정보 | 등록지연 | X | - | | |
| 2 | 박길동 | OOOOOO-OOOOOOO | 지연분 | 연체등정보 | 해제지연 | O |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오류가 발생했으나 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제 | 211 | 붙임 1 |
| 3 | 김길동 | OOOOOO-OOOOOOO | 지연분 | 연체등정보 | 등록지연 | O |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연체등정보가 일괄 해제되었으나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소급 재등록 | 621 | 붙임 2 |
| 1 | 조갑동 | OOOOOO-OOOOOOO | 지연분 | 개인대출정보 | 등록지연 | O | 채권양수일(OOOO년 OO월 OO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 711 | 붙임 3 |
| 1 | 조길동 | OOOOOO-OOOOOOO | 지연분 | 채무보증정보 | 해지지연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홍갑동 | OOOOOO-OOOOOOO | 변동분 | 연체등정보 | 등록취소 | O |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 812 | 붙임 4 |
| 2 | 서갑동 | OOOOOO-OOOOOOO | 변동분 | 연체등정보 | 등록금액 정정 | O | 등록금액 단위오류를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 813 | 붙임 5 |
| 3 | 이길동 | OOOOOO-OOOOOOO | 변동분 | 연체등정보 | 해제사유발생일 정정 | O | 해제사유발생일 착오등록 건을 기록보존기간 종료 전에 정정 | 814 | 붙임 6 |
| 1 | 이갑동 | OOOOOO-OOOOOOO | 변동분 | 개인대출정보 | 등록취소 | O | 사망자의 신용정보를 등록취소 | 866 | 붙임 7 |
| 1 | 최길동 | OOOOOO-OOOOOOO | 변동분 | 채무보증정보 | 등록취소 | O |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 812 | 붙임 8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송부하는 정보
※ 동 내역서의 순서는 예정부과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요망

제재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제재금 배제기준에 포함)이 있으면 "O"으로, 이의가 없으면 "X"로 기입

배제사유코드는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은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할 것

**업무처리 절차(3)**

✓ 이의신청 내역서는 해당 내용을 주의하여 작성 후 송부 요망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 업무처리 절차 (4)**

## 제재금 심사

- 이의신청한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부업 제재금 담당자가 제재금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미비시 수시로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예정(금융기관은 추가 자료만 암호화하여 자료 송수신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설정하여 통합업무시스템 비정규파일송수신을 통해 업로드)
- 제재금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정부과 내역 통보

## 확정부과

- 확정 부과 공문 및 확정 부과된 제재금의 지로통지서 송부(만약 확정 부과 통보된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 가능(동 기간 경과시 이의신청 절차 종료))
- 최종 이의신청의 절차 및 형식은 기존 이의신청과 동일(제재금 심사 절차 역시 동일하며, 심사 결과 제재금 배제 건이라고 판단 시 금융기관으로 확정 부과된 제재금이 철회됨)

### 실무자 유의 사항

금융거래 발생시 즉시 집중할 것! [처리 지연시 제재금만 가중]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처리할 것! [처리 지연시 제재금만 가중]
신용정보 집중 후 반드시 전송결과를 확인할 것! [불필요한 제재금 발생 예방]
변동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것! [제재금 : 건당 100만원]
제재금 확정부과 통보시 최종 확인할 것!
확신이 없으면 문의할것! (☎02-3705-5296)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새롭게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에 포함된 A기관이 신용정보를 집중하던 도중, 규약 숙지 미흡 등의 사유로 기집중한 정보를 일괄 정비(기등록정보 해지(제), 등록금액 정정 등)한 경우

| | |
|---|---|
| 배제내용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br>-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신용정보 집중이 불가능한 경우<br>- 해당 금융기관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신규가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3개월 이내 조치 건에 한하여 배제<br>- 파업 등의 경우 쟁의신고사실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후 쟁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치하면 배제<br>- 영업정지 등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배제 |

⇒ 대부업권의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 시행(3. 30.)을 기준으로 3개월간 제재금을 배제하며, 7월부터 발생하는 제재금은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심사 후 부과
**(추가업체의 경우는 11월부터 발생하는 제재금부터 동일하게 적용)**

**부과배제 사례(1)**

✓ 신규 가입, 파업, 파산 및 청산 등이 발생한 경우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신용정보 대량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던 중 신용정보 처리의 결함(해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가 해지되는 등)이 발견되어 파악한 결과, 시스템 개발 중에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벌어진 경우

| | |
|---|---|
| 배제내용 | -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프로그램 개발·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재금이 발생되는 경우<br>-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전산 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개발·변경 관련 내부 공문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하며,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조치할 경우 배제<br>- 해당일자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발송한 전산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동 파일로 신용정보주체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br>※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단, 적용일로 부터 최장 1년내로 제한, 신용공여정보는 해당 없음) |

**부과배제 사례(2)**

✓ 전산시스템 구축이 변경되는 경우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A기관의 담당자가 신용도판단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한(7영업일 이내)에 집중하였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는 각종 사유로 인한 오류 통보 →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여 신용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오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배포한 신용정보 온라인 ·파일전송 설계서 참조 요망)

| | |
|---|---|
| 배제내용 | - 신용정보 등록(기한내 집중)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한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신용정보 집중 시의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전산 로그기록, 오류 내역 확인 후 오류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되었다면 배제 |

**부과배제 사례(3)**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오류통보 후 오류를 정정하여 집중하는 경우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1) A기관 담당자가 신용정보주체 B에 대한 개인대출정보를 등록했으나, 차후에 알아보니 B는 법원으로 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에 A기관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대출정보를 삭제 처리한 경우

예시 2) 신용정보주체 B가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아 A기관에서 기등록한 신용도 판단정보가 해제되었으나, 향후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통보 받아 신용도판단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예시 3) 신용정보주체 B가 법원으로 부터 회생인가를 받고 A기관에서 기등록한 신용도 판단정보가 해제된 후, 향후 성실하게 회생계획에 임하여 회생면책 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등록되어 있던 대출정보를 면책일로 소급해서 해지하는 경우

**부과배제 사례(4)**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 관련 사례(1)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 |
|---|---|
| 배제내용 | [공통사항]<br>- 파산면책결정일, 회생인가결정일, 신용회복지원확정일 이후 착오 등록한 신용정보를 인지하는 시점에 착오등록 삭제(등록취소'77)한 경우<br>-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 등 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파산면책결정일자, 회생 인가일자, 신용회복지원확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br>- 파산면책취소, 회생인가폐지, 신용회복지원 실효에 따라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br><br>[회생인가]<br>-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일괄 해제된 연체 등 정보중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 등 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br>-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 정보를 면책일로 소급하여 해지한 경우<br><br>[신용회복지원]<br>- 지원확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 등 정보중 협약 미가입기관이거나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 등 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확인 서류 |

**부과배제 사례(5)**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 관련 사례(2)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A(양도기관)와 B(양수기관)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A기관은 기등록 되어 있던 신용정보를 일괄 해제(지)하고, B기관은 신용정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 | |
|---|---|
| 배제내용 | - 양수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사유 발생일로 소급 등록하거나 양도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소급하여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br>- 양수도 취소 효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 취소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등록취소('77')하거나 양도 취소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 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채권양수도계약서, 양수도 취소 공문, 해당 채권 명세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양수도 효력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한 건에 한하여 배제 |

**※ 채권의 양수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양도기관은 기등록되어 있던 대출정보는 해지하고, 신용도판단정보는 채권을 양수받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16(비금융기관), 17(금융기관) 해제코드를 입력하여 해제함
- 양수기관은 양도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의 당초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등록함

**부과배제 사례(6)**

✓ 채권의 양수도 관련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A기관이 B기관을 흡수 합병하여 B기관에 있던 모든 정보가 A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 | |
|---|---|
| 배제내용 | -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되는 기관의 보유정보를 합병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br>- 존속기관의 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아니함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합병일 등이 포함된 서류 등 증빙자료 |

**※ 합병 관련 주요 참고사항**

- 기관의 합병형태(신설합병, 흡수합병 등),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관하는가의 여부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 형태가 상당 부분 달라지는 바, 합병 이전에는 반드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

**부과배제 사례(7)**

✓ 기관 합병 관련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금융기관 담당자는 신용정보 주체 A의 정보를 해지 했어야 하는데, B의 정보를 해지 → 향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원래 해지했어야 하는 A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해지해서는 안되었던 B의 정보는 재등록

| | |
|---|---|
| 배제내용 | - 담당자가 착오로 등록정보를 해지(제), 삭제하여 재등록한 경우<br>- 등록금액 ·사유발생일 오류로 인한 신용정보 정정 후 재등록하는 경우<br>- 착오로 등록대상이 아닌 정보 등록 후 등록 삭제하는 경우 |
| 배제요건<br>및 제출서류 | - 사실관계 확인서류(원장, 상환내역명세 등) 확인 후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치된 경우 배제<br>※ 단, 모니터링을 위한 변동분 정보의 통보주기 단축 전까지는 오류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에도 제재금 배제 |

**부과배제 사례(8)**

✓ 착오 해지, 해제, 등록취소(삭제되는 경우 포함), 등록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금융기관 담당자가 금액 단위를 착각하여 500만원 대출자를 50억 대출자로(통합업무시스템의 금액 단위는 '천원') 착오 등록하고, 동 사실 인지 즉시 조치하는 경우

| | |
|---|---|
| 배제내용 | -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기업신용공여정보 등의 경우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br>-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 등 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여 정상 금액과의 차이가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단, 오등록으로 해제와 동시 삭제시에는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함)<br>- 실제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집중하였으나 사유발생일을 오등록 한 후 정확한 사유발생일로 정정한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사실관계 증빙서류(원장, 상환내역명세 등) 확인 후 배제<br>-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한 경우 배제<br>- 원장 확인 후 배제(단,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개월내 정정한 경우 배제) |

**부과배제 사례(9)**

✓ 등록금액 및 사유발생일 오류

# Ⅰ. 개인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예시) 대손상각 등의 사유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도판단정보를 특수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중에 신용정보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한번 더 집중함 → 동 사실을 인지하고 착오 등록 삭제

※ '연체 등'에 의한 관련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연체 등' 정보를 해제 후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체 등' 정보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표시

| | |
|---|---|
| 배제내용 | - 특수채권 편입시 연체 등 정보의 사유코드를 정정하지 않고 특수채권 사유코드로 신규 등록하여 기 등록 연체 등 정보가 존재하거나 기 등록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경우 |
|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 사실관계 증빙서류(필요시 상환내역명세)확인 후 오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정보를 착오등록 삭제한 경우 배제 |

**부과배제 사례(10)**

✓ 특수채권 편입 관련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기업정보 제재금**

##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의 종류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정보(DD9011, DM9011) 집중 시, 보고대상 기업의 식별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대상기업체 정보에 미등록(또는 불일치)일 경우에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발생(대상기업체 등록 누락이 발생시, 해당 기업의 신용공여정보 처리 불가)
누락이 4주 이상 지속 시 제재금이 부과되며, 누락 오류 조치 시까지 계속적·누적적 부과
**= 신규여신집중시 대상기업체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

금융기관은 기준일별로 기업에게 제공한 신용공여에 대한 내역(금액, 과목 등)을 여신보고서인 DD9011(평일보, 말일보)와 DM9011(월보)로 보고하며 집중기한(평일보 : 2영업일, 말일보 및 월말여신 : 5영업일)이 경과하고 집중할 경우 지연제재금 부과
*** 다만 집중기한 내 집중한 보고서에 한하여 해당 기준일의 보고서는 정정기간 1영업일이 추가로 있음**
**= 집중기한내 보고서를 반드시 집중할 것!**

###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부정확 제재금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보고서를 기준일별 집중기한 내에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므로 이미 처리된(집중기한이 경과 된) 보고서는 정정 재보고 불가하나, 만약 이미 처리된 특정 기준일의 일일여신 및 월말여신 금액 및 과목 등이 부정확하거나 소급변경 등으로 인해 기준일별 · 보고서별 · 차주별로 정정(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은행연합회로 공문으로 정정처리 요청 → 부정확 제재금 발생
*** 정정처리의 경우, 반드시 집중가능한 기준일의 일일여신에도 해당 내용 반영하여 보고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정확한 정보가 일일여신에 반영되어짐)**
**= 정보 집중시 해당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세부 부과기준(1)**

## ✓ 등록 해지 등의 누락 제재금

| 대상 | 기준 | 제재금 | 사유코드 | 비고 |
|---|---|---|---|---|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기간 포함) 정보 등록 | 1억원 이하 | 2만원 | 23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 | 10억원 이하 | 5만원 | 232 | |
| | 100억원 이하 | 10만원 | 233 | |
| | 100억원 초과 | 20만원 | 234 | |
|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 1억원 이하 | 2만원 | 23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 | 10억원 이하 | 5만원 | 232 | |
| | 100억원 이하 | 10만원 | 233 | |
| | 100억원 초과 | 20만원 | 234 | |
| 대상기업체정보 등록 | 4주 연속 | 2만원 | 25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br>월말여신 제외<br>구간별 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 |
| | 8주 연속 | 5만원 | 252 | |
| | 12주 연속 | 20만원 | 253 | |
| | 12주 초과 연속 | 고의·부적절 | |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세부 부과기준(2)**

✓ 등록 해지 등의 지연 제재금

| 대상 | 지연일수 | 제재금 | 사유코드 | 비고 |
|---|---|---|---|---|
| -평일보 등록<br>-말일보 등록<br>-월보 등록<br>-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 1영업일 이내 | 2만원 | 131 | 기준일자별 부과 |
| | 3영업일 이내 | 4만원 | 132 | |
| | 6영업일 이내 | 8만원 | 133 | |
| | 6영업일 초과 | 10만원 | 134 |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세부 부과기준(3)**

## 등록 내용의 부정확 제재금

| 구분 | 대상 | 기준 | 제재금 | 사유코드 | 비고 |
|---|---|---|---|---|---|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 정보등록의 부정확 | 기록보존중인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어음거래정보 포함)의 등록·정정 | 5건 이하 | 3만원 | 31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 | | 10건 이하 | 5만원 | 312 | |
| | | 20건 이하 | 7만원 | 313 | |
| | | 50건 이하 | 10만원 | 314 | |
| | | 100건 이하 | 20만원 | 315 | |
| | | 200건 이하 | 30만원 | 316 | |
| | | 500건 이하 | 50만원 | 317 | |
| | | 1,000건 이하 | 80만원 | 318 | |
| | | 1,000건 초과 | 100만원 | 319 | |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별 세부사례(1)**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정보(DD9011, DM9011) 집중 시, 보고대상 기업의 식별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대상기업체 정보에 미등록(또는 불일치)일 경우에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발생(대상기업체 등록 누락이 발생시, 해당 기업의 신용공여정보 처리 불가)
누락이 4주 이상 지속 시 제재금이 부과되며, 누락 오류 조치 시까지 계속적·누적적 부과
**= 신규여신집중시 대상기업체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확인 방법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정보(DD9011, DM9011) 집중 시,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누락 건이 있다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DD9133 또는 DM9133으로 대상기업체 등록누락 오류(901코드) 전송
-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금융기관별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분을 취합하여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명세서(DC9144) 전송
- 통합업무시스템(nkfb.cif.or.kr)-기업정보-대상기업체-대상기업체 누락 분 조회에서 확인 가능

**※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담당자라면, 매주 월요일 아침 습관처럼 누락분 조회 확인 요망**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명세서 예시

| 기준일자 | 기관코드 | 기관명 | 차주번호 | 차주구분 | 여신최근 등록일자 | 보고서 코드 | 계정과목 | 금액 | 여신최초등록일자 | 등록 주차수 |
|---|---|---|---|---|---|---|---|---|---|---|
| 2015.1.24 | AAAA | A 기관 | 123456 1234567 | 3 | 2015.1.20 | 31 | 1051 | 362 | 2015.1.13 | 1 |

- 해석 : A기관이 '31번 보고서(DD9011)-법인(3)-법인번호(1234561234567)'을 1월 20일에 등록한(1월 13일 최초보고)하였으나, 해당 법인번호가 대상기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1월 24일 현재 1주간 대상기업체 정보가 누락되었는바, 정확한 조치가 필요함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별 세부사례(2)**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확인 후 조치방법

일보, 월보

+

대상기업체정보

=

기업신용공여정보

사례 1) 일보, 월보는 등록되어 있는데 대상기업체정보가 누락된 경우
- **대상기업체정보 신규 입력 : DC9011 또는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해당 법인 신규 등록**

사례 2) 일보 또는 월보의 업체 식별번호는 정상 등록되었으나 관련 기업의 대상기업체정보가 오입력 또는 변경전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대상기업체정보 변경 입력 : DC9011 또는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해당 법인B를 A로 변경**

사례 3) 일보 또는 월보에 보고대상 식별번호를 오입력하였거나 잘못된(변경전) 식별번호로 보고한 경우
- **최근 집중 가능한 일보로 해당 정보를 취소하고 올바른 식별번호로 보고하고, 기존에 보고된 일보 또는 월보에 대해 실시간 정정처리 필요(부정확 제재금)**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별 세부사례(3)**

##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

금융기관은 기준일별로 기업에게 제공한 신용공여에 대한 내역(금액, 과목 등)을 여신보고서인 DD9011(평일보, 말일보)와 DM9011(월보)로 보고하며 집중기한(평일보 : 2영업일, 말일보 및 월말여신 : 5영업일)이 경과하고 집중할 경우 지연제재금 부과

*** 다만 집중기한 내 집중한 보고서에 한하여 해당 기준일의 보고서는 정정기간 1영업일이 추가로 있음**

**= 집중기한내 보고서를 반드시 집중할 것!**

##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 사례

| 5월 4일 | 5월 5일 | 5월 6일 | 5월 7일 | 5월 8일 | 5월 9일 | 5월 10일 | 5월 11일 |
|---|---|---|---|---|---|---|---|
| 기준일 | 휴일 | 1영업일 | 2영업일 | 3영업일 | 휴일 | 휴일 | 4영업일 |

평일보 보고 평일보 보고 → 평일보 집중기한내 보고이므로 제재금 대상 아님

집중기한내 보고서 집중시 제재금 대상 아님
다만, 집중기한내 집중하지 않았을시 제재금 대상 ← 평일보 보고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 대상 ← 평일보 보고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별 세부사례(4)**

##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부정확 제재금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보고서를 기준일별 집중기한 내에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므로 이미 처리된(집중기한이 경과 된) 보고서는 정정 재보고 불가하나, 만약 이미 처리된 특정 기준일의 일일여신 및 월말여신 금액 및 과목 등이 부정확하거나 소급변경 등으로 인해 기준일별 · 보고서별 · 차주별로 정정(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은행연합회로 공문으로 정정처리 요청 → 부정확 제재금 발생

*** 정정처리의 경우, 반드시 집중가능한 기준일의 일일여신에도 해당 내용 반영하여 보고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정확한 정보가 일일여신에 반영되어짐)**

**= 정보 집중시 해당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기업신용공여정보 부정확 제재금 사례

① 이미 집중한 보고서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 5월 4일 | 5월 5일 | 5월 6일 | 5월 7일 | 5월 8일 | 5월 9일 | 5월 10일 | 5월 11일 |
|---|---|---|---|---|---|---|---|
| 기준일 | 휴일 | 1영업일 | 2영업일 | 3영업일 | 휴일 | 휴일 | 4영업일 |

평일보 정정 가능 → 부정확 제재금 대상 아님

(6일, 7일에 평일보를 집중한 이력이 있다면) 정정 가능 → 부정확 제재금 대상 아님

오등록분이 이미 일보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5월 4일 기준일 일보 정정처리 → 제재금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 업무처리 절차**

## ✓ 업무처리 개요 및 흐름도

제재금 예정부과 ➤ 이의신청 ➤ 제재금 심사 ➤ 확정부과 ➤ 이의신청 절차종료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재금 담당자

① 한달 간 발생한 제재금 부과 대상(공문, 이의신청 예시 등) 통보(제재금 명단 송부)

②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료(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송수신 담당자에게 제출

③ 심사 및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심사완료 및 확정부과(지로용지 송부)

④ 확정부과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 가능

⑤ 확정부과 완료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절차 종료

대부업체 제재금 담당자

※ 청색 :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재금 담당자 업무, 홍색 : 대부업체 제재금 담당자 업무

# Ⅱ.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제재금 업무처리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반드시 『공문(직인날인)+이의신청내역서+관련증빙』의 구성으로 해당 제재금 담당자에게 통합업무시스템(비정규파일송수신) 또는 우편 전송
- 이의신청 기한 엄수(확정부과에 대한 재심신청의 경우,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만 재심 가능)
- 이의신청 시 관련증빙은 꼭 필요한 자료만 송부 또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뒷자리(7자리)는 마스킹하여 송부
- 기업신용공여정보는 기준일별·보고서별 처리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배제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이의신청 시 배제코드 주의 필요(배제사유 중 기업] 신용공여정보도 해당되는 사유들은 배제기준에 따로 언급되어 있음)
- 단순 전산 오류, 단순 실수, 업무상 착오,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오류 등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회·협회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기관들은 이의신청 시 반드시 해당 중앙회·협회등과도 협의 필요

# 4장 : Q & A

# Q & A

우리 업체는 이번에 직권검사대상에 여러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저희 관계사와 계열사 입니다. IP주소, 서버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서로 다른 법인이 동일한 IP를 사용하면 정보공유 및 정보 등록, 해제에 따른 책임여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동일 IP접속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Q & A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여 신용정보를 집중하지 않았던 대출이 만기연장, 추가여신 발생, 계약 갱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할까요?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집중대상입니다. 단, 시행일 이전 대출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과거 계약의 자동만기 연장 조항 등 새롭게 약정을 맺지 않아도 되는 사유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규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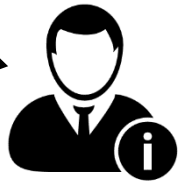

# Q & A

시행일 이전에 약정한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하나요? 집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한도대출(최고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금의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이며, 인출 및 상환관련 절차가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의 경우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한도대출의 경우 실제 대출잔액이 아닌 한도약정 금액을 대출금 잔액(연체정보의 등록금액)으로 집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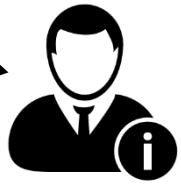

# Q & A

우리 회사는 NPL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체입니다. 신용정보 집중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면 집중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업법에 따른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상입니다. 즉, NPL추심업체라도 직권검사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직권검사대상대부업체 포함)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셨다면, 동 채권은 집중 대상입니다.

# Q & A

우리 회사는 NPL중에서도 회생채권만을 전문으로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체입니다. 신용정보 집중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면 집중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업체가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라면 신용정보를 집중합니다. 단, 일반채권에 비해 개인회생채권은 몇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채권의 경우 개인대출정보는 계속 등록 상태로 유지되며, 연체등정보는 일괄 해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된 채권을 양수한 경우 개인대출정보는 등록해야 하며, 연체등정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인가결정폐지 등 제외) 또한 개인회생절차중에 면책을 받은 경우 기 등록되어 있던 개인대출정보를 해지 처리합니다.

# Q & A

시행일 이전에 양수한 채권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업체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받는 업체에서 이 채권을 신용정보로 등록해야 합니까?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이 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 신용정보집중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일 전에 채권을 양수한 채권을 새로이 양도받는 대부업체는 동 정보를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행일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라도 채권을 양도하는 기관에 기등록된 신용정보가 없다면(신용정보집중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 Q & A

대부업권은 그 특성상 원금을 연체하고 있으나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객의 연체등 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민법상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연체정보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이 맺은 약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등록합니다.

# Q & A

대부업권은 그 특성상 화해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화해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먼저, 업권내에서 사용하는 화해계약의 의미나 조건(이자 감면 조건 원금 상환,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계약 등)이 상당히 달라 원칙적으로 화해계약건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보아 각각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화해계약이 해제되는 해제조건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기존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제(지)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제(지)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신용정보를 등록합니다.

# Q & A

대부업체간 합병이 일어날 경우에 신용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피합병기관이 시행일 이후 집중한 신용정보(피합병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할지라도 신용정보시스템상 등록될 근거가 없었다면, 합병기관이 등록 불가)를 합병기관으로 이관하고, 피합병기관의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피합병기관의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합병기관에서 피합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와 동일하게 재등록)

# Q & A

기업신용공여정보와 개인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이며, 개인대출(가계자금대출)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을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한 개인에게 제공된 대출일지라도 그 자금 목적이 기업자금인지 가계자금인지를 금융기관이 판단하여 구분 집중해야 됨

# 감사합니다

**대부업신용정보 관련문의 : 02) 3705 - 5296**